인 문 사 회 연 구 회
협동연구총서 2002-14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김귀옥(경 남 대 학 교)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2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3단계 통일론 중 완결편이다. 제1단계인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2000년)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제2단계인 남북연합을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2001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제1단계의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수립,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남북연합 추진시의 여성정책 과제로서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남북여성의 교류 및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을 성 인지적 통일정책 수립, 여성부문 실천과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1, 2단계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보면, 정부는 통일정책 수립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보장하고, 통일부에 여성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시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통일관련 학술교류 지원, 여성비정부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3국을 통한 여성교류협력 방안 제시, 남북한 여성간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시 및 공교육화 방안강구 등이다. 그리고 여성비정부기구는 통일준비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통일추진사업의 내용을 구상하고 방법론을 구축하여 협력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를 개발, 실현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교류영역을 설정,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여성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협력을 모색

해나가되,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도록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를 설정하고 교류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gender)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여성 빈곤문제 등)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기구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통한 여성들간의 통합으로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즉 남북한 여성들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생활문화 등)에 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상호이해의 증진과 통합과정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과 이를 제도화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엔에서는 각 분야에의 여성참여를 중시하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질적 남북통합 단계에서도 각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통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실질적 남북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
(3)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
(4) 여성관련 통일단체 활동현황
(5) 독일통일에서의 여성정책

(6)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분야별 분석 : 생활문화, 가족, 교육, 노동, 복지, 여성단체
(7)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

나. 연구방법

(1)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
(2) 전문가 설문조사 : 국내의 평화 및 통일 관련전문가 및 관계 분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남북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남북통합과 여성의 역할, 남북통합의 추진과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실시.
(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별 워크숍
(4) 한중 워크숍 참가
(5) 중간보고 평가회와 학술회의 개최

3.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강화방안

가. 기본 방향

(1) 성인지적 관점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한다.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실현을 위한 연구/교육을 강조한다.
(3)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한다.
(4) 북한지역 내에 자율적인 여성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일정한 기간까지 제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5) 남북통합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강화하며 하며 통일문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1) 남한의 여성정책역량강화의 필요성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성정책은 우선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여성정책에 관한 입법들이 제대로 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성정책적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역량강화전략

(가) 국가정책의 목표로서의 여성정책의 주류화

(나) 헌법상의 평등권명령을 구체화한 여성입법의 이행주체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의 제도화

- ○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의무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의무

(다) 행정개혁과 공직의 성균형(Gender Balance)

(라) 적극적 조치의 적극적 개발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위의 기본방향에 따라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한다.

(가) 성인지적 통일정책을 위한 조치

- ○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남북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 통일 관련 모든 회의와 조직에 여성을 30%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모든 관련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한다.
- ○ 통일헌법제정준비과정과 관련조직에 여성의 30%이상 참여를 관련법령에 규정한다.

○ 통일후의 여성관련법통합연구회를 설치한다

(나)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의 강화조치

○ 모든 국가조직에 여성정책책임관(GEO)을 설치한다 : 남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을 책임질 행정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간의 연대를 활성화한다.

○ 국가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의식, 현황, 여성문제 등의 대규모 조사연구와 그에 대한 정책적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이 기능은 현재의 한국여성개발원이 담당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여성문제연구, 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을 그 지역에 맞게 실시하면서, 특히 지역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내지 결연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생활문화속에서의 주민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다) 여성민주정치/평화교육을 위한 조치:

오랜 세월의 분단은 군사 블럭, 경제제도,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생활감정까지도 갈라놓았으므로 이러한 생활감정의 간격은 남·북 양측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편견과 몰이해를 극복해야만 좁혀질 수 있다. 따라서 남, 북한 두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민주교육,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라) 교류협력과 여성평화운동을 위한 NGO 지원조치

(마) 북한에서의 여성연구와 여성학의 활성화지원조치

(바) 북한여성들의 새로운 노동시장에의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지원조치

3. 추진과제

가. 실질적 남북통합 이전단계 과제의 지속적 추진

: 남북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시된 과제들의 적극적 추진

(1) 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 통일관련기구 및 위원회 30%이상 여성참여 확보
- 통일 여성부의 설치
- 통합 여성관련법 제정
- 통일여성기금 적립 (여성발전기금)

(2) 통일의식 함양교육의 추진과제

- 민주시민교육실시
- 일방적 주입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 쌍방향 교육방식, 상대지역 주민(분야별, 세대별 등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초청하여 대화, 관심있는 상대지역 답사
- 공동여론조사(표본조사), 공동연구 및 발표, 집체교육, 각종 세미나 등
- 남북한 여성간 상호 이해교육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
  - ㅇ남북한 상호 사회적 여건 및 생활문화영역 이해교육
  - ㅇ여성지도력향상교육, 여성직업능력향상교육 및 창업교육, 여성문제해결교육,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창출교육 등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 자녀교육토론회(정보교류)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3)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추진과제

- 북한의 각종 여성단체들과의 접촉창구 늘이기
- 단체, 조직, 분야별 자매결연 맺기
- 올림픽, 월드컵, 장애인 올림픽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현

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공동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인적교류와 학문적 경험 공유, 공동연구소 설립 및 상주 연구원 파견·교환, 공동 인터텟 홈페이지 개설(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제도 활용), 여성지도자들의 직접 왕래와 간담회 개최 등 상대측 여성들과의 대화·교류 증진
- 남북한 여성의 생활문화 등의 교류협력
- 남북한 공통의 문화상품개발 및 국제화
- 남북 여성교류 협력기구 설치
- 민박교류 활성화
-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4) 여성평화운동활성화 추진과제
- 남북통일이 여성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방지방안 마련
  ○ 전국규모의 성폭력 상담소 개설 등
- 정치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당위론이 아닌 사회적 측면 특히 개인의 생활과 직결(통일과 나의 관계, 통일과 내 자녀의 관계, 통일비용에 대한 이해, 통일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사례 등) 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포럼 개최.
-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선언 채택, 남북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및 각각의 정부기관에 공동방문, 간담회 실시, 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 등을 통한 평화운동 및 관련 여론 확산 등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기구 설치후 회의 등 모임 정례화.
- 체육분야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남북여성 응원단 구성

나. 여성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1) 생활문화 분야
- 남북한의 이질적 생활문화 산출하는 체제 차이 이해교육 실시: 남북한간 상호 다름에 대한 관용

- 여성발전기금 활용, 종교 및 사회단체 지원
- 남북한의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공공 및 국가 서비스로 전환
  - ○식생활 부문 : 전국 주부 김치 담기 박람회/ 지방 된장 만들기 경연대회/지방 특유 음식 심포지엄/ 밑반찬 요리 경연/ 수산물 요리 박람회/ 남북 지방산 주류 교류전/ 남북 감자 요리 경연
  - ○의생활 부문: 생활한복 또는 조선옷 전람회: 소재, 디자인, 한복 품평회, 패션쇼/ 주부 폐의류 활용 창안대회/ 남북 도-농간 자매 결연, 폐의류 및 생활용품 교류/ 남북 노동자 및 사무직 작업복 전람회 및 패션쇼: 같은 산업계통의 작업복 또는 의복디자인/ 민간 처방의 화장수 교류전: 지방 특색, 지방 재료 중심/ 머리단장 경연 대회
  - ○주생활 부문 : 좁은 공간 활용 디자인 경연 대회/ 환경 친화적인 주택 디자인 전시회: 환경과 어울리는 주택, 풍부한 자연소재 주택/ 아름답고 편리하며 저렴한 농촌 주택 디자인 전시회/ 새로운 집합 주택 디자인 전시회/ 탁아소·유치원 디자인 전시회/ 노인이 살기 좋은 양로원이나 노인회관 건물 디자인 전시회

(2) 가족 분야
- 남북한간 가족문화의 상호 보완 및 전통유지 노력(법적, 의식적 개혁 노력)
- 동등한 부부관계 정립
- 여성의 지위 존중 및 역할 확대
- 가족기능의 사회화 및 인성교육 실시
- 가부장적 여성상의 극복: 가족문제 상담/ 신가족 캠페인
- 남북한 여성단체들의 가족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양성평등적 가족관 정립
- 가족의 구조 및 구성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수립

- 상담소 설치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가족 및 중국동포여성가족과의 정기적 만남과 교류실시

(3) 교육 분야
- 남북한의 여성교육기회 확대 및 남녀평등교육 실시
- 교육제도 보완책 마련
- 남북한간 점진적 개선을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갈등해결 프로그램
- 남북한 지역간 교육 내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계급간, 지역간 차별해소와 교육 질의 제고와 과제/ 취업문제, 예산확보, 통합교육비 등의 과제해결
- 남북한 상호 이념교육의 비중 축소 및 통합이념 개발, 홍보(공교육화 시도)
- 여교사의 질적 및 양적 제고(교사 재교육 방안)
- 공교육의 강화 및 의무교육의 확대
- 교직에서의 여성행정직 및 전문직 확대
-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자,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토론과 의견수렴
- 여성평생교육기관 교류협의체 구성
- 여성 리더십 훈련 강화
- 남북통합을 위한 범 국민적 이해교육 실시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
- 남북한 지역의 여성·가정교육의 비교 및 실천방안 제시

(4) 노동 분야
- 남북한 여성의 노동가치에 대한 교육, 인본주의적 노동 인식 제고
- 여성지위 향상 및 인식에 대한 재교육
- 여성의 고용확충과 여성노동력 평가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
-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도 도입으로 여성차별 해소

- 여성자신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일자리 창조
- 기술취업 재교육
- 보육시스템 확대
- 여성창업자 지원제도 도입
- 최저임금의 제도화
-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격차를 감안한 사업 전개와 지원
- 북한지역 경제개발 시의 여성·생태주의적 관점 고려

(5) 복지 분야
- 남북한 여성 복지체계의 상호장점 융합
-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보장, 확대를 통한 여성혜택 강구
- 여성대상 실업보험제도 확대
- 여성복지의 확대 : 여성고용불안정의 문제/빈곤여성탈피를 위한 공공부조제도기능강화
- 남북한 여성을 위한 분만 등 건강보험 처리, 연금권 확대
-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여성근로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 남북한 여성들을 위한 직장과 거주지 또는 직장과 보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 남북한 여성을 위한 보육비용의 분담방안 강구
-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 남북한 여성의 건강권 확보
- 북한지역 여성건강의 질적 향상 도모
-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의 배려를 통한 남북한 여성주민의 건강진단 및 유지
-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관심 확대 :의료보장체계에서 여성보건의 비중 높임
- 북한지역에 여성대상 의약품 및 식량 계획

(6) 여성단체 분야

- 여성시민교육 활성화
- 남북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 활성화
- 여성단체의 남북한간 상호 교류 확대: 여성단체의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의 균형
- 각 정부의 여성단체 통제 금지 및 완화: 자율성과 조직성의 조화
- 남북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사체 인정 확대
- 남북한 여성소모임 활동 활성화
- 여성시민운동의 활성화
- 여성학 연구 센터 공동 운영
- 제 외국의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강화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 강화

다. 단계별 추진과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과제들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실행주체가 정부 혹은 여성단체가 될 수 있으며 과제의 범위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여성정책들은 2000년 수행했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연구」와 2001년의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추진방안」에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를 실행주체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를 이미 제시하였다. 2002년 현재 수행되고 있는 본 과제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본 것으로 그 남북화해협력단계와 연합단계 선상에서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그 예로 생활문화와 여성단체분야를 제시하였다.

□ 생활문화 분야의 실행주체와 단기·중장기과제

(1) 정부의 역할

기간	추 진 과 제
단기	1) 남북한의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공공 및 국가 서비스로 전환 2) 남북여성 생활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생활문화의 차이와 동질성 조화 방안에 대한 모색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생활문화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여성단체들의 생활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2) 여성비정부의 역할

기간	추 진 과 제
단기	1) 남북한의 이질적 생활문화 산출하는 체제 차이 이해교육 실시: 남북한간 상호 다름에 대한 관용 2) 여성발전기금 활용, 종교 및 사회단체 지원 3) 남북여성 생활문화 교류 및 활성화 프로그램: 남북의 공통적인 생활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 식생활 부문 : 전국 주부 김치 담기 박람회/ 지방 된장 만들기 경연대회/지방 특유 음식 심포지엄/ 밑반찬 요리 경연 / 수산물 요리 박람회/ 남북 지방산 주류 교류전/ 남북 감자 요리 경연 ▪ 의생활 부문 : 생활한복 또는 조선옷 전람회: 소재, 디자인, 한복 품평회, 패션쇼/ 주부 폐의류 활용 창안대회/ 남북 도-농간 자매결연, 폐의류 및 생활용품 교류/ 남북 노동자 및 사무직 작업복 전람회 및 패션쇼: 같은 산업계통의 작업복 또는 의복디자인/ 민간 처방의 화장수 교류전: 지방 특색, 지방 재료 중심/ 머리단장 경연 대회 ▪ 주생활 부문 : 좁은 공간 활용 디자인 경연 대회 / 환경 친화적인 주택 디자인 전시회: 환경과 어울리는 주택, 풍부한 자연소재 주택/ 아름답고 편리하며 저렴한 농촌 주택 디자인 전시회/ 새로운 집합 주택 디자인 전시회/ 탁아소·유치원 디자인 전시회/ 노인이 살기 좋은 양로원이나 노인회관 건물 디자인 전시회 4) 남북의 이질적인 생활문화 적응 방안 ▪ 의, 식, 주생활문화에 있어서 남북, 지역적 차이가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남북 교류 ▪ 계층별, 세대별 차이 있는 생활문화의 이해와 남북 교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폭력문화, 사치문화 등과 같은 상호 조화를 해치는 문화에 대해 자율적 운동을 통한 화합의 생활문화로 전환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 있어서 여성단체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가치 제고와 생활문화 교류 증진의 주체화 2) 생활문화 교류단계에서 적응단계에서 여성단체들이 주도적 역할 수행, 남한의 여성단체들은 북한의 생활문화를 일반여성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이해를 증진 3) 실질적 통합단계의 통합기구의 예산 지원 하에 남북여성 생활문화 증진의 집과 같은 생활관을 설립·운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생활문화 적응과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 방안 모색

□ 여성단체분야의 실행주체와 단기·중장기 과제

(1) 정부의 역할

기간	실 천 과 제
단기	1) 정부와 여성단체와의 의사소통기구 모색과 예산지원 2) 각 정부의 여성단체 활동의 통제모델에서 협조모델로의 전환 ▪ 정부의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정부의 예산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통한 협조체제 도출 ▪ 여성단체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정부와의 유기성 획득 ▪ 정부 중심의 여성문제 연구 활동과 여성단체의 여성문제 연구 활동의 공동연구 과제 모색 3) 남북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사체 인정 확대 4) 정부의 남한 내 여성단체들간의 연대와 공조활동에 협조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 내에 설립된 여성 기구와 여성단체와의 협의기구 설립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모든 기구 내에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단체와의 협의기구 설립 및 운영 ▪ 노동/실업, 행정, 군축과 여성복지, 여성인권, 정보와 여성기술 등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단체 지원의 예산 책정과 심의 기구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기간	실 천 과 제
단기	1) 여성운동의 활성화 ▪ 여성주류화 관점 수립과 실천 목표--여성적 관점에서 여성, 시민, 민족, 세계인의 상호 유기적 관계 인식과 운동 목표 제시 ▪ 중앙/지역민과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의사소통 체제 구축 ▪ 남남대화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와 의사소통 체제, 연대운동의 전개 - 가부장제 철폐 운동 -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축 -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복지운동 - 여성직능단체간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학술회, 운동, 친목모임 등 2) 여성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유기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남북한 여성소모임 활동 활성화 4) 여성학 연구 센터 공동 운영 ▪ 남북 공조적인 의제 개발 및 실천 방안 모색 - 한반도 평화 정착과 여성의 역할 - 여성의 삶의 질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중장기	1) 여성단체의 남북한간 상호 교류 확대: 여성단체의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의 균형 ▪ 남북여성대회를 정례화시키되, 부문별 모임을 활성 ▪ 남북의 직능별 여성단체 모임 활성 ▪ 남북의 지역간 여성단체 모임 및 지역간 여성들의 결연 활동 2) 남북여성단체 협의체기구 모색 ▪ 공동의제 개발 ▪ 하위 직능별 여성기구 설립 ▪ 도-농 여성기구 설립 ▪ 국제적인 여성 문제 공동 대책 ▪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통합기구의 모니터역할

라. 프로그램 사례 : 교육통합프로그램

(1) 통일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2) 남녀평등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3)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

- 목 차 -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연구의 필요성 ····· 1
나.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가. 연구내용 ····· 3
나. 연구방법 ····· 4

Ⅱ.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와 여성정책 ····· 8

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 ····· 8
가. 3단계 통일구도 ····· 9
나. 단계별 추진방안 ····· 10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 ····· 18
가. 관련이론 논의 ····· 18
나.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 24

Ⅲ. 실질적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과 여성참여 ····· 31

1. 실질적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 ····· 31
가. 1948년 남북연석회의 ····· 32
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 34
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 35
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 37
2. 여성관련 통일단체 활동현황 ····· 39
가. 통일관련 여성단체의 성장 ····· 41

나.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의 발전 ····· 42
다. 여성단체의 통일교육 ····· 48
3. 독일통일에서의 여성정책 ····· 50
가. 통일 후의 여성상황의 변화 ····· 50
나. 통일 후의 여성정책적 발전 ····· 57
다. 통일 후의 여성관련법의 발전 ····· 58

Ⅳ.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별 분석 및 과제 ····· 61

1. 성 관점의 정책방향 ····· 61
2. 여성관련 분야별 분석 및 정책과제 ····· 64
가. 생활문화 ····· 64
나. 가족 ····· 75
다. 교육 ····· 92
라. 노동 ····· 103
마. 복지 ····· 118
바 여성단체 ····· 136
3. 전문가 조사결과 및 워크숍 결과 ····· 145
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145
나. 전문가 워크숍 ····· 165

Ⅴ.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강화 방안 ····· 169

1. 기본 방향 ····· 169
2.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 170
가. 남한의 여성정책역량강화의 필요성 ····· 170
나. 역량강화전략 ····· 172
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 181

3. 추진과제 ····· 184
가. 실질적 남북통합 이전단계 과제의 지속적 추진 ····· 185
나. 여성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 187
다. 단계별 추진과제 ····· 191
4. 프로그램 사례: 교육통합프로그램 ····· 195
가. 통일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 196
나. 남녀평등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 201
다.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 ····· 205

Ⅵ. 결론 ····· 209

참고문헌 ····· 211

부 록 ····· 225

- 표 목 차 -

<표Ⅰ-1>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 5
<표Ⅲ-1> 통일 관련 여성단체 분류 ····· 43
<표Ⅲ-2> 여성 통일교육 실시 단체와 사업내용 ····· 48
<표Ⅲ-3> 여성 대상 통일교육안 사례 ····· 49
<표Ⅳ-1> 남북여성의 지위 비교 ····· 62
<표Ⅳ-2> 남북통합의 기간 및 이유 ····· 146
<표Ⅳ-3>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분야 ····· 147
<표Ⅳ-4> 실질적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 및 이유 ····· 148
<표Ⅳ-5> 법 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49
<표Ⅳ-6> 행정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0
<표Ⅳ-7> 정치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0
<표Ⅳ-8> 생활문화 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1
<표Ⅳ-9> 가족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1
<표Ⅳ-10> 교육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2
<표Ⅳ-11> 노동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2
<표Ⅳ-12> 복지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3
<표Ⅳ-13> 건강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3
<표Ⅳ-14> 여성단체 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 154
<표Ⅳ-15> 동질성의 지키거나 버려야 할 측면 ····· 155
<표Ⅳ-16> 통일의식 함양 교육과제 ····· 156
<표Ⅳ-17> 남북한 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 ····· 157
<표Ⅳ-18> 여성평화운동 활성화 과제 ····· 158
<표Ⅳ-19>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 ····· 159
<표Ⅳ-20> 각 주제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조치 ····· 160
<표Ⅳ-21> 북한여성바로알기 및 통일문화운동의 전개 ····· 161
<표Ⅳ-22> 통일국가 대비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 162
<표Ⅳ-23> 남북한 공통여성의제 발굴 및 추진 ····· 163

<표Ⅳ-24> 남북통합과정에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 163
<표Ⅳ-25> 여성의 통일역량증진 및 세력화 방안 ····· 164
<표Ⅳ-26> 제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 구축 ····· 164
<표Ⅳ-27>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활성화 전략 ····· 165
<표Ⅴ-1>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영역 및 내용 ····· 203
<표Ⅴ-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세부 교육내용 ····· 204
<표Ⅴ-3>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 207
<표Ⅴ-4> 평화교육 프로그램 ····· 208

- 그림 목 차 -

<그림Ⅰ-1> 연구절차 ····· 7
<그림Ⅱ-1> 3단계 통일구도 ····· 10
<그림Ⅱ-2> 단계별 기구도 ····· 15
<그림Ⅱ-3> 각 기구간의 상호관계 ····· 1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국가들이 이념대립을 종결하고 탈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평화공존체제로 전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오랜 동안의 분단상황은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고착과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 등의 단절을 심화시켜 남북한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그 고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6·15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 중요성을 갖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후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은 통일기반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남한정부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단계를 상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구성과 동시에 경제사회공동체를 실현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통일국가 준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 통일론 중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방안은 통일준비의 완결편으로 남북한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통일역량을 구축, 실행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통일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정치적 차원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회·문화적 통일분위기 형성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통한 여성들간의 통합으로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즉 남북한 여성들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생활문화 등)에 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상호이해의 증진과 통합과정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과 이를 제도화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엔에서는 각 분야에의 여성참여를 중시하고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질적 남북통합 단계에서도 각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통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운동은 사회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여성들의 통일운동은 군축 및 방위비 삭감, 북한동포돕기, 남북여성교류, 북한이탈여성주민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여성들이 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은 통일관련 주요정책과 통일을 위한 참여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들어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10월 16~17일(2일간) 금강산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개최되어 남북한 여성 총 600여명이 모여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민족의 화합과 단합에 기여하는 여성역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재인·장혜경(2000)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연구」는 통일과정에서 여성과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특히 여성들이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재인·장혜경·김원홍(2001)의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에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통합단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강조되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한정부의 통일정책기조가 남북대결에서 신뢰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나아가서는 통일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적 접

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통일주체로 인식하여 여성들 특유의 강점을 활용할 때 통일을 보다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 남북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한 여성대표배경의 이질성과 상호방문기회의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남북여성들간의 교류와 협력의 한계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
  (가) 3단계 통일구도
  (나) 단계별 추진방안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
  (가) 관련이론 : 남북통합. 성주류화
  (나) 남북통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3)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
(4) 여성관련 통일단체 활동현황
(5) 독일통일에서의 여성정책
(6)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분야별 분석:생활문화, 가족, 교육, 노동, 복지, 여성단체
(7)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
  (가) 기본방향

(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다) 추진과제: 실질적 남북통합이전 단계과제의 지속적 추진, 분야별 추진과제, 단계별 추진과제
(라) 프로그램 사례: 교육통합프로그램

나. 연구방법

(1)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
- 남북통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제도화 방안 수립의 시사점 도출과 이론적 기초 설정
- 남북통합 관련 남북한 여성정책 분야의 파악과 여성정책 실행방안 프로그램 예시

(2) 전문가 설문조사
- 국내의 평화 및 통일 관련전문가 및 관계 분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여성교류를 제의한 여성단체,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정당 여성국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전문가 집단 등) 남북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남북통합과 여성의 역할, 남북통합의 추진과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실시.

<표 Ⅰ-1>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내용		구체적 항목
남북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남북통합을 위한 소요기간 및 이유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분야 ◦실질적 통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여성관련 영역	남북한 이질적인 측면과 극복방안	◦행정구조분야 ◦정치참여분야 ◦법 분야 ◦교육분야 ◦가족분야 ◦노동분야 ◦복지(보육)분야 ◦건강분야 ◦여성단체분야 ◦생활문화분야
	동질성의 지켜야할 부분과 버려야할 측면	◦지켜야 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
	여성관련 과제	◦여성들의 통일의식함양 교육과제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 정책 방안	각 주제에 대한 견해와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남북한 여성의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홍보 실시 ◦북한여성 바로알기 운동 활성화와 통일문화운동의전개 ◦여성들의 통일과정 정치적 참여확대 구축 ◦여성들의 통일역량 증진과 세력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3국의 여성과의 협조체제 구축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활성화 전략	◦기본방향 ◦법적 근거 ◦행정적 조치 ◦추진전략

(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별 워크숍

- 성 관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연구진과 생활문화, 가족, 교육, 노동, 복지, 여성단체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워크숍 개최.

(4) 한중 워크숍 참가

- 한·중 워크숍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중국 심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002.11.25~29) 특별히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내 동포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성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3국 특히 연변여성 및 중국 동포여성들의 역할 논의.

(5) 자문회의

- 통일관련 정부관계자 및 연구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그리고 여성학 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진행과정과 방법,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과 구체적 항목에 대한 검토와 남북한간의 문제점 극복과 바람직한 통일방향 및 남북한 여성통합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

(6) 중간보고 평가회와 학술회의 개최

- 2차례의 중간보고 평가회 (2002년 6월과 10월, 통일연구원)를 통해 남북통합단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실질적 여성정책방안에 대한 점검
-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하에 협동연구 학술회의 (2002년 11월 5일, 세종문화회관)가 개최되었으며 정책방안들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위와 같은 연구방법 하에 본 연구가 추진해온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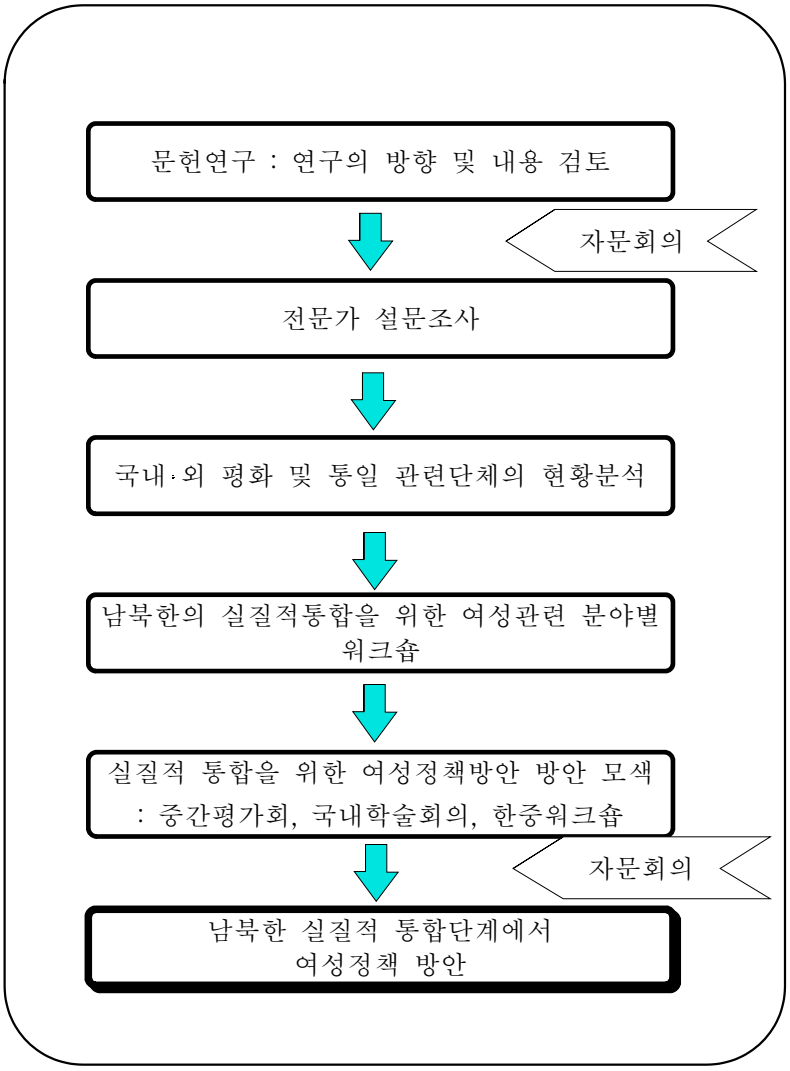
문헌연구 :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검토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외 평화 및 통일 관련단체의 현황분석
남북한의 실질적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별 워크숍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방안 모색
: 중간평가회, 국내학술회의, 한중워크숍
자문회의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방안

<그림 I-1> 연구절차

Ⅱ.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와 여성정책

본 장에서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위해 실질적 남북통합의 주요 내용인 3단계 통일 구도와 단계별 추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통합이론과 성주류화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남북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분야의 여성정책적 이슈를 파악해 볼 것이다.

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의미[1)]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확립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3단계 -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 - 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남북통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헌장' 등을 만들어 남북한이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과도체제를 형성,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가지면서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남북통합단계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동안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그 목표로 한다. 남북통합은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과도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합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란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통합은 완전한 통일국가

1) 통일연구원(2002)에서 제시한 것으로 협동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임.

직전단계로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구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통합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전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민주적인 국민합의 도출, 북한의 통일방식 수렴의지, 주변국들의 우려 불식 등과 더불어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유도하는 등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신뢰기반의 구축은 교류와 협력의 수적 확대보다는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교류와 협력을 하나 하나씩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제도화가 바로 남북통합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3단계 통일구도에서 남북통합단계의 의미와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3단계 통일구도

남북간 이질화 심화, 급격한 통일시의 후유증 등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구도를 설정한다.

- ○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속에서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는「기본합의서」이행·실천단계를 의미한다.
- ○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를 통하여 증진된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1민족 2국가」의 「남북연합」을 실현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공동생활권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남북연합헌장」또는 「민족공동체헌장」의 실천단계를 의미한다.
- ○ 「통일국가」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통일헌법」의 실천단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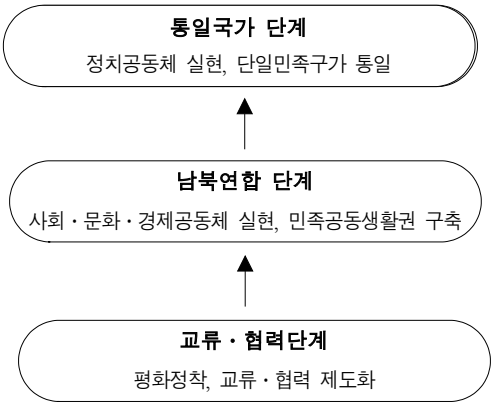

자료: 협동연구 내부참고자료. 통일연구원(2002)

<그림Ⅱ-1> 3단계 통일구도

나. 단계별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정책은 대내·대북·국제적 차원의 정책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한다.

- 대내차원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참여를 극대화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내적 통일 기반을 완비하여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구현한다.
- 대북차원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위험이 항구적으로 소멸된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통일기반을 완비한다.
-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제도화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들과 적극 협조하여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

제적 통일기반을 조성·완비한다.

○ 남북정부 차원에서 정책협의와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추진방안

(가)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실천」 단계를 의미하는 바, 남북대화가 본격화 될 때 화해·협력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한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제도화를 목표로 정치, 외교·국방, 경제, 사회·문화의 4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기본합의서」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체제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을 이행 ·실천한다. 특히 상대방의 특정인사 및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우선 실시하고, 관영방송을 통한 비방·중상부터 금지하고,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민영매체의 비방·중상도 금지한다. 또한 남북 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법률·제도적 장치를 공동조사하고 시정을 검토하되, 상호주의에 입각하도록 한다.

○ 외교·국방분야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상호 대결과 경쟁을 지양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대화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대한다. 북한의 개방·개혁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바, 우리측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기본합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한다. 즉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행동을 금지하고 비무장지대내 모든 군사시설과 장비 및 병력을 철수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내 평화구역을 조성한다. 한편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바,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평화협정」체결, 「남북연합 헌장」내 평화조항 삽입 등의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고,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북간 적대관계 및 전쟁상태 해소,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경계선 상호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으로는 ①한·러, 한·중, 미·북한, 일·북한간의 교차불가침협정형, ②주변4국 등의 관련국 조약보장형, ③유엔 보장형, ④역내 안보협의기구를 통한 다자적 안보보장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간 교역 확대, 합작사업, 자원 공동개발, 다자적 협력 등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경제공동체 형성기반을 조성한다. 즉 남북직교역 확대를 위해 통상·통행·통신협정 체결, 교통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음으로써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과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지하자원·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도 모색하며, 해외에서의 합작생산과 「두만강유역개발」등과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한 경제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인적교류,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우편·통신 확대 등을 위해서 경제원조와 대규모 설비투자, 상업차관 보증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직접교류방식보다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방식으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바, 제3국 개최 각종 학술대회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에 남북대표가 공동 참가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초과학·순수학문·전통예술·순수예술·민속학 등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의 자료 교환 및 전시 등을 추진한다.

(나)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 헌장」또는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함으로서 「남북연합」단계로 이행한다. 즉 「남북연합 헌장」에는 민족통일의 과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통일실현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운영기구 설치방안, 합의된 통일방안, 상호불가침, 평화보장방안, 한국전쟁 등 과거 청산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즉 「남북연합 헌장」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이 각기 내부적으로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다만 「남북연합 헌장」은 국제법상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문서로서 성격 규정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한 민족공동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정치분야에서는 북한에서의 정치적 변화 속도에 맞추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정치단체 및 정당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특히 통일단계에서의 남북 정당간 통합을 감안하여 이념적·정치적 영역에서 상호이해 및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 외교·국방분야에서는 해외주재 남북 대사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남북한 해외주재 공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기구 및 제3국에서 외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국가단계에서의 외교적 통합에 대비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내 「평화구역」을 「통일평화시」로 발전시키고, 「통일평화시」내에 「남북연합」의 각종 기구와 각종 회의시설 및 남북문화센터, 민속박물관, 남북교류행사장 등을 설치한

다. 또한 남북한 단일통합군 구성을 위한 기본 구도를 남북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에 입각하여 구조적 군비통제를 실시한다. 즉 「공세전력배치 제한지대」를 설정하여 공격용 무기 및 병력을 후방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또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폐기하고, 장갑차, 미사일, 상륙함정 등 공격용무기를 감축하며, 재래식 무기 및 병력을 감축하며, 한편 남북공동감시단 및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축을 감시·검증하고, 나아가 단일통합군 구성에 대비하여 무기체제, 군대편제, 군사전략 등을 단일화해 나간다.

○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간의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관세동맹을 통하여 역외 국가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남북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경제부문별 통합기구를 설립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즉 남북한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 및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채택하는 「관세협정」을 체결하고, 도량형 및 기술을 표준화 한다. 그리고 유럽공동체 초기의 부문별 경제협의체와 유사한 형태의 「남북한 석탄·철강 공동체」, 「남북한 원자력공동체」, 「남북한 전자산업공동체」등 부문별 경제통합기구를 설립하고, 산업구조 조정의 대상산업, 품목선정, 구조조정 방법, 유망산업 선정 및 지원방법, 쇠퇴산업 이전, 실업대책 등에 대해서 공동 협의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경제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북한의 에너지, 전력산업 및 교통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공동 투자한다. 나아가 북한의 가격자유화조치 및 민영화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북한의 개혁조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즉 북한 의 가격개혁 과정에서 통화관리, 재정, 환율·이자율 조정, 국제수지 관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기업간 기술제휴, 북한민영화계획에 대한 남한기업의 참여, 민영화과정에서 수반되는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한다.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단체 및 지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간다. 즉 학술·문화·체육·종교 등 각종 민간단체간 공동활동을 확대하고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확대 및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그리고 신문 및 방송 개방을 통하여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민주의식 형성을 촉진한다.

○ 기구 구성·운영방안을 보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정부가 외교권, 국방권, 입법권을 각기 보유한 기초 위에서 쌍방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구를 발전시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상주연락대표부 등을 구성·운영하고, 개인 및 집단 간의 각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각 기구의 권한, 인원구성, 회기, 의사진행방식, 의사결정방식 등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세부 합의서를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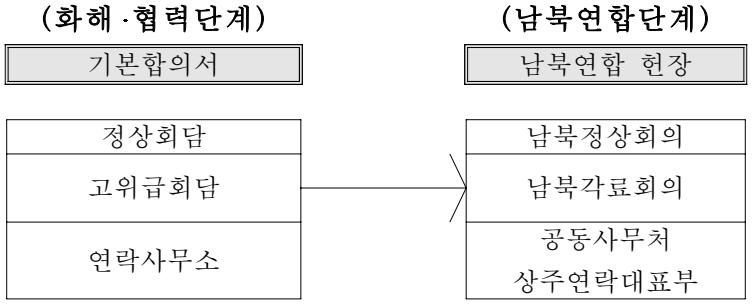

자료: 협동연구 내부참고자료. 통일연구원(2002)

<그림Ⅱ-2> 단계별 기구도

- 「남북정상회의」는 「남북연합」의 현안 및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연합」의 모든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집행조절기구로서 대외활동에서의 상호협력, 군사문제 조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실시 및 사회개방을 추진하여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구축해 나감.
- 「남북평의회」는 대의기구로서 「남북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북각료회의」에 대하여 자문하고 통일헌법의 초안을 협의하는 한편,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방안과 절차에 대하여 협의함.
- 「공동사무처」는 실무지원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 및 「남북평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남북상주연락대표부」는 남북한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조 업무를 담당함. 「남북상주연락대표부」는 서울과 평양에 설치함.
- 남북분쟁 해결기구로 교섭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재판소 등을 설치·운영하되, 「남북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분쟁 해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각 기구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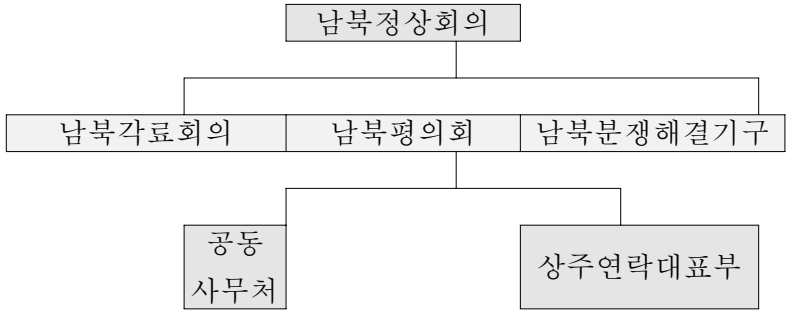

자료: 협동연구 내부참고자료. 통일연구원(2002)

<그림Ⅱ-3> 각 기구간의 상호관계

(다) 통일국가단계

「남북연합」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되고 통일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한은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선포한다.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정치공동체 실현을 통하여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정치분야에서는 북한지역의 정치단체 및 정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남북의 정치단체 및 정당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의 지역적·계층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남북지역 격차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청년층과 지식인, 중산층 양성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차원과 민간단체 차원에서 정치·사회지도자 육성계획을 마련·실시한다.

○ 외교·국방분야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했던 조약·협정 및 대외관계를 정비·통합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대를 축소 통폐합하여 단일통합군을 창건한다. 즉 군병력 및 장비의 통합, 작전개념의 정비, 새로운 안보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문제는 동북아지역 안보, 통일한국의 군사력,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진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경제분야에서는 화폐통합, 세제 단일화 등을 실시하고, 가격체계·재산소유권제도·대외무역체계를 단일화하여 경제제도를 완전 통합한다. 즉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화폐통합을 실시하되, 화폐교환 비율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함으로써 남북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북한지역 주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즉 북한지역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

기 위해 토지 및 기업의 민영화를 확대 실시하고, 경영인·금융인·고급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교육계획을 마련한다.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민간단체들을 통합하고, 북한지역에 공동 및 민간의 사회·문화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지역 주민들이 과도기적 심리불안을 극복하고 다원주의적 사회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공영을 위하여 국민에 대대 광범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 즉 북한지역 주민 재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남한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민족동질성 증대와 통일 후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한국의 건설 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

가. 관련 이론 논의

1) 통합이론 [2]

통합은 '분리된 하나이상의 개체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 또는 상태'이다.[3] 정치학에서는 두 국가간의 정치적 통합에, 사회학자들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간의 통합,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는다. 교류를 통한 남북한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이 정치체제상 별개의 국가이면서도 하나의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상의 통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사회통

2) 안소니 기든스, 윤병철·박병래(역),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1990); 길은배, 「비정부기구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김재인·장혜경,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3) J. S. Nye,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1, 1968. p. 855(재인용).

합의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유럽국가들의 통합연구에서 시작된 통합이론은 통합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측면 중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이론적 관점이 존재한다. 근대화와 정치적 통합을 규정한 와이너(Myron Weiner)는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을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의식을 확립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의 중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 정부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대중간의 간격과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연계를 이룩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또한 통합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 통합적 행동(integrative behavior)을 유발하는 것 등으로 이해한다.[4] 사회학에서의 통합은 봉건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이한 사회적 집단·계층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사회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통일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통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적 통합,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이다.[5] 남북한 사회통합이란 '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남북한 지역의 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인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남북한 여성들간, 그리고 여성집단간의 상호 대면관계를 통해 신뢰관계를 맺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여성 및 여성단체 상호간의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관행을 서로 교환하며, 상호 관계가 균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행위자간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만남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상호간의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Weiner, M.,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 in J. N. Finkle and R. W. Gable(ed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New York: John Wiley & Sons)(재인용).

5) 이인정,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과 전통문화의 역할," 이온죽 외, 앞의 책, p. 183.

2) 성 정책 (Gender Policy)과 남북통합[6]

가) 성 관점과 여성발전전략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회의 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제시하고 있고, 여성부에서는 2002년 현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유엔여성 10년(1975~1985) 설정, 197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의 제정, 1980년 코펜하겐 국제회의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 등 세계적 추세가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유엔의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권장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여성정책적 관심을 관철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해왔다. 1995년 북경에서 있었던 세계 제4차 여성회의의 행동강령(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은 각국의 정부와 여성활동가들에게 "성 시각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속에서 주류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분석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성 영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2월의 공약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 주류화에 대해 EU의 공약(commitment)에 효력을 주기 위한 첫 단계로 주류화에 대한 공약(Communication on Mainstreaming)을 채택한 바 있다. 1997년 2

6) 김재인·유희정·양애경,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서울: 대통령 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김재인·장혜경·김원홍,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월에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기회에 대한 서비스집단간에 의해 동의된 다음의 전략문서(Strategy Paper)에서 공약에서는 성 영향력 평가가 중심문제로 언급되었다.

유엔은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발전에의 여성통합'에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서의 성(gender)'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을 주류화 시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주의적 관점(Women in Development : WID)

여성주의적 관점의 여성발전전략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채택된 전략이었다. 그것은 '유엔여성 10년'기간으로부터 시작되며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에 초점을 둔다.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중심에 두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을 발달의 과정 속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항상 발달과정에 참여하여 왔으나 정책결정자들이나여성들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은 소외집단이고,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도구화되고 소외되었으므로 보상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여성을 특수집단으로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접근의 정책사례는 여성 대상의 활동 및 사업(프로젝트)로 나타나며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수, 여성통계,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사업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

(2) 성인지적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 GAD)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발전에 참여하는 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접근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여성을 발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인지적 접근에서는 젠더(Gender)와 발달(Development)이란 두 용어가 병행되고 있다. 즉 여성이 발전

에 참여해왔으면서도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 낸 것이다. 따라서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증진, 여성과 남성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게 되었다.

1995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교육연수와 학력분포를 성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평균 교육년수에서 전체적으로는 10.2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상자들의 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자는 9.37년이고 남자는 11.18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의 평균 교육년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직장을 얻기가 더 용이하고 나아가 동일한 학력을 가졌을 경우에서도 남성들의 보수가 여성들보다 높으므로 부모들은 가정의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경우 딸보다는 아들들을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별도의 이슈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관점이다. 주류화는 두 가지의 분리된 그러나 상호 연관된 과정이 포함되며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MW)'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MG)'이다. 즉, 주류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정치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성(역할)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더 기술적인 용어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나) 남북통합과 성 관점의 여성정책의 연계

여성이 기존에 수행하여왔던 역할에만 초점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 역할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평등사회의 실현은 남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능력을 개발, 활용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즉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주어지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향상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성 차별적 사고와 편견에서의 탈피와 제 사회적, 심리적인 모순의 제거가 여성정책의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통합을 위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협동연구의 주제별 관련 분야에서의 성관점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경제분야 :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대북 투자방안」, 「남북한 실직적 통합에 대비한 북한의 시장제도 정착방안」 연구에서 여성기업인 참여 및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 및 여성참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정치외교분야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방안」, 「남북연합 이후의 남북한 정치공동체 기반조성방안」,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 한다.

○ 교육분야 :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 실천방안」연구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위 분야에서는 여성 참여시의 배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법 및 행정분야 : 『남북한 공직자 인사관리 통합방안』,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연구에서는 공직자 인사관리중 성별 차별 제거방안 및 민법에서의 호주제 개정 방안 등을 중요 의제로 설정,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어야 한다.

○ 문화 및 청소년분야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정비 방안」, 「남북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질적 통합방안」 연구에서는 청소녀들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및 여성문화 전문인에 대한 배려 및 여성문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농업분야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추진 계획 연구」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남북통합단계에서 남한의 여성정책적 과제는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남북통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 등) 더불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해결되어져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들이 제안되었으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제안된 내용들 중에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강조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참여 보장, 예상되는 실업과 성매매 문제 등에 대한 여성의 보호정책, 공교육정책, 여성관련법제 등). 또한 남북여성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여성들간의 네크웍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을 남한측의 행위주체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역할 면에서 보면 남북통합단계를 거쳐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북한 이질감의 극복이다. 여성 특유의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와 더불어 사는 자세,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 평화를 지향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의 의미를 파악하는 성향 등은 앞으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하고 더불어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여성들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여성이 감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및 여성지원계획 수립 : 현재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두 합의서 중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테레비젼 등 다각적인 분야에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종교부문과 여성부문이 빠져있어 그 비중에 있어 중요성이 적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실제 남북간 이루어진 여성교류를 보았을 때 그 중요도는 크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이 체결하는 합의서나 각종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을 한 분야로 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남북통합단계와 통일단계에서 여성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교류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 동·서독의 통일경험이나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작업으로 중

요한 것은 여성이 대표로 참석하여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서독에 의해 흡수되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예멘의 경우 통일이전에 아예 여성교류가 없는 상태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는 남자의 영역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데 이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나 국가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할당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19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한 후, 사회교류·분과위원회에 1명의 여성부 국장급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였는데, 앞으로 정부는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켜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기구에 30% 이상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완성단계에서는 헌법, 가족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법 및 관련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준비과정에 각계의 여성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나 북방정책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 이미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과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여성의 교류는 접촉 및 교류제의에서부터 서로간의 이질적인 체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남한은 여성교류추진에 있어 북한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류추진이 가능하나 북한의 경우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최고위부의 결정이 남북여성교류에 앞서 우선되기에 무엇보다 여성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권력층에 여성교류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의 경험

에서 보았듯이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경주할 때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 점차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여성정치인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실례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IPU 총회,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러시아나 중국의 여성정치인들을 통해 북한권력층에 접근하여 여성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민간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남북한은 분단과정이나 분단이후에 있어서도 독일과는 달리 남한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북한은 통일전략전술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기조 하에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남북한은 서로가 국가중심의 교류협력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사회체제가 개방개혁의 의지 없이 노동당 중심의 변화가 없는 교류정책을 전개하여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남한의 민간단체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작용하는 교류정책의 창구를 보다 민간화 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독일이나 예멘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특히 인적교류에 있어 다양한 교류의 증진은 결국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독일의 통일을 도와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체제 자체가 좀더 비정치화, 탈 군사화 되어야 하고 남북한 교류 또한 보다 민간화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한보다 북한이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양쪽 모두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북한 여성들이 민간 교류차원에서 제3국에서 만나 회합을 갖거나 서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95년 1월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남북한 여성주민접촉 10건, 남한방문 1건, 북한방문 4건 등 총 15건이 성사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여성대표들은 '99년 9월 '남북 여성계 교류 및 대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뒤 2000년 11월에 다시 방문함으로써 남북한 여성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평가할 때 남북한 여성교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여성단체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맞추어 남북여성교류·협력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여성계에서는 먼저 여성교류협력기구 설치의 노력이다.

○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참여의 범위와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98년에는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에 여성상임의장과 공동의장 및 정책위원장으로 여성이 진출하였다. 또한 그 하위분과로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민화협 여성위원회에서는 '99년 8월에 '겨레손잡기 대회'에 참여하고 여성 8·15선언을 결의하였으며, 여성들의 금강산 통일기행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외에도 우선적으로 여성계내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여성단체들의 조정·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구는 지원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보채널 차원에서 필요하다.

○ 다음으로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남북 여성교류 제의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교류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남한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북한측에 제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이미 남북한 여성의 지위비교, 남북한 교류·협력사업과 여성교류의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아직 북한은 획일적인 사회로서 본질적인 사회변화가 없는 한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이나 주제, 행사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이 교류에 있어 정치적

성격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해 지나친 과민반응을 삼가하며 계속 교류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북한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류자세가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문화에 지나치게 흡수된 남한문화는 획기적인 쇄신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북한의 문화도 좀 더 유연하게 개방화되어 국제화시대의 경쟁을 견딜 수 있는 대외 적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들이 교류를 제의할 때 교류의 한계 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우선 남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① 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 요리대회, ③ 미용대회 ④ 여성의 건강문제 ⑤ 농촌총각문제 ⑥ 가정생활 ⑦ 결혼풍습 ⑧ 모성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와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문으로 ⑨ 체육,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여성에 대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학자들간 정보나 자료교류도 병행되도록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후 어느정도 대화나 교류가 진전되면 보다 관심영역을 넓혀나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어떻게 하면 여성정책을 바람직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① 여성의 경제활동과 모성보호 조치 및 보육시설 문제, ② 교육체제의 개선방향과 여성의 참여문제, ③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 ⑤ 자녀교육문제, ⑥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철폐방법, ⑨ 남북여성교류위원회 설치문제 등을 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때에는 여성간 인적교류로서 ① 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③ 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④ 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중심의 자매결연 등을 병행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폐쇄적이어서 문제이긴 하나 여성교류 제의에 있어서 가정이나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별 단체별로 가능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화문제나 정신대 문제 등 제 3국과의 연대가 필요하거나 다

소 정치적인 색채가 있거나 비여성적인 분야인 경우의 교류제의나 접촉방법에 있어서 너무 직접적인 남북교류제의 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접촉시도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후 제 3국을 통한 행사나 만남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방문을 전개하는 점차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로서 UN이나 UNDP 등을 통해 남북여성이 만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여성들과 만났을 때 어느 일방의 우월감과 업신여김으로 만남·대화·교류가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Ⅲ.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사적 발전배경과 여성참여

남북은 60년 가까이 분단을 겪으면서도 실질적인 통합단계로 오기까지 통합을 위한 많은 노력과 희생, 통일방안을 제시하여왔다. 그러한 노력과 발상이 실질적 통합단계로 발전하는데 역사적 배경이 되어 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남북통합의 역사적 발전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여성의 참여 현황을 국내외 관련기관 활동 현황과 제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남북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사적 발전배경

한반도 분단 시기 남북에는 분단적 인식과 대결 구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남북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도 공존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있어서 주역의 한 명인 고 문익환 목사는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것도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 외세가 만들어 준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에도 외세의 분단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는 “통일은 근본적으로 민족 주체성의 주장입니다. 우리를 찍어누르는 외세나 그 외세에 결탁한 이권집단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주체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통일입니다”[7]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북통일은 하나된 한반도에 대한 상을 적극적으로 상정하며 그것을 향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통일은 되었어”라는 말로 응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각만은 아니다. 즉 분단 이후 남북 사이에는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의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존재[8]하였고 남북 정권 당국자의 통일방안이나 전문가들의 통일방안 역시 그러한 남북통합을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

7) 문익환, “민족통일의 실체”, 문익환전집출간위원회 엮음, 「문익환전집 3」 (서울: 사계절, 1980), pp. 36~56.

8) 김귀옥·김정훈, “대북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 (엮음),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pp. 121~122.

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에 발맞추어 여성적 관점의 통합방안이 위치 지어질 수 있다.

사실 남북여성적 관점의 통합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급함이나 절박함은 있지만 아직은 준비정도 면에서는 일천한 수준이다. 여성이 중심이 된 남북 교류와 대화도 1991년 진보적 교회여성단체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 최초의 일이다.[9] 1990년대 이래로 여러 가지 남북 여성의 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통합단계에 대비한 여성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의 마련되지 않아, 소수의 여성운동단체나 여성 지도자 및 지식인에 의해 시론 수준 정도에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서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제시한「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등을 들 수 있고 아직 이 방면의 풍부한 연구물은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남북여성의 교류와 대화 및 통합논의에는 사회 전체의 교류와 대화 및 통합논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시기마다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존재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통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남북통합의 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배경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여성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으로서 남북의 당국자나 지도자에 의해 성립된 사건이면서 이후 통합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1948년 남북연석회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 4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1948년 남북연석회의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아직 적지 않

9) 정현백, "한국 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엮음,「여성과 평화」(서울: 당대, 2000), p. 166.

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직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되기 전 56개 좌·우를 막론한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통일조국을 위해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미·소 양군 철수를 요구하는 자주적 통일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10]

그 연석회의는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545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고, 4월 26일에는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4인이 참가한 4김회담과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남북요인회담이라고도 함-이 열려 당면 통일정부 수립안을 작성하여, 4월 30일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공동성명서'로 발표되었다.[11] 4개항의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제의대로 외군을 철거할 것,
둘째, 외군 철거 후 내전 발생 방지를 약속할 것,
셋째, 외군 철거 후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입법기관을 설치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넷째, 남북 단독선거 반대[12]

당시 분단이냐, 통일이냐는 기로에 서있던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회의의 성격 상 여성 중심의 통일 논의의 여지는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에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를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였다. 또한 56개 참가 정당 사회단체 중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박성애), 남조선민주여성동맹(남쪽 대표, 유영준), 자주여성동맹과 같은 3개의 여성단체들[13]이 참여하였고 4월 23일 연석회의에서는 여성

10)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p. 23.
11) 송남헌, 「해방 3년사」III (서울: 까치, 1985), pp. 560~561.
12) 서중석,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서울: 한울, 2000), p. 221.
13) 해방 당시 남한에서 생긴 여성단체로는 '조선여자국민당'(위원장 임영신, 고문 이승만박사부인), '건국부녀동맹'(위원장 유영준), '한국애국부인회'(위원장 유각경), 조선부녀총동맹(위원장 유영준, 부위원장 정칠성, 허하백) 등

대표의 축사도 있었고 또한 프로그램에는 최승희의 무용 공연이 포함되었다.[14]

1948년 남북연석회의 자체는 여성의 통합논의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이후 남북의 통일논의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통일의 이정표로서 거론되어 왔다. 또한 남북에 분단정권이 세워지기 직전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하여 입장을 초월하여 분단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대 초 미국과 소련 사이에 데탕트 분위기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핑퐁외교로 상징되는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파급되었다.[15] 당시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유신헌법과 통치권 강화를 통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 긴장의 완화가 필요했고[16],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 극단을 치달았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김일성의 수령 일인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이유 등, 국제적 요인과 남북 정권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닿아 그 산물로 '7·4남북공동성명'이 등장하였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7항으로 구성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의

이 있었다. 조선부녀총동맹은 건국부녀동맹의 후신이고 이후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바뀌게 되었고 1947년부터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였다. 당시 사회단체의 강령이나 선언문에는 남북을 통털어 사고하는 인식이 강하다. 송남헌(1985),「해방3년사」I, 서울: 까치; 민주주의민족전선 편집(1988[1946]),「해방조선」, 서울: 과학과사상, pp.216-221.

14) 송남헌, 위의 책, pp. 562~563.

15) 심지연, 앞의 책, p. 59.

16) 김형욱·박사월, 「김형욱 회고록」제3부, (서울: 아침, 1085), p. 115.

3대 원칙과 중상·비방 중지, 다방면적인 교류 실시,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개설, 남북적십사회담 개최 등 긴장완화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공동성명은 비록 남북 정권의 정략적 목적에 이용되고 말았으나 이후 남북 대화 및 통일논의의 정초가 되었다. 특히 그 이전까지 남한 당국에 의해 금기시되어 있던 평화통일론이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 직후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창하며 "전쟁억제와 긴장완화"를 위하여 사회문화, 예술, 학문의 교환, 체육교류, 방송 상호 청취,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17] 또한 북한에서도 체육교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체신관계 대표회담 등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취하였다.[18]

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와 1991년 월 17일 남북 유엔동시 가입과 같은 사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견인차가 되었다. 1990년대 전후하여 한반도에는 분단 이래로 찾아보기 힘든 사건들이 점철되었다.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측 전국대학생협의회 대표로 임수경이 불법 참여하였고, 이후 대학생들의 불법 방북이 관례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식상화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의 방식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1990년 8월 15일 '남과 북, 해외동포들로 범민족대회'가 개최된 이래로 불법, 합법 시비 속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로 8·15 축전은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8월 15일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민간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17) 노중선 엮음,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96), pp. 156~157.

18) 위의 책, pp. 156, 160.

한편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남북간의 접촉·왕래·교역·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19]하였다. 이 법안은 아직은 많은 문제[20]를 안고 있어서 개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과거 단일 창구로 남북 대화가 독점되었던 관례를 깨뜨리고 제도적 범위 내에서 민간인들의 대북 접촉 및 교류, 경협의 양과 질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21]

남북기본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되었다. 또한 1992년 9월 17일에는 기본합의서의 3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와 "제2장 부속합의서, 즉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19) 이 법률 이전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먼저 제정되었다.

20)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 기본합의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접촉 회합 통신 등을 열거했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에 걸맞게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타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교류협력법은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임을 밝힘으로써 통일의 주체인 민족구성원,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교류협력법은 제9조 3항에서 남북간의 모든 물적 인적교류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했다.
둘째,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를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된다. 또 여러 부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위임 입법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장희(2000), "민족화해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의 문제",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민족화해아카데미 발표문.

21)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서울: 통일원, 1992), pp. 1~2.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속합의서 중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은 6조 15항으로 이후 사회문화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였다. 잠시 환기하는 의미에서 6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 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3개 부속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급진전시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1993년 북미간 핵소동과 1990년대 중, 후반 북한의 경제 위기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1세기 남북관계에 일정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이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물론 그것의 견인차 역을 한 것으로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1998년 이래로 2001년말 현재까지의 교류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즉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골자로 하는 '햇볕정책'에 기조를 두고 있다.[22] 이러한 정책은 1999년 6월 '서해교전' 후에도 금강산 유람선이 끊기지 않았고 기업들의 대북 경협사업 역시 계속된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0년 6·15를 전후하여 남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2000년 한해 동안의 방북 성사 건수만 해도 1989년 이래로 총 2,209건 중 804건으로 36.4%에 달한다.[23]

5개항으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은 전 시기 몇 차례 있던 남북이 서명한 문서 중에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데에는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의 내부 역학관계의 변화와 내부적 필요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의 최정상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언문에서 남북 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내용은 제3항과 4항을 들 수 있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3항의 경우 이산가족의 한 측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통합과정에서는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월남인이나 월북인의 상당수가 남성이므로 그 유가족을 부양하고 지지한 데에는 여성의 역할이 크다.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산가족과 여성이 민족통합에 미칠 영향이나 역할에 대해서 심화시킬 필요

22)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주간 남북관계동향」 (서울: 통일부, 2001), p. 20.

23)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2000. 12.1~12.31)」 제114호, (서울: 통일부, 2000), p. 7.

가 있다.

4항의 경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과 그 부속 합의서와 함께 실질적 통합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문서이다.

1987년 이후 대안적인 여성운동단체의 형성되면서 1990년대 법의 제정과 개정운동, 의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화(em-powerment)를 지향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젠더적 담론이 확산되어오고 있다.[24] 그러한 분위기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같은 획기적인 선언으로 유화적인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일로 가는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통합국가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살펴보고 그것이 실질적 통합과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2. 여성관련 통일단체 활동현황

여성 통일운동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통일단체의 고립적이고 개별적이며 생활세계에 안주하고 있는 인식과 활동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성과 연대성을 살리며, 생활세계와 체제의 상호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단체들간, 또는 여성단체와 전체단체와의 연관관계를 통해 전체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비가시화된(invisible) 여성적 지위를 세워나가고 역할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민간단체는 정부기관과의 상호 공조관계를 형성하고 통일관련 전문가 및 일반여성들까지도 협력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25]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관점에서 남한의 통일운동은

---

24) 정현백 외,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 여성정책과, 1998), p. 18.

25) 김재인·장혜경,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사회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여성들의 통일운동은 군축 및 방위비 삭감, 북한동포돕기, 남북여성교류, 북한이탈여성주민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되어 왔다.[26] 특히 2001년 9·11테러와 10·8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전쟁 반대 평화연대 운동이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여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깊은 공감을 형성하며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

이제 실질적 통합 과정에서 국내외에 걸쳐 여성의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여성의 교류와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글[28]에서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전후로 한 활동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여성의 통일운동은 1987년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여성민중이 고난을 딛고 해방되는 주체적 통일운동"을 선언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통일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행사는 진보적 여성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여성을 아우르지는 못하며 주제에

---

26) 정현백, 앞의 글, 2000.

27) 김귀옥,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평화·통일운동의 여성주의적 모색",「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발표문, 2002; 김정수, "9.11 이후 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운동의 새로운 모색",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2002.

28) 남북여성 교류와 통일운동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람. 우선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로는 김재인·장혜경, 앞의 책, 2000; 김재인·장혜경·김원홍,「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9); 정현백, 앞의 글, 2000. 등이 있다. 또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네 차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참가하면서 여성의 평화통일운동을 주도해온 사람 중 한 사람인 김윤옥에 의해 정리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2000. 7. 12)발표문) 등이 있다.

있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에 비해 2000년 6·15 이후에는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다루는 주제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통일관련 여성단체의 성장

우선 2000년 6·15를 즈음하여 통일관련 여성단체들의 비약적 성장-비록 수적으로는 늘지 않았지만-을 보게 되었고 기존의 일반 여성단체[29] 중에도 평화통일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30] 중 평화·통일을 자신의 주요 사업으로서 조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단체로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1997. 3. 창립), 세계평화여성연합(1992. 4. 창립), 통일여성안보회(1980. 4. 창립)와 반미여성회(2002. 4. 창립)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3단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소속단체이고 마지막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소속 단체이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 실행위원들이 실행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관철하기 위하여 창립한 단체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평화교육과 운동, 통일교육과 운동, 평화군축 활동, 국내외 연대활동, 여성적 관점의 평화통일 이론과 정책 개발 등이 있다.[31] 또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통일교(교주, 김선명 목사) 산하의 62개국 여성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참사랑을 중심한 도덕교육을 통해 참된

---

29) 1999년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79개(그 중 75개가 사단법인)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p. 424.

30) 정현백이나 강남식(1999) 등은 '여성해방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일반여성 또는 회원여성'이냐라는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켜 여성 단체를 '여성운동단체', '일반여성단체', '종교여성단체', '일반사회단체여성부문'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현백 외, 앞의 책, 1998, pp. 25~29; 강남식, "여성단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앞의 책, 1999, p. 173.

31) http://wmp.jinbo.net/ 참조할 것.

가정의 가치관을 회복하여 건전한 사회,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힘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교육분과, 통일분과, 환경분과, 청소년분과, 사회복지분과, 문화분과, 종교분과의 국내외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32] 앞의 단체들이 다소 지식인,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단체 활동가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단체로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반미여성회는 여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여성, 노동자, 농민, 기층 민중 여성 중심의 운동단체로서 반미자주, 통일, 여성인권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33]

반미여성회를 제외한 세 단체는 모두 2000년 6·15 이전에 출범하였으나 네 단체 모두 그 직후부터 맹렬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2002년 10월 현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반미여성회가 평화와 통일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2000년 6·15 이후 기존의 여성단체들도 통일관련 행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의 본부나 지역 지부 또는 지역 여성회, 예를 들면 수원여성회, 부산여성회 등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관련 행사를 간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 여성단체들의 연대 활동의 발전

2000년 6·15 이후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은 과거에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뛰어넘어 연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질적 비약을 보이고 있다. 연대 활동은 크게 봐서 통일의 축과 관련한 연대활동과 평화의 축과 관련한 연대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연대 기구, 즉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이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연대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

32) http://www.wfwp.or.kr/ 참조할 것.
33) http://www.banmiwoman.org/ 참조할 것.

<표 Ⅲ-1> 통일 관련 여성단체 분류

대분류	소속 단체
민화협	녹색어머니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행주치마운동,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통일여성안보회 등
통일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7대종단	각 종단 여성위원회

* 출처: 3개 연대 단체의 조사를 통해 정리함.

민화협 관련 여성 단체 19개와 민화협 여성위원회, 통일연대 소속 단체 2개와 여성위원회와 개신교, 불교, 성균관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을 포함한 7대종단 여성위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여성단체들 중에는 민화협, 통일연대, 7대종단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고 상위 단체의 여성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적지 않다.

여성들의 통일 관련 연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다[별첨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사업 현황 2. 교류·협력사업 참조]. 2001년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남북공동행사, 2001년 8·15 축전, 2002년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남북공동행사 등이 민화협, 통일연대, 7개종단이 공동개최하게 되면서 남북 여성 만남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 8·15 축전에서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 여성평양행사"[34]가 성사되어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

34) 본 행사는 2001년 8월 16일 평양인민궁전에서 대표단 및 참관단 22명이 모여 치러졌다.

하에 기조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공동결의문의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북여성들은 8월 1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남북여성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무접촉은 북측이 팩스로 제안하고 남측이 이에 호응하여 개최키로 하였다.[35]

2001년 8·15 축전 당시의 남북여성의 공동결의에 따라 2002년 10월 16, 17일 양일동안 금강산에서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36] 남북에서 여성들이 각각 350여명씩 참가하여 개·폐막식,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 여성토론회, 부문별 상봉모임, 수예 및 미술전시, 유희·오락경기, 공동연회, 공동산행, 합동예술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 대회의 의의를 결정하고, 그 취지 하에 프로그램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경비 일체를 여성 자신이 준비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남측의 경우 진보-보수를 막론하여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들에서 참가자를 선정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개인적·집단적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여성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의 축과 관련한 연대활동은 그 연원은 1970, 80년대 기

35)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2001. 8. 30), "2001 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 중에서.

36) 처음 남북여성통일행사에 대해 남북간에 논의를 한 것은 199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방북하여 조선여성협회와 "남북(북남)여성한마당"대회를 합의하고 온 것에서 출발하였다. 몇 번의 논의 끝에 2001년 8·15 여성토론회에서 공동결의문 형식으로 대회를 도출해 내었고, 2002년 6·15 금강산 민족공동행사 여성부문 상봉회의에서 재확인하여, 이후 실무회담을 거쳐 거행하게 되었다.

독교 여성들이 중심이 된 기생관광반대운동이나 여성노동운동 후원 등에서 찾을 수 있다.[37] 평화운동이 본 궤도에 선 것은 1990년대초 기독여민회, 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된 '방위비삭감 캠페인' 운동과 같은 군축운동과 통일운동을 여성민중의 삶의 문제와 결합시켜 전개하면서부터이다. 평화운동에 있어서 연대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데 가장 주요한 사건이 된 것은 2001년 9·11테러와 그해 10월 미국의 아프간 공격 당시 전쟁반대운동의 전개이다.

당시 국내 25개 여성단체[38]들이 합류하여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결성하였다. 여성들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니 만큼 미력한 힘을 합하여 아프간 난민에 대한 구호 활동이 구체적으로 몇 차례 전개되었다. 또한 각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미대사관 앞에서 반전 1인 릴레이시위를 전개하였고, 공개토론회(2001. 11. 13) 및 행진캠페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범국민서명운동[39]을 벌였다. 또한 문화행사로서 반전콘서트(12.24, 25)를 개최하였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여성회)와 오마이뉴스는 합동으로 '평화쪽지 날리기'를 전개하여 2001년 9. 16부터 2001년 말까지 4,800여건의 쪽지를 날리는 성과를 거두었다.[40]

또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 맹렬히 전개되었다. 연이은 방한반대집회, 차세대전투기(FX)선정반대투쟁 등에 여성운동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전체 연대활동

---

37) 김경희, "생명문화 창조운동-기장여신도회를 중심으로-", 이우정선생 고희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엮음, 「여성 평화 생명」 (서울: 경세원, 1993).

38) 25개 참여단체는 기독여민회, 경기여성연대, 대구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평화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전여대협 등이다. 단 25개 단체가 9·11이후 참가한 전체 여성단체들을 아우른 것은 아니고 '반미여성회'같은 단체는 민중연대에 참여하여 맹렬한 전쟁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39) 이 운동에서 5만여명이 참여한 서명문을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으나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음.

40) 김귀옥, 앞의 글, 2002.

외에도 여성단체 중심의 기자회견과 1인 릴레이 시위, 성명서 제작 및 배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평화여성회가 주도하여 여연 소속의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평화쪽지 날리기를 재개하였고, 국제 여성 평화단체들과의 연대 활동[41]도 형성되었다. 그 외 반전콘서트, 평화바자행사 등과 같은 문화활동도 기획 실행되었다.[42] 또한 2000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의 여성들이 중심이 된 국제 연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43]가 조직되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남북, 해외 연대도 활기를 띠었다.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 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44]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시작으로 1995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운동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8년 10월에 북한 종태위가 먼저 정대협측에 "단일 주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측은 도쿄국제법정에 북한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합의를 보았다. 그 뒤로 남과 북은 2000년 들어 △중국 상하이(3월·남측의 공동기소장 작성 제안) △필리핀 마닐라(7월·남북 공동기소장 작성 원칙 합의) △대만 타이베이(9월·공동기소장 문안 조율) 등 세 차례 열린 국제실행위원회 회

41) 특히 이 시기 이후 평화여성회는 관련 성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의 평화단체, 여성단체들에 보내어 수많은 단체들 및 개인들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며 국제 연대를 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9·11테러 이후 국제평화운동과 동향에 대해 다룬 글로는 정경란(2002. 2)의 "9·11 테러이후 평화운동"(한국인권재단 주최 제2회 제주 학술심포지엄 발표문)을 참고바람.

42) 김귀옥, 앞의 글, 2002.

43) 이 네트워크에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두레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안일순(개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44) 정대협이 1990년 11월에 설립되고, 북측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종태위)가 1992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2월 공동 기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45] 남북 등 아시아지역 피해 8국과 일본 등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도쿄국제법정에는 1,000여명의 세계 인권·평화·여성단체들이 참여해 국왕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는 일본의 수도에서 히로히토 전 국왕을 '2차 대전 전범'으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쿄에서의 1차 재판에 이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차 법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조직을 설치·운영했음을 확인하고 '국가가 인가한 강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46]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5월 3, 4일에는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남북,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역사왜곡 등 3가지 공통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47]

남북, 해외여성단체들의 국제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과정에서 국가 폭력 앞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성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여성의 연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하여 앞으로도 국경을 가로지르는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연대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전쟁 반대 운동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도 높은 것도 그러한 경험이 주는 교훈일 것이다.

요컨대 2000년 전까지는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나 2000년 6·15 이후에는 운동의 방향이나 운동단체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영역을 갖추면서 양 운동의 목표와 방식을 차별화 두면서 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45) 김당,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엮음, 「여성과평화」제2호, 200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엮음,「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 역사·사회학적 연구」(서울: 풀빛, 2001).

46) 「한겨레」, 2000. 12. 6.

47) 「연합뉴스」, 2002. 4. 26.

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일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지만, 통일이 완수된 후에도 평화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므로 평화 운동과 통일 운동은 함께 하면서도 따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다. 여성단체의 통일교육

2000년 6·15 이후 확산되고 있는 여성의 통일운동 방식 중 하나는 통일교육 실시이다. 통일교육지원법(1999)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가 창립되면서 국가적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48] 여성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육협의회 내에 여성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2년 6월 현재 통일교육협의회에 가입하여 일부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50개이고 이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여성 통일교육 실시 단체와 사업내용

분류	단 체 명	사 업 내 용
통일교육	여성사회교육원	통일교육 전문가 교육
	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통일준비여성지도자교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사업
통일교육지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 여성 교류와 통일교육세미나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촉진 방안 강구
통일기행	부산여성회	남누리 북누리 2002여성통일대행진
	세계평화여성연합	통일기행
기타	통일여성안보회	통일기행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돕기 상담사업

* 출처: 통일교육협의회 제공(2002. 6)

48)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는 2002년 8월 24, 25일 양일간 영남지역 여성단체의 임원과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통일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원이나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등에서도 꾸준히 여성 지도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교육이나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사회교육원(원장 김희원)이 2000년부터 매년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여성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여성 대상 통일교육안 사례

일시	횟수	시 간	주 제
1일	1강	10:30-12:00	마음의 벽 허물기
	2강	12:40-2:00	통일정세와 여성
	3강	2:00-3:30	갈등해소와 협상
2일	4강	10:30-12:00	북한문화 익히기
	5강	12:40-1:40	남한여성이 본 북한여성의 삶
	6강	1:40-2:40	북한여성의 삶
	7강	2:40-3:30	북한여성 삶에 대한 토론
3일	8강	10:30-12:00	남북한의 다른 사회모습과 여성정책 알아보기
	9강	12:40-2:00	독일통일에서 배울 점 찾아보기
	10강	2:00-3:30	우리가 함께 만드는 통일

* 출처: 여성사회교육원 제공(2002. 10)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회 실시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원의 여성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평화통일의 내용을 잘 담고 있으며, 강사진도 이 방면의 전문가들로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찰적으로 보건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여성단체의 통일교육을 보면, 통일교육에 교육생으로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중년 여성층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대상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여성인구나 여성단체의 수에 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수는 너무 미미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폭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홍보가 시급하다. 또한 통일과 생활이 접목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49]

그밖에도 남북 여성의 실질적 통합을 앞당기는 활동으로서 북한여성 및 어린이 지원 활동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지원 품목은 주로 유아용 분유, 여성용 의복, 옷감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단체들이 모은 총액이 전체 모금액의 1% 될까 말까 하여 여성단체의 무기력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50] 이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통일이라는 문제에 소극적 위치에 놓여져 있었고, 여성의 경제력이 취약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3. 독일통일에서의 여성정책

독일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김재인·장혜경(2000)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동서독여성들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후 여성상황의 변화와 통일 후의 여성정책 및 여성관련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통일 후의 여성상황의 변화

1) 통일협약과 여성

통일협약의 체결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미진하여 낙태에 관한 규정, 사회법 및 노동법 상의 규정 등이 전혀 여성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직후 독일여성문제로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49) 김귀옥, "여성의 평화·통일문제 인식",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동녘, 2002), pp. 349~351.
50) 정현백, 앞의 글, 2000, p. 174.

탁아소·유치원의 증설, 시간연장운영 및 종일제 학교 운영 등이 제기되었고 독일형법 제218조의 낙태처벌규정의 삭제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모두 구 동독여성들이 누렸던 것이다. 이 문제들은 통일협약 제31조에 따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를 더 발전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시에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서로 상이한 법적, 제도적 상황을 가정과 직장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제를 만드는 입법적 과제로서 다루어졌다. 또한 동 협약은 태아의 보호와 임산부의 자문과 사회적 보호의 보장에 관한 법적 청구권을 합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이에 관한 입법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였다.

2) 통일 후의 새로운 상황

통일 후 독일여성들은 90%이상의 여성취업에 상응하는 동독의 탁아시설 등의 양적으로 나은 구 동독의 제도와 이에 관한 구 서독의 질적 수준을 조화시킴으로써 여성지위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통일 후 구 동독의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과 중년여성, 교육제도의 변화, 실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직업을 가진 주부들의 경우 노동시장조건의 변화와 양육에 관한 제도적 조건의 변화가 큰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의 여성, 청소년부는 “통일독일에서 구 동독 여성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어디에 이들의 문제가 있으며,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주로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중심으로 구 동독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구 동독의 기본적 조건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여성관련연구기관과 정책기관 및 여성단체들은 직업상의 남녀평등, 경제사회통합과 구 동독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와 기회, 통일독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동독의 입장에서 본 통일독일의 여성정책적 요구, 서독입장에서 본 통일독일의 여성정책적 요구 등의 테마를 다루었다. 특히 구 동독의 여성학자, 여성예술가들은 여러 모임에서 구 동독여성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가 활발했는데, 1989년 구 동독의 변화 이전에는 모든

연구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동독에서의 여성상황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명제에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여성의 실제의 실태, 지위에 관한 객관성있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또 동독과 서독에서의 평등정책, 동독과 서독에서의 여성과 가정, 동서독의 가족법 등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여성문제 내지는 여성연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던 구 동독에서 대학연구소에 학제적 여성 연구센터가 생기고 여성연구에 관한 학제적 연계강의가 개설되고 동독내에 자발적인 여성단체가 조직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 후 동서독의 여성들은 서로의 여성의 삶을 비교연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찾으면서 서로가 이루어 놓은 것을 존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했다.

3) 통일 후의 여성상황의 변화

(1) 직업생활

1995년 현재 취업인구의 40%이상이 여성이며, 530만 시간제 취업자 중 90%가 여성이다. 이들 중 3분의 2는 자녀가 있다. 반면 종일근무자의 경우에는 41%만이 자녀를 두고 있다. 1994년 구 서독의 시간제 근무자리는 450만인데 이중 여성이 약 90%였으며, 구 동독은 66만 3천5백 자리가 시간제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6만 자리가 늘어난 것이었다.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일치점은 여성들의 직업그룹이 10개 내외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 서독 취업여성의 3분의 2이상이 단지 사무직, 상점원 등의 10개 직업군에 속하며, 구 동독 여성의 73%가 사무직, 공무원 등에 속한다. 다만 산업분야와 기능직에서는 구 서독보다 구 동독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4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변호사가 18%, 공증인중 여성인 19%, 음악가 중 31%가 여성, 예술가 중 38%가 여성, 문학분야에 41%가 여성이다. 전체공무원의 47%가 여성이며, 상위직에는 27%의 여성이 근무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남성에 비해 25%-30%정도 여성이 적다. 통일 전 90% 이상이 취업을 했던 구 동독

여성들의 (구 서독 50%였음) 경제적 삶의 변화는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노동시장조건의 변화와 탁아소 등의 지원정책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이 쉽지 않았다. 또한 양독일에서 여성들의 삶이 달랐듯이 이들의 직업관도 달랐다. 1991년 조사에 의하면, 일과 직업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7개 항목으로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 동독여성들은 64%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구 서독 여성들은 39%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구 동독사람들이 구 동독의 시스템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여성정책이 속한다. 특히 가정과 직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취해진 정책들이 그것에 속한다. 그 향수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구 동독여성과 구 서독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많이 실시되었는데, 가정, 부부관계, 직업에 대하여는 양독여성의 견해차이가 크지 않으나 모성과 직업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양독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큰 차이는 구 동독여성들에게 있어 여성의 취업은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과정의 결과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 경제적, 권력정치적 차이의 콤비네이션이다.

1995년 11월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의 젊은 여성들은 자녀출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직업의 중단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16~24세의 여성 중 구 동독여성의 68%, 구 서독여성의 53%가 오로지 육아 휴직기간만 직업을 중단한다고 답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 전체로 볼 때 자녀로 인한 휴직 후 다시 직업으로 돌아오는 여성은 1984년에 비교해 4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2) 대학

1980년대 말에는 구 서독의 여대생 수가 40%였으나 1996년 통일독일에서의 여대생의 수는 46%이다. 전공별 변화는 크게 없으나 교사, 의사, 약사 등의 선호는 여전하며 다만 교사가 되기 위한 전공은 1979년에

비해 6%줄어든 반면 수학/자연과학은 8%, 공학은 4% 늘어났다. 구 동독의 통일 전 1989년 상황을 보면 구 동독은 국가계획에 의한 대학교육제도였으므로 대학의 학과와 학생정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구 동독은 여대생의 수가 거의 50%수준이었으며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씩 줄었다. 교육, 문학, 언어학 분야는 70% 이상이 여학생이었으며, 의학은 이미 1969년경에 79%가 여학생이었다. 이러한 의사의 여성화는 70, 80년대에 오면서 할당제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1989년 의학도의 55.2%만이 여학생이었다. 또한 공학과 자연과학에도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1989년 수학과 자연과학의 여학생비율은 46%, 공학은 25.3%였다. 이것은 구 서독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통일 후 구 동독지역 여자고교졸업생들의 대학지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89년의 통일전과 1994년을 비교하면 예술, 문화전공에서 15%가 늘었고, 자연과학, 공학전공은 많이 줄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개인의 적성과 가능성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지금의 노동시장상황이 전형적인 여성직업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에게 공학 등을 더 공부하게 하는 연방과 주의 정책으로 이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고는 있으나 이들이 실제로 직업의 기회가 어렵고 또 사실상 직장과 가정의 조화가 어려운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1993년 현재 구 서독 주들에서 학문과 예술 분야의 여성은 약 22%이다. 대학에서의 여성은 37%인데, 이중 학문, 예술적 직원은 26%, 강사와 조교는 24%, 교수는 7%이다. 교수 중에도 정교수에 해당하는 C-4 교수 중 여자는 4%뿐이라고 한다.

(3) 정치참여

① 연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보면, 1983년 9.8%, 1987년 15.4%, 1990년 20.5%, 1994년 2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당별로 보면 CDU/CSU: 13.9%, SPD: 33.7%, FDP:17.0%, Buendnis 90/Die Gruene:59.2%, PDS:43.3%이다.

② 주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구 서독주	구 동독주
CDU	20.6%	15.2%
CSU	8.7%	8.7%
SPD	27%	35.2%
FDP	15.4%	×
Buendnis 90/Die Gruene	46.1%	40.4%
PDS	×	48.4%

③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10만 이상의 주민이 있는 시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수는 평균 30.2%이다. 특히 Freiburg/Breisgau가 43.8%, Postdam과 Muenchen이 40%로 높은 편이다.

④ 구 동독의 여성단체의 변화

1947년에 설립된 독일민주여성연맹(DFD)은 1953년 설립자가 교체된 이후 1989년 11월까지 SED와 인민의회의 구성원인 Ilse Thiele가 장기집권한 조직이었다고 한다. 이 조직은 지방에 행정구역중심으로 210개의 가사 및 가정에 대한 상담센터를 설치하였고, 1980년대 말까지 150만의 회원이 가입된(이 중 30%는 53세 이하) 정당여성중심의 조직이었다. 사회주의 공산당의 정치적 이념을 설명하고 사회주의의식의 교육이 주요 과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 말/1980년대 비공식적 여성그룹이 출현하였는데, 평화보장과 환경보호에 관한 “평화를 위한 여성 이니시어티브”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1982년 3월 인민의회에서 병역법 통과 시 여성의 병역의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동베를린, 라이프찌히, 할레 등의 도시에서 조직되었고 서독, 네델란드 등과 연결하였으며 주로 교회조직과 접촉했다고 하며, 평화테마 외에도 가정의 사회화, 교과서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문제, 교회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조직은 30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컸으며, 통일의 시기에 구 동독의 개혁을 이끈 “Neue Forum”에서의 시민운동에 중요한 역

할을 했다.

1989년 말 여성단체와 여성학자그룹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정당, 지도직 모든 분야에서의 할당제 요구, 모든 국가기구·정당·노동조합에의 특별여성위원회설치 요구, 친가정적인 노동시간 등을 요구했다. 이 당시 모든 정당과 그룹은 이 개혁의 시기에 여성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정의로운 과제분담을 취했으며, 구 동독 CDU는 여성당원이 46%로 지도직에 여성의 참여를 가장 강하게 했다. 또 Neue Forum도 여성의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Unabhaengige Frauenverband(UFV:독립여성연맹)은 1989년 12월 20개의 단체를 합쳐 설립하였는데, 1990년 3월 18일 국회 선거에서 녹색당과 연대하여 8명 당선자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국민대표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구 동독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직은 1990년 2월 234개 단체가 연합되었으며, 1992년에는 서독에도 오픈하여 여성의 정치이해 공동체로서, 세계적 여성운동의 구성원으로서 억압적 지배와 사고구조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며, 비폭력적, 민주적, 환경지속적, 사회정의적, 다문화적 세계의 창조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슬로건은 "여성없이 국가를 만들 수 없다"였으며, 1990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여성정치를 한다"고 했다. 특히 통일과정의 중앙원탁회의에서 헌법안, 언론법, 사회헌장, 평등권규정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성관계, 모든 삶의 분야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등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우선 사회적 생존권의 유지를 내세웠다. 또한 구 동독 공산당의 "의사(擬似) 평등정책"을 비난하였고 구 동독의 계획경제, 노동시장의 부정적 발전을 지적했다.

현재 구 동독에는 많은 자발적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사회분야에서의 여성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성의 집, 소녀의 집의 설치 등을 공공재원으로 하고 있다.

나. 통일 후의 여성정책적 발전

1) 구 동독지역에 여성담당관의 일괄적 설치

구 동독주는 통일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평등지위담당관제도가 일시에 도입되었다. 이 평등지위담당관제도는 구 서독의 경우 1970년대부터 꾸준히 노력, 투쟁하여 이루어 온 여성정책적 성과였다. 따라서 주민 일만명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상근직 평등지위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2) 여성정책부서의 개편과 설치

통일후 1990년 연방 청년·가족·건강·여성부를 여성·청년부와 가족·건강부로 분리 확대하여, 여성정책의 근본문제, 여성과 가족, 여성과 직업, 가정과 직업의 조화, 재취업특별프로그램, 평등법, 모성보호법 등 법문제, 임신부의 갈등상황,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여성의 집, 구 동독 여성의 여성정책, 여성연구, 국제여성정책, 여성단체지원, 여성과 매스컴 등의 과제를 다루었다.

1994년 다시 가족·노인·여성·청년부로 통합되었으며, 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여성담당관 등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1982년 Koeln를 시작으로 하여 1986년 100개, 1989년 460개, 1990년 600개, 1991년 800개로 증가되었으며, 1995년 현재 1357개라고 한다.

또한 1994년 평등권법에 의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정부 각 부처, 기업, 대학 등에 여성담당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3) 여성할당제도입의 확대

1986년부터 Die Gruene는 50% 할당제를 도입했고, 1988년부터 SPD는 점진적 목표할당제를 도입하여 1998년까지 40%를 목표로 하였다.

FDP는 정치적 이념인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고, 다만 1987년 1992까지 당원의 수만큼의 당직의 결정직에 여성참여보장

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CDU는 1985년 당원 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과 후보와 당직에서의 대표성 보장만을 결정하고 있었다(1995: 당원의 23.5%(구 서독), 34%(구 동독)). 연방의회의장 리타 쥬스무쓰(여성CDU대표)가 1990년대 초부터 당에 3분의 1의 여성할당을 주장했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가 콜총리도 찬성하여 1995년 가을 전당대회에서 정관에 규정하고자 했으나 부결되었고, 다음해 1996년 10월 전당대회에서 통화(980명 중 609명 찬성)되어 당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하고, 비례대표리스트의 3번째마다 여성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essen주 CDU가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할당제를 도입했다. 다만 CSU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신당인 Buendnis 90/Die Gruene는 50% 당직을 의무화하고 있고, PDS도 50%당직을 의무화하고 있다(1995:여성당원은 43%, 52,000명). 노동조합 중 1995년 중반까지 DGB 소속 16개 회원노조 중 4개 노조가 정관에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 통일 후의 여성관련법의 발전

1) 헌법개정에서의 평등권 조항의 강화

통일 후 1994년 기본법개정에서 평등권 규정 제3조 제2항 후단에 “국가는 여자와 남자의 평등권의 사실상의 실현을 촉진하며, 현존하는 불이익의 철폐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본법 제3조의 개정의 의미는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도 이미 헌법재판소 등의 적극적 해석에 의해 확립된 국가의 평등권 실현의무를 더욱 분명히 하고 남녀평등권의 사실상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2) 1994년 남녀평등권실현법의 제정

동 법은 통일협약 제31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부분에 우선 적용되나 사기업분야에도 적용되며, 연방행정부의 모든 부서는 여성지원계획을

세우고 고위직을 포함하여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여성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3) 형법: 낙태규정의 논의

구 서독 여성계에서 1970년대부터 형법 제218조 낙태처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통일 후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서로 다른 낙태관련규정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해졌다. 1972년부터 구 동독은 3개월간은 임산부의 자유로운 낙태결정이 가능했다. 이 규정은 구 동독주에 계속 과도기적으로 유효했다. 통일협약은 제31조 제4항에서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을 규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갈등상황을 합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지금까지 양독의 경우보다 자문과 사회부조에 대하여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1992년 6월 26일 연방의회에서 355명 찬성, 283명 반대, 16명 기권으로 “임산부와 가족부조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다. 낙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임신 3개월 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다만 낙태 3일 전에 임산부가 자신의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상담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동 법통과 후 바이에른 주 정부와 연방의회의 CDU/CSU가 헌법재판소에 동 법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며, 1993년 5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법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생명, 신체의 불침해성, 자기결정권 등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1995년 7월 29일 연방의회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보다 강화한 “임산부 및 가족부조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 시 했으며, 낙태에 관한 형법 제218조에 대한 여성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동서독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구 서독의 다원주의와 시민사회, 경제대국으로서의 역량이 일관되게 구 동독과의 인적·물적 교류정책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양 독간 여성단체들의 교류협력이 구 서독 정부 및 여성단체들의 지원 하에 상호이해를 위한 만남과 대화에 기여하였었다. 그럼에도 통일 후 상호이해가 어려웠던 것을 볼 때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남북한 간 다양한 만남과 대화가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남북여성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것 등)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여성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의 개입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여성정책수행을 위해서는 s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다. 즉 여성정책역량의 강화와 이를 위한 전략들과 구체적인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관련 분야별 분석 및 과제

본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여성정책의 의미,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과 여성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한 결과에 의거하여, 성 관점의 정책의 정책방향에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여성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고 그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야별 설정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된 여성관련분야로 생활문화, 가족, 교육, 노동, 복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 및 행정 분야는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기반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본 분석분야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제 V 장의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제시되었다.

1. 성 관점의 정책 방향

(1) 평등의식 향상 및 여성활동 확대 관련 정책

(가)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유엔개발기구(UNDP)가 설정하고 있는 여성지위현황을 보면, 2001년 현재 남한은 여성개발지수 (GRD: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29위(146개국 중), 여성권한지수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61위(64개국 중) 그리고 인간개발지수 (HDI:Human Development Index) 27위(162개국 중)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지위측정 관련 지수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지수를 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간개발지수는 75위(1997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 남북여성의 지위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여성지위	UNDP-2001년 -GDI(여성개발지수):29위('01), 37위('95) -GEM(여성권한지수):61위('01), 90위('95) -HDI(인간개발지수):27위('01) 32위('97), 31위('95)	-GDI(여성개발지수):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음 -GEM(여성권한지수):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음. 50위('95) -HDI(인간개발지수):75위('97) 83위('95)

※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여성의 소득, 교육수준 및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여성개발지수
GEM(Gender Empowerment Index)
: 여성의 소득수준, 전문직 종사율, 여성의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나) 여성주간 및 여성의 달 실시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 여성주간을 실시하거나 여성의 달을 정한다. 이 주간이나 달에 정부와 민간에서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범 국민적 행사가 되도록 한다. 2002년 현재 제6회를 맞고 있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주간의 행사는 기념식,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남녀평등상 시상

남한에서는 남녀평등한 문화형성을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상을 제정하고 있는 바, 남녀평등교사상, 남녀평등경찰상, 남녀평등방송상 등을 시상하여 남녀평등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51] 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상 시상범위를 전국 규모로

51) 평등부부상 : 의사결정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재산권이 부부공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남녀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천방안 제시와 홍보, 확산하는 방안 모색과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등문화실천 전국 릴레이를 실시한다. 전국의 주요도시의 역,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여성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념식과 평등행진, 평등문화가정 선정, 평등문패 수여, 평등지킴이 회원모집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52] 여성주간 또는 여성의 달에 진행토록 한다.

(2) 성인지적 여성관 확립

(가) 일반여성의 여성관 확립

북한 여성관은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자아중심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상위주의 가치관에서 물질위주의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육아에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책임을 실천하고, 취미생활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데 공동으로 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부부,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다른 점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을 다하며, 가사노동을 부부가 협동하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여성신문사에서 1994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여성부와 함께 매년 선정된 평등부부에게 주어지는 상)

남녀평등교사상 : 교육현장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남녀평등교육을 확산시킨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남녀평등경찰상 : 전국의 경찰관 중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관련 폭력범죄 현장에서 평소 남녀평등의식을 가지고 여성인권 보호에 앞장선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남녀평등방송상 : 우리사회에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대중매체의 남녀차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상이다.

남녀평등정책상 : 정책의 전 영역에서 남녀평등문화를 형성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52) 여성부, 「여성백서」 (서울: 여성부, 2001).

가치관으로, 당과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서 가족 본위의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남북한 여성 가치관의 이질화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은 필수과제이다. 남북한 여성 가치관의 이질화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의 과정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가치관에 있어 긍정적인 특성이 보다 더 부각되어야 하며, 남북한 여성의 가치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이념적 차원에서의 고려보다는 남북한 여성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의 고려가 중요하다. 남북한 여성화합 차원에서의 여성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성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공무원 대상 남녀평등의식 향상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또 일반인 대상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남녀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여성관련 분야별 분석 및 정책과제

가. 생활문화

남북통합을 실질적인 단계에 올려놓으려면 모든 여성이 일상의 수준에서 통일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생활 속에서 여성이 통일에 접근하는 길이고, 그 길로 나가는 매개가 바로 '생활문화'이다.

우선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땅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키우는 행위, 즉 계몽된 정신문화, 고급문화를 가리켜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문화는 "특정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 가치이자 삶의 방식"[53]이다.

53) R. Williams. *Key Words*, London: Fontana, 1983; Ann Swidler,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April), 1986. pp. 273~286.

또한 문화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규범, 가치관 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전통의 특성을 갖고 있다.[54] 즉 문화는 생활과 유리된 무엇이 아니라 바로 생활양식이며, 따라서 문화의 원래적 의미는 생활문화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화로 인해 생활문화는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문화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이 불일치한 것으로 혼동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는 상품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으며, 정체성을 부여하며 나침반의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전통을 주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생활세계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특히 그것은 여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생활문화는 어느 분야보다도 여성의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생활문화에서는 지도부문의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여성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나아가 제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부문이 통합논의와 달리 생활문화 영역의 경우 특정한 제도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5]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생활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생활문화 정립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문화가 통합되는 길에서 다양성 또는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활문화는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상호간의 '차이의 공존'을 존중해야 한다. 다양성 또는 차이는 남북에서만이 아니라 계층간, 남녀간, 성별간, 지역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동시에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단계에서의 생활문화는 현재 남북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개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54) Jean-Pierre Warnier, 주형일 (역), 「문화의 세계화」 (서울: 한울, 2000), pp. 19~25.

55) 김귀옥(2002. 4. 29), "이제는 남북 생활문화를 교류할 때", 「전교학신문」.

요약컨대 약 60년 동안 남북에서는 각각 자본주의적 생활양식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급속하게 통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남북의 상이한 생활문화는 인정하되, 현재 유사한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동질성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동질성이라 하더라도 남북 모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제 실질적 통합단계를 준비하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남북 생활문화로부터 동원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출해 내보기로 한다. 생활문화를 의·식·주 생활문화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남북이 함께 해 나가면서도 다양성을 찾아내어 삶을 풍부하게 할 방식을 모색하기로 한다.[56] 우선 식생활 부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식생활 부문

식생활 부문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끌 수 있고 대중화시키기에 용이한 부문이다. 남한에서 있어서는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간 교통 사정의 곤란으로 지역산물을 중심으로 지방색이 뚜렷한 음식이 풍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 수단이 발전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수입 농산물이 풍부하게 유통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어떤 토속음식이 조금 유명해지면 쉽게 상품화되고 표준화되어 지역 특색의 음식 맛을 간직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어떤 전래의 민속음식도 그대로 재현되어 계승되기보다는 만드는 사람, 생산수단, 재료, 기후조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음식으로 창조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발명은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식생활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간의 식생활 교류는 다양한 음식 맛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함과 풍부함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임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56) 이 프로그램은 김귀옥의 "남북 생활문화부문 교류프로그램"(한국문화정책개발원(엮음),「문화예술 주요부문별 남북교류프로그램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줄 수 있다.

이제 남북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식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가) 전국 주부 김치 담기 박람회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하는 음식 문화의 하나가 김치문화이다. 2001년 3월 방북한 바 있는 고재유 광주시장은 '2001년 광주김치대축제'에 특유의 북한 김치와 젓갈을 전시하는 것을 북한측과 합의하였다. 2001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축제에 북한측 김치 15종, 젓갈 10종, 돌버섯 등 특산품 11종이 전시되어 성황을 이루었는데, 당시 북측에서 보내온 김치만 해도 통배추김치, 백김치, 무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보쌈김치, 열무김치, 무청김치, 달래김치, 강냉이배추김치, 상치오이파김치, 오이배추김치 등이다.[57]

이제 여기서 나아가 주부가 직접 참여하는 김치 담기 대회를 개최한다. 남북의 주부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대회는 아직 개최된 바가 없어서 다소 이른 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저 김치를 전시하는 것보다는 주부의 손맛이 배여 있는 토속적인 맛을 주부들이 직접 만들어 내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줄 수 있다. 방식으로는 남북의 지역 간 여성단체들을 연계하여 김치담기대회를 하거나 각 지역 대표들을 경연을 통해 선발하여 대회를 할 수도 있다. 간단한 김치 담그기를 통해 여성들을 통일의 길에 동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남북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깨닫게 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나) 지방 된장 만들기 경연대회

된장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김치만큼이나 빠져서는 안되는 음식이면서 음식의 재료가 된다. 한국에서도 80년대 이래로 된장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주부의 연중 행사를 줄이면서 된장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래로 된장은

57) 「민족21」, 2001.12월호, pp. 112~113.

주로 사회적 노동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북한 특유의 '군거점전략'[58]에 따라 대부분 중소 도시에는 작은 규모의 식료공장이 하나쯤은 있도록 되어 있다. 설령 식료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지만, 식료공장에는 대개 지역출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므로 지역의 독특한 맛이 남아있다. 김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토속적인 맛이 배어 있는 된장을 제조하거나 된장을 재료로 하는 음식 만드는 경연대회를 하고 개최한다. 나아가 남북의 장공장 간의 장맛 경연을 하는 것도 장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지방 특유 음식 심포지엄

기본 음식 외에도 각 지방 특유의 음식은 무궁무진하다. 절기나 계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부들이 경연하는 대회나 음식 문화를 둘러싸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알려지지 않은 음식과 요리법을 알릴 수 있으며 새로운 요리법을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라) 밑반찬 요리 경연

우리 음식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밑반찬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밑반찬 역시 지역이나 계절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밑반찬 요리 경연은 주부의 음식 솜씨를 뽐낼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반찬 정보를 제공할 기회도 될 수 있다. 단, 경연대회에서는 한 가지 밑반찬을 만드는 데 일정한 비용 한도를 제한하여 저렴한 값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수산물 요리 박람회

남북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치 수산물 요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해류의 차이로 남과 북에 주로 서식하는 어류가 차이가 있어서 수산물 요리 전에서는 남북의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과 북에서 같이 발달한 요리도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58) 김귀옥, "통일을 향한 남·북 사회문화 연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통일위원 엮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민중사, 1994), p. 263.

'남북명태요리 만남전'을 기획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명태로 국, 지지개, 볶음, 졸임, 찜, 구이, 순대, 튀기, 회, 자반, 만두, 전, 완자, 탕이나 알젓, 밸젓, 대가리식혜, 눈식혜 등의 음식을 만든다. 이 가운데 유명한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면 명태국, 명태완자국, 명태회, 명태순대, 북어볶음, 명태찜, 명태튀기, 명태전, 북어국, 명태남비탕, 북어자반, 명태젓, 맹태밸젓, 명태알젓, 명태식혜 등을 들 수 있다.[59] 또한 1999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품 명태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 명태 요리 35가지를 소개하였다.[60]

명태로 유명한 북한의 신포시와 남한의 속초시와 고성에서 명태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여 맛있는 지방 먹거리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남북의 요리 교류전을 통해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바) 남북 지방산 주류 교류전

남과 북에는 주류가 있는데 소주, 과실주, 인삼주, 두견주(진달래술) 등을 들 수 있다. 포도주에 비견할 수 있는 과일주에는 매실주, 앵두주, 오미자주, 구기자주, 사과주, 살구주, 귤주, 모과주, 다래주, 머루주, 산딸기주 등이 있다.[61] 또 인삼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주류 역시 전통과 현대가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음식인데, 지방에 파묻혀 있는 지방주 빚기 경연 대회 및 남북 주류 교류전을 갖는 것 또한 우리의 먹을거리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 남북 감자 요리 경연

남북의 농산물 가운데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경작이 늘어나고 있는 작목의 하나가 감자이다. 과거에는 감자는 쪄먹는 간식에 불과했으나, 북한

59) 과학기술출판사 엮음, 「가정과학상식」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1992), pp. 83~86.
60)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명태 이야기와 맛」 (강원도: 고성군, 1992).
61)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한국이 미국·일본·독일을 추월하는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5).

에서는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목적으로 '감자농사혁명'이라 하여 양강도 대홍단군에 대규모 감자농사지대를 일구어 각종의 감자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 남한 역시 미국식 간식문화산업이 팽창해지면서 감자의 소비 양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⑵ 의생활 부문

오늘날 문화 전반이 그렇지만 의복은 더 이상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다. 의복은 그 시대정신,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 미학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복과 같은 상품은 이미지와 상징, 개성과 자유, 쾌락과 환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상품미학'을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옷은 더 이상 몸을 가리는 수단 그 자체가 아니다. 동시에 옷은 사회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오랫동안 원부자재의 부족으로 절약의 미학을 정상화시켜왔다. 또한 1980년대 이래로 가내부업반이 활성화되어 전업주부들은 공장에서 자투리로 나오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의복이나 가정필수품을 만들어 왔다. 또한 리승기박사에 의해 발명된 자국의 원료를 소재로 한 섬유인 '비닐론'을 '주체섬유'로서 중시해왔다.

사실 폐활용품의 활용은 가난의 상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감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의생활 부문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 또한 화장이나 장식, 가정 장식품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겠다.

(가) 생활한복 또는 조선옷 전람회: 소재, 디자인, 한복 품평회, 패션쇼

북한에서는 현재도 여성의 정장으로는 조선옷(한복)을 선호하고 있고 여성 대학생의 교복도 조선옷이며 국가적으로 '조선옷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62] 반면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한복은 주로 중, 장년층의 특별 정장이며, 젊은층에는 결혼식 때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생활한복이 많이 개발되어 왔고 대중화되고 있으며 전통한복도 현대적 감각으로 개량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생활한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생활한복의 장점을 이해시키고 남한 사람들에게 발달한 북한의 조선옷을 이해시키기 위해 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거나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이나 조선옷 품평회나 패션쇼를 갖는다. 이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는 2001년 6월 평양에서 '민족 옷 전시회'를 연 바 있다.[63]

(나) 주부 폐의류 활용 창안대회

폐의류를 활용한 주부의 발명품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개최한다. 유행이 지난 옷을 현대적 미감에 맞춰 고쳐 입기, 어른 옷을 아이 옷으로 개조하기, 큰 사람 옷을 작은 사람 옷으로 개조하기 등 다양한 작업 기술을 통해 개조한 옷을 전시하며 남북 교류 바자회를 갖는다.

특히 1970년대 이래로 남북은 모두 한, 두 자녀 낳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그런 조건에서 버려지는 어린이 의복이나 장난감, 아동용품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아동용품을 모아 주부의 손을 걸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으면 새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제품을 북측 어린이에게 바자회를 통해 제공한다면 남북 교류도 되고 북한 아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

(다) 남북 도-농간 자매 결연, 폐의류 및 생활용품 교류

남한에 비해서 북한에는 농촌 인구가 25% 정도 되고 그 인구의 절반

62) 북한에서는 '한복'을 이렇게 부른다. 북한에서는 조선옷 또는 조선민족옷 전시회도 종종 개최하는데 2002년 4월에도 '조선민족옷 전시회'를 개최하였다.「연합뉴스」2002.4.9.

63) 「민족21」, 2001. 9월호, pp. 136~139.

가량이 여성이며, 전체 여성 노동력의 30% 정도가 된다.[64] 의생활부문에 있어서 남북 여성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의 도시와 농촌 주부나 여성간에 자매 결연 맺어 안 쓰고 있는 아동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폐의류, 생활용품 등을 교류 및 활용할 수 있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는 물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남북 여성들의 관심과 호감을 불러낼 수 있다.

(라) 남북 노동자 및 사무직 작업복 전람회 및 패션쇼: 같은 산업계통의 작업복 또는 의복디자인

남과북 여성 노동자들이나 여성 사무직원들도 대개 유니폼을 입고 작업하고 있다. 같은 산업 계통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실용적이면서도 맵시 있는 작업복 디자인이나 작업복 전시회는 남북 노동자나 사무직원들의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통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남북 노동자의 만남의 장에서도 여성 노동자 만남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 민간 처방의 화장수 교류전: 지방 특색, 지방 재료 중심

전래로 내려오는 화장수는 대개 지방 특산 약초나 화초, 어패류를 원료로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환경 친화적인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욕구로 인해 상품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민간 전승되고 있는 각종 화장수를 전시 및 교류하는 것도 미용을 통해 남북 여성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바) 머리단장 경연 대회

2001년 6월에는 헤어디자이너 이가자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합작 의상과 미용 패션쇼를 개최한 바도 있다.[65] 옷과 체형에 잘 어울리는 머리단장은 보기에도 좋고 본인의 심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머리단장을 하는 경연대회는 남녀 모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대

64)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당대, 2000).
65) 「민족21」2001. 8월호, pp. 64~66.

별, 남녀별, 직업 분야별로 전시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북의 상이한 문화 감각과 관심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3) 주생활 부문

도시에서의 주거생활은 남북을 통털어 아파트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주생활 부문을 잘못 활용하면 남북의 차이, 계급, 계층 차이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나 살림공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가) 좁은 공간 활용 디자인 경연 대회

도시의 공간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에 좁은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같은 공간이라도 사용하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게 된다. 남북의 대도시 여성들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당사자가 사진을 찍거나 디자인을 하여 출품한 공모작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선발하여 남녀 디자인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나) 환경 친화적인 주택 디자인 전시회: 환경과 어울리는 주택, 풍부한 자연소재 주택

서양일변도의 집에서 벗어나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자연에 풍부하게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집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과 상징이었던 농촌의 황토집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땅값이 비싼 도심 속에서는 그러한 집을 만들기는 어려울 지라도 근교나 농촌에 값은 가격에 저렴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집합주택 디자인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갖는다.

(다) 아름답고 편리하며 저렴한 농촌 주택 디자인 전시회

남한의 농촌 집들은 대개 개인적 경제사정에 따라 형태가 천양지차이다. 반면 북한의 농촌 집들은 협동농장 정책에 따라 다소 획일성을 띠고 있고 단층 주택이나 3, 4층의 연립아파트가 주종이다. 같은 가격이면 아

름답고도 편리한 농촌 주택을 농민 스스로 디자인하여 작품전시회를 갖고 시범 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관광한다.

(라) 새로운 집합 주택 디자인 전시회

남한에는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나 집합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이 나름대로의 집합 주택을 건설해 왔다. 공동체의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 집합 주택 디자인은 공동체의 관심과 함께 제고될 것이다. 이에 남북에 건설되어 있는 비슷한 비용의 아름답고 편리한 집합 주택 디자인 전시회를 갖고 대안 주택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

(마) 탁아소·유치원 디자인 전시회

북한에서는 탁아소나 유치원이 국가정책에 의해 1947년 탁아소 설립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이래 탁아소 및 유치원은 꾸준히 증설되어 1988년경에는 탁아소 수 1만9,262개, 유치원 수 2만 8,358개 시설에 200만여 명이 수용됨으로써 대상 어린이들을 대부분 포괄하게 되었다.[66] 남한에서도 1990년대 들어 공동탁아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사회단체나 개인들에 의해 공동탁아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다양한 형태를 띠며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국공립 탁아소가 아닌 같은 가격에 다양하고 아동들이 선호하는 건물을 짓는 노력이 남북 모두 필요하다. 기존의 모범적인 탁아소나 유치원의 건물 공간을 소개하며 좋은 탁아소 유치원 건물을 짓기 위한 디자인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우선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바) 노인이 살기 좋은 양로원이나 노인회관 건물 디자인 전시회

이미 노령화로 가고 있는 시대, 노인이 잘사는 나라야말로 선진국의 중

66) 방완주, 「조선개관」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p. 186; 김선임, "북한 탁아정책의 변화과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p. 69.

요한 척도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취약한 편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노인회관은 사회적으로 비가시적 공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 남한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 중심세대나 여성노인 1세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양로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실버(silver)문화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다.

아직도 남과 북에는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중심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시설은 크게 미비되어 있다. 또한 노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노인회관도 그저 모여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가벼운 노동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세대를 잇는 공간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의 가족 개념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인 공동체 건설에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산가족 노인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나. 가족

남북한 가족들은 근대화·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면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었으나, 그 변화의 양상은 체제의 다름에 의하여 틀리게 나타난다. 남북한 가족 현실의 가장 큰 공통점이 가족주의가 남북한 가족 현실의 근간이라는 점이지만 그 가족주의가 남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다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택림, 2001; 함인희, 2001; 김귀옥 외, 2000)[67]

67) 남북한 가족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글들이 있지만 본 연구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게 논의하고 있는 윤택림(2001)의 “통일한국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의 자리잡기: 가족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발췌하였음.

(1) 남북한 가족의 특성

(가) 친족 범위의 축소

남한에 있어서 산업화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촌향도와 그에 따라 수급된 공업 노동력을 기반으로 대외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특징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이촌향도는 일제강점기 농민의 유민화로 인한 인구이동보다 더 광범위하게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도시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의 증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존 지역사회의 혈연 중심의 가족·친족관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가족 및 친족들 중 대다수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 및 지방 중소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친족간의 왕래는 극히 제한적이 되었다.

북한의 산업화는 해방 이후 기존의 중공업 중심의 산업을 확대시키고, 토지의 무상분배를 통해 기존의 지주계층을 제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은 1958년에 토지의 집단화를 달성하면서 계획경제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북한에서 토지 사유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상속제의 폐지는 기존의 친족 집단인 부계 혈통집단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부계 혈통집단의 경제적 토대로서 토지 소유와 상속이 없어짐으로 해서 가계계승의 관념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민군 복무 또한 가족 친족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많은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인민군 복무로 10년 정도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고, 그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당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가족과 친족관계를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은 유교를 봉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유교적 행사인 제사 등과 같은 친족모임을 제한하였고, 북한 주민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 장례식, 제사와 같은 친족행사에도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제는 마을 밖에 살고 있는 친족원들을 포함하는 조상제사를 위한 큰 모임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나) 핵가족화

남한에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비율은 1960년에 28.5%에서 2000년 7.9%로 감소하였다.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도 핵가족이다. 전체 가족의 20%가 확대가족이고 나머지 80%는 핵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는 남북한 모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남북한 핵가족화의 구체적인 과정은 상이한데 남한에서의 핵가족은 산업화·도시화가 이농현상을 가져오면서, 친족공동체에서 나온 가족들의 도시 진출은 이동이 용이하고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핵가족의 형태를 띤 것이었다. 그러나 시골에 남아 있는 친족들은 도시에서 정착한 같은 친족 내 핵가족을 통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친족 연계망은 도시로의 이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핵가족 형태를 띠었지만, 확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핵가족들이 떨어져 있어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확대가족의 연계망은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한 내의 핵가족은 핵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생활이나 관계는 기존의 확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 핵가족은 사회주의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유교적 의례의 억압으로 인해 기존의 유교적 친족공동체가 대단히 약화되었다. 또한 인민군 입대와 직장 배치에 따라 자녀들은 이동하게 되어, 자녀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이 살거나,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당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작아서 확대가족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핵가족은 확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서구의 핵가족처럼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남한에서 핵가족은 확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장자손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계계승의 관념도 강하기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가, 그 중에서도 부자 관계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비교적 먼 지역에 살아도 친족공동체의 연계망 속에서 생활하는 남한의 핵가족과 달리, 북한의 핵가

족은 친족공동체가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친족의 영향력이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가족 내에서 장자손 중심의 가계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대부분 장남의 몫이고,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식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한 북한도 남아선호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가족 기능의 축소와 변형

우선 자녀출산, 즉 사회성원, 내지 노동력의 재생산에 있어서 남북한 가족들의 기능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 출생한 자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부계 혈통 유지에서 핏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핏줄을 확인을 할 수 없는 미혼모의 자식이나 고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이더라도 동성 양자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혼모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적인 규제가 심하다. 연애도 할 수 있지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크게 제재되고 있다. 그리고 고아의 경우는 북한은 고아를 혁명의 전위대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아들은 당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고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한처럼 심하지 않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 사회화 부문에서 가족의 기능은 남북한 가족 모두에게서 크게 악화되어 왔다. 남한에서는 핵가족화하면서 확대가족 및 친족공동체, 지역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화 과정이 없어졌고, 부부가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1960~1970년대를 통해서 남한에서의 산업화는 서구의 핵가족 내의 부부 성역할을 가져오게 되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남편과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라는 성별분업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은 거의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남한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모두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핵가족 부모와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부담은 국가의 제도교육이 빈곤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교육은 거의 없어지고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교육에 자녀교육을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생후 30일 이후부터는 탁아소에 입소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물론 학교 진학에서도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976년에 제정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교양도 개별 가족에게 맡기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남한과는 달리, 1970년대 중엽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이 일반화되면서 자녀양육의 대부분이 사회화되어,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협동기능은 남한 사회에서는 산업화를 통해 남성 가장 단독의 수입형태로 나아갔다. 산업화 초기에 가족의 경제적 협동은 가족의 생존과 계층 상승에 필수적이었다. 가족원 모두의 총수입에서 자녀교육의 투자 및 가족 생활비가 지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딸들은 가족 수입을 도와 남자 형제의 교육 투자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남편이 단독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도시 중산층 핵가족이 증가하였고, 중산층의 핵가족은 생산단위가 아니라 소비단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1980년대로 오면서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아들·딸 모두 구분 없이 교육 투자가 확대되었고, 취업주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임금은 아직도 가족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핵가족 내에서 가족 성원간의 경제적 협동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되어 왔다. 북한은 식량 및 모든 생활용품 소비에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모든 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가족 성원간의 경제적 협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전담하고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어, 부부의 수입은 당 고위층을 제외하고 하나의 핵가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경제위기로 인해 남편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식량난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기혼여성들의 상업

활동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남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가족들은 낭만적 사랑에 의해 부부가 결합하여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서구과 같은 핵가족들이 아니다. 남한의 핵가족에서 가정은 남편에게 휴식처이고,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하기 위한 재충전 장소이다. 그러나 핵가족 가족 성원 모두에게 가정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인지는 의심스럽다. 최근 남한 가족들이 겪고 있는 성역할 부담에서 오는 부부 갈등, 자녀들의 입시 압력에 의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노인보호의 약화 등은 남한의 핵가족이 얼마나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북한도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지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가족의 일상생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가족 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인터뷰를 한 북한을 이탈한 여성들은 모두가 수면부족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식사준비를 하고는 곧 아이를 데리고 탁아소로 가서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해서 거의 1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다시 탁아소에 가서 자는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후 나머지 가사노동을 하고 나면 밤 1시에서 2시에 잠자리에 들게 된다고 한다. 가족간의 대화를 할 시간이 없고 여가생활도 빈곤하기 때문에, 가족 성원들간의 정서적 만족을 가지기는 힘들게 보인다.

(라) 가족의 도구화 및 가족주의

남한은 해방 이후 농지분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전통사회의 지주계급이 몰락했고,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도시 중산층이 나타났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화에서 산업 사회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는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강화되었다. 남한의 도시 중산층 가족들은 계속적인 계층 상승 내지 계층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통로인 자의 교육에 전념했다. 학벌은 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되었으나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지 집안의 이름, 위세, 계층적 상승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군사정권을 유지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 지출을 위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가족 복지를 모두 개별 가족에게 전가했다. 국가적 보호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가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가족 및 친족 연계망, 즉 혈연은 또한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이래 지역 구도에 기초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파행적 정치가 횡행함에 따라 지연도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줄 사회가 된 남한 사회에서 연줄이라는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을 통해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계급구조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과 공산주의 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업화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법령(3월 5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6월 24일), 농업 현물세에 관한 결정서(6월 27일), 양성평등권에 대한 법령(7월 30일),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8월 10일)을 통해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던 지주 계급이 완전 해체되었고, 소작농·빈농·고용농민들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아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농업협동화가 시작되어 1958년까지 완수됨으로써 토지의 협동 소유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산업화 과정은 전쟁 이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전략에 따라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은 성분이 되었다. 성분은 계급적 배경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출신 성분에 따라 교육 정도, 직장배치, 승진의 한계가 지워졌다. 성분은 최근 식량난 이전까지 결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혼에 있어서 대체로 같은 성분끼리 결혼하는 성분 내혼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표방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달리 인텔리 계급인 전문관료집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생긴 사회주의적 계급구조에서 계급은 권력 행사 정도 및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북한의 계층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친의 직업적 배경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실제로 인맥 또는 가족적 배경이 성분과 사상보다 더 지배 계급을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권력·사회적 위신이 모두 직업이라는 유일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북한 사회의 공식적 이념인 집단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2) 남북한 가족주의와 여성의 위치

(가) 남북한 가족주의와 국가의 관계

남한 사회에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일제하 이루어졌던 호주제에 근간한 일련의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남한의 가족법은 1957년에 재정되어 세 차례(1962, 1977, 1989) 개정되었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 즉 가족에 대한 제도적 변화 과정의 특징은 첫째, 남한의 가족법은 부계 혈통 중심이며, 남성 호주의 가장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는 가족 성원의 생계와 복지를 거의 모두 가족에게 전담하고, 국가는 최소한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개별 가족들에게 국가적 목표를 관철시켜 왔다는 것이다.

남한의 가족법이 현재까지도 부계 혈통 중심이며 호주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 사회에서 국가가 가족을 다루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여 가족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겼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잘살아 보세, 부국강병'과 같은 민족주의적 수사학을 가지고 개별 가족들의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남한에서 국가는 국가의 이해에 따라 가족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가족은 제도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변화되어 왔다. 북한의 가족정책은 가족제도의 변혁을 추진하는 시기(1945-1953),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1954-1960), 가족의 강화를 추진하는 시기(1960년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환을 하면서 맨 먼저 착수한 것이 경제제도와 함께 가족제도를 변혁시키는 것이었다.

1953년까지 북한의 가족정책은 가족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및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혼제도, 양자제도 등을 개혁하여 가족관계를 양성차별을 원리로 하는 부계 중심제에서 평등에 입각한 부부 중심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북한의 가족정책은 안정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가족의 안정화를 위해 북한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결혼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었고, 이혼은 협의 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가족정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968년도 3월에 개최된 여맹회의에서 '가정의 혁명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1970년에는 제5차 당대회에서 가족이 혁명화, 즉 가족이 공산주의 교육의 산실이 됨으로써 분조와 작업반이 혁명화되고 인민반이 혁명화되고 나아가서 직장이 혁명화 된다고 하였다. 가정의 혁명화와 함께 1976년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제정되어 자녀양육과 교육이 사회화되었다. 또한 1971년 제5차 당대회에서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 "가정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 "가정기술혁명"을 통해 가사의 사회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 강화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넘어서서 당과 인민간의 관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관계인데,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이라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마치 군신관계와 같이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유교적 가족에서의 부자관계에 기초한 가족주의에서 군신관계가 우위가 되는 사회조직의 원리로서의 변화이고 또한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과 최고 지도자와의 관계는 마치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국가(family state)"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가족정책의 특징은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수단으로 보면서 가족을 정치사회화의 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

가지로 국가의 목적을 위해 가족을 최대한 활동했다고 보나, 남한이 비교적 간접적으로 가족을 통제한 것에 비해, 북한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족을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여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자녀교육 및 사회화를 국가가 직접 전담하고, 여성을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가족을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이상적인 여성들의 행위는 혁명적 주체로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행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국가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때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노동계급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 그 자체가 사회의 세포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여성 및 가족 정책에는 일종의 긴장이 있다.

(나) 남북한 가족주의와 경제체제와의 관계

남북한 가족주의는 또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가족의 생계와 계층 이동은 그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해방 이후 미군정의 원조경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해방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화의 시작이었다. 미군정 하에서 시작된 농지개혁은 북한과 같이 전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기존의 지주 계급은 몰락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196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개별 가족들은 산업화의 일꾼으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한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가져온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주된 변화는 가정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상품화였다. 상품화된 생산수단의 총량이 증가하였지만, 높은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부담률은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을 가져와 가족 경제에 압박을 주었다. 특히 국가의 불충분한 복지 서비스로 인해, 남한에서의 노동력 재생산 방식은 거의 전적으로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진행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서구의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이 남한 사회에서도 일반화되게 하였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로 구성된 도시 중산층 핵가족이 남한에서 일반적인 가족생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성별분업을 지지하고 지속시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었다.

성별분업을 지지하고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가족주의이다. 산업화된 남한사회에서 성별분업은 남편에게 사회적 성공으로 집안을 빛낼 것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는 집안 내에서 가족의 계층 유지 및 상승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화된 핵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족이기주의 실천을 위해 그 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1946년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 조치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닦았다. 한국전쟁 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업 우선,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을 우선시하고 소비재보다는 생산재를 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가지는 중공업과 생산재 생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를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합영법을 제정하여 폐쇄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계급화는 북한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북한은 1946년 「북조선의 양성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평등권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취업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농업의 집단화가 완료된 1958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2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가정의 혁명화, 가사 노동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이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 북한의 경제가 호조를 이루었던 1970년대까지 여성의 노동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1976년 여성의 노동 비율은 48%라

고 보도되었고, 1988년에는 49%로 보도되었다. 1970년대만 해도 북한에서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이 직업노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미혼여성의 노동참여율은 90%이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은 30% 정도밖에 안된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것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갖지 않더라도 가내작업반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했지만, 남한의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전업주부가 일반화되는 것과 달리, 북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노동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도시의 핵가족들은 부부가 함께 노동하고, 자녀 양육이 사회화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핵가족들이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양육이 사회화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성별분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북한의 취업주부들은 직장과 가사노동을 함께 병행하는 이중고가 계속 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1990년대 식량난으로 북한의 배급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부부가 벌어오는 수입은 가족 생계 유지에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다. 기혼여성들은 남편들의 공장도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 후 직업을 가지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또한 1984년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으로 소비재 생산이 적극 장려되었고, 기혼여성들은 가내 작업반에서 소비재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팔 수 있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북한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고, 여성들은 '혁명적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하는 여성이 되었다.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기혼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팔아 식량을 구해 오거나 암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교환함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 남북한 가족주의와 모성

남북한 가족주의는 남북한의 가부장적 국가체제 및 경제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가족주의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경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산물이지만, 남북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지극히 도구적이다.

남한 사회에서 가족주의는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유교적 가부장제가 산업 사회의 새로운 가부장제로 변화되면서 더욱 공공히 되어 왔다. 가족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의 위세를 세우는 남편, 가사 노동 및 자녀교육은 물론 기타 가족생활과 재정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서 소위 집안 일을 책임지는 아내라는 성별분업은 가족주의가 추구하는 부계중심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기 위한 가족의 형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는 단순히 여성의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족 경제나 위세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체제가 가족을 정치사회화의 단위로 보고, 북한사회를 하나의 가족국가로 만들면서 유교적 가부장제가 사회주의적 가부장제로 변환되었다. 북한은 하나의 '대가정'이고, 대가정의 가장인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은 가장 핵심적인 윤리가 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이 육친적 사랑에 기반하는 가족주의를 배격한다고 해도,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족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을 혁명화하면서 가족 내의 성별분업을 없애고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려 하였지만, 국가 자체가 가족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의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해체시킬 수 없었다.

북한 여성들은 모성보호서비스, 교육서비스,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같은 일련의 여성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 계급화되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비록 북한이 여성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남한에 비하여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기존의 성역할 경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가족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들이 국가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비교적 자유

롭게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부장제는 여성을 노동력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가족 내의 가부장적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구조 내에서 가족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족 내의 성역할 분업은 약화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가족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가족주의 내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부계가족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의해, 북한은 가족국가적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또다시 여성들은 가족주의 내에서 도구적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여성에게 주어진 도구적 위치는 여성을 항상 어머니로서 존재하게 하고,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빠지게 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에서 아직도 결혼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이면서 어머니가 바로 남북한 여성의 상이며, 미혼여성이 어머니이거나 기혼여성인데 어머니가 아닌 여성,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거의 일탈적인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도시 중산층의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취업주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구조화하고 있다. 자녀교육이 가족의 계층상승과 계층적 특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어머니의 일은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1970년대로 가면서 가정의 혁명화는 모성 역할의 강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이후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을 위한 제반 정책에 따라 강반석, 김정숙 등 김 부자 생모를 북한 사회의 이상적 어머니로서 부각시켰다. 가정의 혁명화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이 혁명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반석, 김정숙과 같이 혁명 전사를 길러내는 어머니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계급화는 북한 여성에게 공적사업과 가정을 동시에 살리는 완벽한 여성을 이상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남북한 여성들이 완벽한 어머니,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문화적 각본은 바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완벽한 어머니와 슈퍼우먼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여성의 많은 일들은 여성 자신을 위

한 것이라기보다는 부계중심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양성평등가족의 실현

현재 남한의 개방적인 통일정책은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점진적인 남북한 통합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경제적 통합으로 시작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가족문제는 경제적 교류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한의 가족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저에는 남북한의 가족생활과 가족 인식, 가족 이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 남북한 사회는 상이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남한은 최근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남한이 정보 사회가 되면 기존의 가족관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회에서는 가족 성원들이 각자의 행동 원칙과 시간대를 가져서 가족의 개인화가 가속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기기가 가족 성원들 간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정보 사회는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와 일터와 가정의 경계선도 약화될 것이어서, 여성 경제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가족은 더 다양해지고, 가족원간의 라이프 스타일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계 중심의 가족관계는 변화하고, 남녀 성역할 분리는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한의 계층적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남북한 사이에 산업의 분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사회에서는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존 및 생계 유지를 위해 가족의 경제적 협동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가족들이 경제통합 과정에서 하층계층화하면, 북한의 남성보다는 여성노동력이 남북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력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식량난에서 북한 여성

들이 보여주는 강한 생활력은 이들로 하여금 단시일 내이 가족의 계층 상승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가족의 경제적 협동은 더욱 중요시되고, 가족과 친족 연계망이 활발히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협동이 반드시 부계 중심으로 되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가족문제는 서로 상이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많은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가족의 상호적응 과정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흐름은 가족과 친족의 형태와 관계가 방계적 친속의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남한 가족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모계 내지 처계 친족들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방계적 친척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성원간의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혈연과 관계없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가족은 경제적 계층 상승을 위해 가족 및 친족 연계망이 당분간 최대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가족들은 계층 상승을 위해 더 유리한 방계적 친척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남한 사회의 가족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족 내 성역할 구분에 있어서는 정보화가 여성의 취업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여성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 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가사노동 부문의 정보기술의 도입은 가장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한국사회는 북한의 여성정책에서 보여지는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여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정도가 달라지리라고 본다.

통일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기존의 성역할 구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남북한 여성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는 아직 미비하다. 남한 여성들에게 북한 여성들은 강인하고 냉철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남한 여성들은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북한 여성보다는 남한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의 강인함과 적극성이 통일 과정에서 남한 여성들 못지 않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정도와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다르다. 현재 북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이 극복해야할 대상은 가난이지 가부장적 남성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한 여성들 간의 다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해야만 남북한 여성들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가족은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연대를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된다고 본다. 가족 내의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남한 여성들이나 북한 여성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부계 중심의 가족주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가족주의가 통일한국 사회에서도 지속되는 한 여성이 부계 가족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가족이 남북한 여성들의 연대의 장이 되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또한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차원에서 가족문제 상담이나 신가족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주의가 얼마나 여성을 억압하는지, 부부란 평등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민주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 남한의 가족들은 부모 자식간의 상호이해 부족, 부부간의 성역할 갈등, 노부모 유기, 가정폭력 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남한의 가족문제들이 하나의 혈연적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하고 , 그 공동체 성원의 개인성을 억압하는 가족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위기를 수습하고, 가족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장해 주었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복귀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다시 경제 복귀에서 대등하게 참여하고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 남성과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시 남한의 여성운동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서로의 가족 문제에서부터 여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동안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에서도 남북한 여성들의 도구적 위치는 동일하다는 인식 속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만

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여성들은 통일한국 사회를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내에서부터 남녀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다. 교육

1) 여성교육 목적 및 이념의 남녀평등화

남북한이 여성교육의 목적과 이념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남한은 현모양처론 -> 남녀역할분업론 -> 양성평등론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남녀역할 분업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양성평등한 교육이념이나 양성성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띠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중학교 남녀학생들이 가정과 기술교과 동일 이수로 전환을 하였다. 앞으로 제8차 교육과정개정 시에는 고등학교에서도 남녀학생들이 가정기술교과를 동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여성계가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봉건적 여성상 -> 혁명적·노동계급적 여성상으로의 진전 -> 최근 전통적 여성상 강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당초 유교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였고, 성차별이나 불평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갈등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실업자의 증가로 가정회귀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2) 남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의무교육: 남한 6년(2001년 지역에 따라 9년), 북한 11년(1975년, 유치원 1년 포함). 남북한의 여자교육기회를 보면, 남한은 의무교육 연한이 북한보다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중등단계 및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여학생 99.6%(남학생 99.5%)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결과의 사회환원 흡입기제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북한보다 가사나 육아의 사회화가 미흡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성취를 사회적 성취로 연결시키지 않는 유사

자발적 포기가 많은 실정이다. 북한은 중등단계의 의무교육 실현, 고등교육의 대중화, 여성 인텔리화 정책을 시행할 시도를 하였으나, 국가주도의 직장배치는 성별조건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남녀 동일한 지위획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낳고 있다.

3) 고등교육에의 진학률 확대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남한의 경우 여학생 65.4%(남학생 70.4%)에 이르고 있어 남녀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점차 그 비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대학진학기회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단계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개인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진학 시 직통생, 군대 및 직장 추천생으로 입학하며, 여학생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교육기회는 사회·문화적 구성이나 이념, 제도적 문제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교육자원을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과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분야별 교육내용

가) 학교교육

(1) 남녀평등한 교훈 정하기

초·중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교의 교훈이 성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후의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남녀평등적 사고를 담아주는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성 중립적인 용어가 선택되도록 한다.

(2) 여학생 진로지도의 날

여학생 진로지도의 날을 정하여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인식·탐색·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여학생들이 다면적이고 균형적인 진로탐색을 위하여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현장 방문, 여학생 정보화 경시대회 및 사전캠프, 21세기 신직업박람회 개최하고, 여학생 진로지도 지침을 개발하고,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과제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양하고, 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여성인력의 효과적 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직업의식이 학교급별이나 학교유형을 불문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향에서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소질과 적성 발현이라는 직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인식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나 컴퓨터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있는 분야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학생의 과학기술계통 진출상담

여학생들이 수학과에 대한 심리적 기피현상을 제거하고 자연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친숙하게 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분인 과학기술계통으로의 진출을 돕도록 교육과정 상담을 해야 한다.

(4) 남녀평등한 교과서 내용 모니터링

여학생들이 여성의 지위나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별 분업적인 내용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미래사회에 활동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므로 성에 관계없이 평등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여학생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5) 여대생을 위한 인턴십 과정

여대생들이 졸업이전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일반 사회단체 등 자신

의 향후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졸업 이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졸 여성의 이직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일반 기업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성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도록 함으로써 이직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지역의 여대생들이 인턴쉽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국제기관 등에서 효과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및 남녀평등의식 향상방안 모색

초·중등교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원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이 교원의 해석을 거치고 나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선정, 교사연수, 남녀평등의식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동안의 공백기를 갖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여교원을 위해서는 특별히 전문성 향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성 향상교육은 승진 및 승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7) 여성교원의 학교행정직에의 진출 확대

여성교원들은 교직은 자신을 위해 드물고 중요한 직장이며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가치가 있는 직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수한 여성인력이 교직으로 진출하여도 행정가로 길러지는 비율은 낮다. 남한의 경우, 2001년 현재 전체 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은 60.8%로서, 최근 20년간 33.4%가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 교원 중 여성 비율은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장기근속 여성비율이 35.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장·교감 비율은 8.6%에 그치고

있다.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 여학생의 역할모형이 되고 있는 여성교원들을 위한 행정직 진출확대를 위한 방안이 여성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8) 역사적 여성인물의 공동발굴 및 재해석

역사발전과정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발굴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알릴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여성인물의 경우 그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있는 기술을 통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변화 추구를 위한 노력 등을 알아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얻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숙 등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발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성분야의 역사적 인물들을 발굴한다.

(9) 새로운 여성상 정립

미래사회에서는 남녀역할 변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상을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과 가정과 직장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새로운 어머니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합되었을 때 요구되는 여성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성들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10) 여학생 바지입기운동 전개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경우, 바지와 치마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바지입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여성들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의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여학생 바지입기운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나) 평생교육

(1) 북한지역민의 남한이해를 위한 지도자교육

북한지역의 지도자들을 남한으로 초청하여 남한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즉 남한의 역사, 남한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 남한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특히 남한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상, 세계적인 여성활동의 전개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과정 등에 대해 이해토록 하고, 앞으로의 활동전개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남한지역민의 북한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남한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이라는 등식이 현실이었던 만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내용 중에 평화공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해교육에 강조점을 두도록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 시 대상자들이 북한의 역사, 북한사람들의 생활상과 북한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등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북한여성사의 왜곡의 문제, 북한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이해토록 한다. 그리고 강의중심에서 실천 및 활동중심으로 교육방법을 전환하여 재미있고 의미있는 교육내용이 되도록 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북한이해교육임과 동시에 평화교육이기 때문에 대상별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외자가 아니라 주체임을 자각토록 한다.

(3) 여성학습 및 가족학습 운동 전개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학습동기, 의욕의 부적이 지적되고 있는 바, 여성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및 다른 여

성들의 격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족통합 프로그램은 학습동기의 증대, 지속적 참여, 결과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발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지역간 공동학습 연계방안을 제시, 실천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우수 학습동아리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집단학습을 장려한다.

(4) 여성평생교육기관 교류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모방적 기관 운영으로 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 이에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의 교육기능 중복, 또는 생소한 가치이질성에 대한 조정 등과 같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 정보교류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여성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남한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간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남북한 지역의 여성평생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동일가치관에 의한 다양한 교육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강사, 자료, 시설 등 지역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동사업의 기획을 통한 남북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500만 주부 정보화교육 실시

21세기는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하여 정보화 경쟁력을 갖추어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성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반여성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여성정보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혼여성인 주부들

의 경우에는 적절한 교육훈련기관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200만인 주부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부들의 정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부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정보능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의 수요자이면서도 생산자로서의 능력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 여성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

여성정보화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열러 여성들의 창의적 사고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성들의 지속적 정보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 개발능력을 기르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주부인터넷 교육

가정과 자녀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경제활동의 주체인 주부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 3월부터 컴퓨터 교육시설 1,000여개 학원 등에서 주부인터넷교실을 개설토록 하였다. 소비주체인 주부들이 인터넷을 통한 쇼핑, 홈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컴퓨터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6)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설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북한지역에도 개설하여 여성직업능력개발,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남한에서는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 53개에 달하며, 6개월 이하의 단기교육을 통해 미용·요리·의상·원예·공예·컴퓨터·서비스직·디자인·음악·미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단기교육훈련을 주로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즉시적 공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창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7)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은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과정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은 남녀가 불평등했던 분야에서 상호 보완해주고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equality)보다 공평(equity)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성 중립성은 성별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성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이고, 성 역할을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입장이며, 성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남녀평등의식교육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점검해보도록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문화적인 접근, 타인의 관점 존중 등을 중요시하고, 성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대상별로 접근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한국에서 1999년 이전부터 공무원교육에 2시간 남녀평등교육을 삽입토록 하였으나, 동년 정규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박 3일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무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하며 혁신적인 의식과 능력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켜 활력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즉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남녀의 성에 따른 의식, 역할, 행동 등의 분류란 미

래지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여성의 특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공직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남녀평등의식 점검, 지식경영사회와 여성, 사회발전과 여성정책, 공무원과 남녀평등 관점의 정책분석 및 평가, 남녀평등정책 수립 실습 등의 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의 실습과 더불어 정책을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능력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나) 부모의 남녀평등의식교육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삶의 가치관은 아동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먼저 부모와의 접촉기회를 갖게 되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남녀평등의식교육은 자녀의 인생관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 연령층 아동들에게는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성별 평등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생활을 하게 될 사회를 상정하고 그 사회에 맞는 의식을 현재의 부모들이 갖고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등한 부부, 평등한 언어와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아동의 역할모형이 되어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 부모를 위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마다 각 시·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확산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의 남녀역할교육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의 사회환원 공감대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남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가정역할의 변화가 미미했고,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책임과중, 고정된 역할변화 미흡, 남성의 가사일 참여가 미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의 역할과 활동을 가사활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가정 내 역할변화가 미흡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 남성의 가정 내 역할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1990년 가족법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이끌어내고 있고, 어머니의 일차적 역할로서 자녀양육과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 '사회적 세포'로 존재하고 세포의 건강을 위해 부부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교육내용에서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재조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외에도 남북통합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육관련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역사적 여성인물의 공동발굴, 여교원의 지위향상, 초·중등 교원의 남녀평등의식 향상 등의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이 공통으로 가진 역사적 인물(명성황후, 유관순, 신사임당 등)에 대한 재해석을 비롯하여, 남북한 여교원의 비율증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 상황 등의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평화교육 실시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가 중심적인 주제로 논하고 있는 남북여성교류, 통일역량강화 및 의식교육, 그리고 여성평화운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통일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남북교류측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한여성과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통일의식교육이나 평화운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다. 한국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화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 노동[68]

(1) 북한 여성노동의 현황

(가) 직업선택과 재취업

북한은 일찍부터 여성의 노동계급화 및 혁명화 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 확보와 동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국가의 지원 아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상황과는 달리 취업이 개인의 적성과 능력 혹은 자율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획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직업선택은 일차적으로 이미 계획된 사회 부문별 노동력 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주의 생산계획과 노동자의 수급별 현황에 따른 중앙당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당의 결정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당성과 출신성분이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5조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능력 등은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전, 1975).

이러한 노동력의 배치 과정에서 여성노동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분업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된다. 즉 여성은 쉽고 가벼운 일에 배치되는데 (김애실, 1997), 이는 여성의 일은 헐하고 하찮은 일이라는 인식과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의 이동을 돕는 주변적인 대체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여성노동력이 일부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에서도 목격된다. 북한 여성노동자의 산업별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공업 부분에서의 여성고용은 감소하는데 반해, 상업유통 부분이나 보건 부문 등의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취업비율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권영경, 1999). 최근에는 사회보장 혜택이 없는 가내작업반이나 무보수 지원반에 여성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남

68) 백진아 (2001)에서 요약 발췌한 것임.

성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여성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당화시키는 방법도 실시되었다(진수희, 1997).

한편, 직업의 선택이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른 부문별 수요와 당성이나 출신성분과 같은 사회·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북한에서도 빈번한 현상은 아니지만 간혹 해고나 자진 사직 등의 이유로 직업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탈한 여성 4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직이나 해고 경험의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이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46%(20명) 가량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주로 결혼이나 출산 등의 개인적 이유로 시작하였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기타 상사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사직했다는 이유도 지적되었다. (<표3> 참조). 재생산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떠나는 여성이 많다는 사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모성보호의 강화로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꾀하는 북한의 여성노동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여성의 고용보장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이상의 (55%) 응답자들이 고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고용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단지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고용의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여성들 모두 여성이 가정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히 통일 이후의 여성노동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은 물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유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나) 직종별 성별분리와 임금

북한의 직업별 분포는 대학교수 및 정무원부장과 같이 남성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과 여성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직종-사무원, 간호사, 보건관련 종사자 등 - 의 분리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김애실, 1997). 북한의 직업 선택에서 개인의 능력과 판단보다는 당의 배치 방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직종별로 성이 분리되는 현상은 일

차적으로 북한의 노동력 배치 원칙이 남성의 노동력을 높게 평가하는 성차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고급직종에 남성노동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성노동이 중심적이며 일차적인 노동력이고, 따라서 핵심 작업은 남성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임금은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등급제의 영향을 받는다(김선욱 외, 1992; 선한승, 1994), 노동의 질이나 양, 혹은 노동조건 및 종류에 따라 임금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노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이, 그리고 유해직종과 관련된 중노동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고, 같은 직종에서는 생산성이나 숙련도 등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급수제로 임금을 책정한다. 또한 사무직보다 일반 노동직의 보수를 높게 책정하여 나름대로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임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연령이나 성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는 별도로 북한을 이탈한 여성에 대한 앞의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임금에서의 여성차별을 고발한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임금과 직종간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일부 주변적인 직종에 여성노동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으로부터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실제로 남성 중심적인 직종인 광부나 제철공의 임금수준이 90-100원이고,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원이나 경공업 종사자의 임금이 60-70원이므로 북한 여성들의 평균임금은 남성임금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직업, 직종, 혹은 고용의 안정성 등을 통해 파악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승진의 경로와 가능성,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기회보장,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자율성 정도, 작업장에서의 성차별 등도 노동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공식자료는 대체로 부실한 편이고 특히

북한 여성노동과 관련된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빈약하지만 앞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북한 이탈 여성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현장에서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외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은 개별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먼저, 승진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62.8%가 승진 과정에 당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근무연한이나 시험 등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6.3%와 9.3%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25%에 달하는 응답자만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직업 선택과 마찬가지로 승진 역시 당의 결정과 추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의 지원과 추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성이나 출신성분 등의 사회정치적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응답과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아부를 통해 호감을 산다는 답변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뇌물제공 등의 부정부패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의 심화 현상과 더불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북한에서 제2경제의 부분적 활성화로 현금을 소유한 집단이 생겨나면서 극단적인 경우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는 자본주의체제의 물질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승진 기회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81.4%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승진의 기회가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앞의 질문에서 승진 과정의 객관성을 인정한 사람 중에서 적어도 7% 정도는 기회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애초부처 승진의 기회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이 승진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성차별은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여전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남녀평등의 이념에 위배되는 성차별의 실상을 비판하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섬유산업과 같이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산업에서도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김선욱 외, 1992) 현상은 승진

상의 성차별을 지적하는 한 대목이다.

둘째, 신지식 및 기술의 습득은 승진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저에서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5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승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신성분이 나쁘거나". "여자여서" 혹은 "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 단순해서 직장에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애당초 없기도 하였다.

그러면 훈련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정보와 교육의 재충전을 도모하는가 상당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지런하고 야심적인 사람들은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 혹은 아는 사람의 연계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식 축적의 기회를 모색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기술습득을 꾀하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과 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승진 방식을 인정할 수 록 그 적극성의 정도는 더하다. 이는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란 이유로 승진에서 성차별을 겪는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능력을 통해 승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의견과 결정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율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 질문에서 65%에 달하는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노동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의 노동은 상부의 지시로 할당된 업무 내용과 업무량을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그대로 달성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반면에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한데, 이 경우 대부분이 기자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 가량은 상부의 명령에 따르되, 일의 과정에서 간혹 개인적인 판단이나 시간 조정이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노동의 분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차

이는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장래성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18.6%), 다음으로 저임금과 후생복리제도의 미비(각각 16.3%)도 노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북한 여성들이 여성에게 하찮은 일을 맡기는 노동력 배치상의 성차별주의와 그로 인한 직종별 임금격차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안일이나 자녀양육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대답은 단지 5%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사직하였던 이전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의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다른 문항이 지닌 어려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거나, 둘째, 모성보호 조치 등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셋째, 북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위계구조의 차별적인 역할 관념을 내면화하여 재생산 노동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육과 의료보장, 기타 가사노동의 보조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북한의 여성복지에 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이 보인 부정적 반응을 미루어 보건대, 두 번째 설명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두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한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양육과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념의 내면화는, 남한 여성들을 '편한 것만 좋아하고, 남성 위에 군림하려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존재'로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을 이탈한 여성들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최근의 한 연구(박현선, 1999) 역시, 응답자의 대부분이(80-94%) '가족의 주인은 가장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성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가부장적 가족관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남한 여성노동의 현황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여성고용의 성격

1960년에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20%대에 머물렀던 남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현재 47.4%에 이르렀다.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9년의 참가율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 40%대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60년 73.5%에서 1999년 74.4%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반해, 여성의 참가율은 같은 기간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급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경제위기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단선적이라기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현황을 연령별로 세분해 보면 20-24세 연령층과 40-54세 연령층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고 25-34세의 층에서는 감소하는 쌍봉형 혹은 M자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여성노동시장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고용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성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재생산노동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공백이 두드러지지 않고 설사 잠깐동안의 단절 기간을 갖더라도 그것이 곧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잘 발달된 육아시설과 직업훈련체계를 갖추고 고용단절 후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가정과 일의 병행이 큰 도전 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보기는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Nasman, 1992).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인식이 부족하고, 재생산노동을 사회적 노동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는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 사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고용의 불안정성은 여성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류해 볼 때 여성노동의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고 형태가 1985년도의 9.7%에서 1998년에는 3.7%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임시고용의 형태는 같은 기간 11.9%에서 43%로 무려 4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상용고 형태의 여성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상용고 형태로 여성을 고용하였던 기업주가 성장 침체로 여성고용을 줄이는 한편 신규취업과 재취업이 임시고나 일용고, 파견고용과 같은 비상용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팽창하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함께 제조업을 이탈하는 여성노동자가 증가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상용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도 그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김영옥, 1995). 여성고용의 또 다른 특징은 직종별 취업 비중에서도 나타나는데 남한 여성들의 취업분포를 보면 단순생산직의 종사 비율이 가장 높고(36.5%), 다음에 서비스·판매직(23.1%)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 종사자는 합쳐서 17.6%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나) 임금

남녀 고용평등의 원칙에서 본다면 개인이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동일한 노동을 했을 경우 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한다. 198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하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사람에게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보편적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직종별, 학력별로 차이가 나지만 1998년 현재 전체 여성노동의 평균임금은 1,028,000원으로 남성평균임금(1,666,000원)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88)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에서 차별로 인한 부분이 62.2%나 되고 생산성의 차이나 직종 획득에 필요한 자질 차이 등의 합리적인 요인

에 의한 격차는 37.8%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성차별로 인한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은(49.9%) 제도나 관습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여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에 관계없이 많은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사회적 요구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남성임금이 연평균 15.4%의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여성임금의 상승률은 17.4%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에는 남서임금에 대비한 여성 임금 구성비가 전 학력평균 구성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진수희, 1997). 이러한 변화는 여성노동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학력의 직종이나 일의 성격이 전문성을 띠는 직종에서는 특히 성차별의 정도가 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하여 성차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은 임금수준에 따른 취업자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의 통계를 보면, 여성노동자들의 98.4%가 저 학력과 저 기능으로 특징되는 20만원 미만의 최하위 임금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3년에 와서는 일부 고임금을 제외한 전 임금 부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김애실, 1997).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가족임금체계의 논리와 가부장적인 관행 및 제도의 영향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횡포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임금 이외 기타 노동조건의 측면에도 관철되는 성차별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불평등체계를 재생산하는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양성평등 여성노동 구현

서로 이질적인 사상과 이념, 그리고 상충적인 원리의 제도를 가진 두 체제의 결합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원형을 창조하는 것

보다 훨씬 난해하고 복잡하다. 이미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기제들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고착화된 갈등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누구에게나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과 통일체제의 모습을 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자칫 무책임해질 수 있는 작업이다.

각 단계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통일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통합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통합은 통일 이후의 사회에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경제체제의 통합에 따라 노동시장은 상품 및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경제환경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속했던 여성노동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보호막이 폐지된 채 가부장제적 시장경쟁의 압력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통일독일의 경험이 시사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다. 독일의 체제 통합은 우선 여성의 실업을 양산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 아래 여성의 노동계급화 혹은 여성노동의 사회적 노동화를 위해 기왕에 실시되었던 모성보호나 탁아시설 등의 각종 노동화를 위해 기왕에 실시되었던 모성보호나 탁아시설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소멸되거나 후퇴하면서, 이제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자본주의 후진국의 경우처럼 여성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성별 직종분리가 더욱 가시화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그 도안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성장을 위해 미숙련 내지 반숙련의 사회적 노동으로 활용되었던 여성노동은 구가 주도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의 전면적인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잉여노동력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실제로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의 실업률은 공식적인 통계(1992년 1월 현재 17%)로 잡힌 숫자 외에 은폐된 실업자와 단축 노동자를 합쳐 40%에 달하며 이중 여성 실업률이 70%를 차지하였다(김재경, 1992).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실업의 급증과 구 동독의 보다 진보적이고 여성 우호적인 정책 및 제도가 후퇴하면서 여성노동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통일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여성노동시장정책을 단행하였다. 공공부분에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정책 관련 부서를 설치하며, 여성관련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거나 여성노동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여성노동의 질적 보호를 위한 국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권영경, 1997), 따라서 양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여전히 험난하게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여성노동에게 지각변동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인력의 재배치로 인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서재진 외, 1997), 특히 주변적인 한계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여성노동은 그 성격상 변화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남북한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여성들의 고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참고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성실업자 수는 연구자마다 그 추정 방법에 따라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100만 명에서 400여 만명에 이를 정도이며, 여성들의 예상 실업률 역시 20%에서 6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로 추정되고 있다(김수곤, 1996; 선한승, 1998: 오길남, 1996; 조동호, 1994). 또한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상용노동자의 감소 및 파트타임직의 확산과 같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이 양적인 침체가 노동조건 및 기타 여성보호 조치의 악화를 수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업종 및 직종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시장 능력에 따라

그 파장이 다르고 피해의 내용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통일 이후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기간 동안 여성노동이 경험하게 될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고용환경은 그 동안 남북한 양 체제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이제 싹을 틔운 남녀평등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여성노동을 주변적인 한계노동으로 평가 저하 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적 상황과 지위가 통일로 인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통일된 한국 사회가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성노동이 사회적 노동이라는 인식의 기반에서, 한편으로 기존의 여성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대량의 여성실업의 해소를 위해 새로운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양성평등한 노동체제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반여성적이고 고착적인 성불평등의 사회 상황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차별금지의 외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을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 여성고용의 실질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적극적인 여성노동정책의 실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체제의 구축을 위해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사회의 보편적인 시민이자 여성의 특수한 권리로서의 성평등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 양 체제에서 명시하고 평등은 남녀간의 동등한 형식상의 권리와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특별 보호의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성평등권은 성중립적인 평등주의와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원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특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혜택에 불과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온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는 성평등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닌 여성의 특수성과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적 차이를 고려한 평등의 정책만이 현실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여성을 가사책임자로 규정한 기존의 성별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성노동자를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전략과, 성별분업구조를 해체하고 재생산노동의 사회적 지원체제를 통해 여성노동을 경제적 자립자로 키우는 전략 사이의, 양성평등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성별분업구조의 재구성은 현존의 차별적인 노동시장과 노동관계를 타파하고 여성 노동이 완전한 노동자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장려하고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불평등체제가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제도·의식 등이 누적되어 구조화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조순경, 1990), 불평등의 해소는 국가권력이 현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종래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회피에서 벗어날 때만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평등과 정의의 통일 사회는 국가가 공·사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강자의 폭력과 횡포를 견제하고 소외 계층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감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독립적인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권리와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국가정책의 제도화와 국가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통일 논의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통합되고 나아가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통일 담론에는 권력을 점유하는 집단의 일방적인 시각이 투영되기 쉽고 따라서 그동안 남북한 체제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의 배제가 통일한국 사회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한국이 양성평등한 사회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헌법, 노동법, 가족법, 세법, 사회복지법 등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기본법이나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여성관련 법 및 정책의 의미는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세력의 주류화에 기반하였을 때 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등 원리의 정착은 기존의 남북한 사회를 구성하였던 노동 영역에서의 가부장성과 여성노동력의 주변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통일한국에서 양성평등한 노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다. 통일 이후 파생될 수 있는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등의 여성노동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성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동이 남성노동의 보조자로서의 한시적인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적 생산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 생애의 특정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생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아니라거나 혹은 가사와 양육 등의 재생산노동의 전담자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거나 취업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평등의 실현은 젠더(gender) 의 해체로부터 시작된다는 서구 복지사회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이후 양산될 여성실업의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정착을 위해 여성고용의 실질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의 경험이 시사하고 있듯이 사회보장제도와 조기퇴직제 실시 등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실제로 여성고용창출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잠재적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의 누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구조를 구축하는 준비 단계로 지금까지 취업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왔던 여성들에게 잠정적으로(종국에는 폐지될)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여성에 대한 장벽이 높은 영역에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사적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승진 등의 노동조건에서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면 현실적으로 여성고용평등이 가시화될 뿐 아니라 여성의 세력화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은 차별을 완화하려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에 따라 가부장적 억압을 넘어 새로운 평등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넷째, 남북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 – 임금, 성

별 직종분리, 고용형태 등 - 현실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고용차별에 대한 행정감독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법과 불평등한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통일이후 기혼여성의 고용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자녀양육 문제이다. 자녀를 가진 취업주부들에게 있어 양육의 책임은 고용을 단절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게끔 이끄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고용에 장애가 되는 양육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실천하고 모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지 및 지원체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의욕를 고취시키고 업무의 집중도를 진작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편안히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일련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이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도 여성고용의 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도화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는 핀란드와 프랑스의 경험은 사회정책이 양성평등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보기들이다.

여섯째, 노동시간의 단축과 신축적인 노동시간의 확충을 꾀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가사분담의 여지와 시간을 줄 것이며, 신축적인 노동시간 활용은 교육훈련 등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한편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직률이 감소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과 일의 이중부담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감소됨으로써 가사나 양육에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집안일은 곧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엄격한 성별분업체계가 이완되거나 변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분업구조의 재편은 남성을 생계부

양자로 규정짓는 가족임금제도가 더 이상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핵가족 모델에 기초한 노동 및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마. 복지

복지분야에서는 남북한 복지정책에서의 여성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통일 후 여성들의 지위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남녀평등[69]한 복지구현의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생각해 본 것이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통일 이후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가 더욱 심화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통일은 여성의 지위, 특히 동독출신 여성들의 지위를 현격하게 약화시켰다. 통일 이전에 동독에서 여성은 가계수입의 40%를 벌었고, 이에 비해 서독여성의 수입은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40-45%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13배로 늘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방법과 여성지위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70]

(1) 통일과 사회복지와 여성의 문제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제도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인진, 2001).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

---

69) '남녀평등'의 실현은 우리 사회 및 전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주요 추진 전략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이다. '성 주류화'의 개념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Corner, 1999).

70)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재인·장혜경(2000, 2001)을 참조

하는 제도로서 서구 국가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통일,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연관지어 논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는 각 국가의 정치이념과 체계, 가족제도와 그 이념, 그리고 남녀관계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김경희, 2001). 개별 국가에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회권(social rights)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양 정치이념에서도 권리개념은 핵심을 이루지만 중립적으로 표현되는 이 권리가 그 사회의 계층적, 지역적, 성별 요소 등에 의해 사회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한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여성복지라는 개념은 한정된 대상과 욕구를 가진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였다. 특히 남한에서는 요보호 여성 및 모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부분에 제한된 복지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여성문제 해결이나 전반적인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여성복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경희, 2001).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여성과 복지문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통일 이후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가 더욱 심화된다는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볼 때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복지정책 안에서 여성은 기본권을 가진 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행자로 여겨지거나, 여성들의 복지는 기본권의 실현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 고려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의 혜택은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이 완전한 형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중앙집권화 된 계획경제에 의해 전 여성들의 고용이 달성되었지만,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수용하게 된다면, 성별직업분리, 주변적 노동시장에의 잔류 등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다.

(2) 독일 통일 경험의 교훈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여성교류협력의 특징은 양 독간의 교류가 구 동독 여성들로 하여금 동독 내에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수행에 기여함으로써 여성교류의 사회통합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71] 구 동독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차원의「독일민주여성단체 (DFD)」가 중심이었는데 1970년대 말 1980년대에는 평화나 환경운동을 주제로 생겨난 비공식적인 여성단체들은 구 서독의 여성단체나 국제여성단체와 연관을 맺었고 교회와 도서관은 의사교환을 위한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72] 평화나 환경문제 외에 비공식적이지만 정치적 문제 및 가정의 사회화, 교과서에서의 성역할,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많은 토론은 동독여성들의 의식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독단체들의 민주화 및 사회체제 개혁을 위한 동독시민들의 의식 및 조직화교육은「노이에스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의 의식화에 영향을 주었다.[73]

그러나 동·서독여성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통일과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직전에 급진전된 제도적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소외는 동서독 여성운동의 특성과 경험 그리고 정치문화상의 차이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통일 이후 여성관련 정책이 여성에게 유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차원에서 그 한계점을 드

71) 게르다 체반스키는 통일직후 옛 동독지역에 살았던 다양한 연령층의 각계 각층 여성을 인터뷰함으로써 변혁이전과 변혁이후 동독 여성들의 삶의 모습, 체재에 대한 그들의 견해. 희망, 혼란스런 감정, 현재 겪는 어려움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여성들간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하였다. 게르다 체반스키 저, 여성한구사회연구소 역 (1990).

72) 한독워크숍 (2000.5.12-5.20, 독일 베를린)

73)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통일찬반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문제는 중요이슈가 되지 못하자 '새로운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이 단체내의 지도부가 남성들로만 구성되고 이들 지도부 남성들이 여성문제는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 때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발하였다. 이에 이들 여성들은 다른 단체들에서 빠져 나온 여성들과 연합하여 여성 NGO를 결성하게 되었고 나중에「독일여성연합(UFV)」을 형성하였다.

러내었다. 특히 통일이 서독의 기존정책을 구 동독이 일정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었기에 구 서독 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되었다[7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구 서독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보면 이들 여성들에게는 직업, 탁아, 성적 자유를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던 반면 구 동독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실천된 것이었다. 또한 구 동독 여성의 경우는 여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반면 구 서독은 그렇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요구가 다른 차원이었다.[75] 이는 여성들간의 다른 경험들과 기대들 그리고 정치문화들로 인해 '같은 언어로 말하는 데' 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후 구 동독 여성들의 실업과 사회보장책의 미흡, 즉 통일 이전 동독에서 여성은 가계수입의 40%를 벌었고, 이에 비해 서독여성은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독일의 구 동독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989년 중반에서 1991년 중반 사이에 남성 실업자는 300%가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500%가 증가하였다. 여성실업과 사회보장정책이 미흡하여 실업자의 70%가 여성이었으며, 12시간 운영하던 탁아제도가 7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여성우선 해고와 양육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특히 구 동독지역 독신모들의 빈곤이 가속화되었고, 1989년 이후 출산율이 64%나 감소되었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탁아소가 자본주의적 영리경영으로 전환되면서, 탁아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이런 현실들이 동독지역 여성들의 임신기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동독

74) 특히 동독지역 여성들은 실업 및 탁아문제, 낙태문제의 처벌조항, 교육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75) 말하자면 동독에서는 여성해방이 이루어졌고 차별주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이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달성하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지도층에서는 거의 여성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 층에서는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슈미트국장은 여성차별은 동서독 여성들의 동일한 문제로 보기도 하였다 (한독워크숍).

여성들의 가치관혼란[76]등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과정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능했던 모성보호 및 근로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법률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구 서독의 다원주의와 시민사회, 경제대국으로서의 역량이 일관되게 구 동독과의 인적·물적 교류정책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양 독간 여성단체들의 교류협력이 구 서독 정부 및 여성단체들의 지원 하에 상호이해를 위한 만남과 대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통일후 상호이해가 어려웠던 것을 볼 때 다양한 만남과 대화가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남북여성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것-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의 개입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남북한의 일반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복지정책의 특성[77]

(가) 북한의 사회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장 '문화' 및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는 '의무교육, 탁아소, 유치원 운영의 국가사회부담, 전반적 무상치료제 및 예방 의학적 방침, 노동, 휴식, 무상치료, 교육 등의 권리, 남녀평등' 등

76)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 여성들의 여성해방론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초하면서 과거 남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여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부장제에서 찾았다. 반면, 구 서독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는 여성해방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양태가 질적인 삶을 부여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한 구 서독지역 여성들의 우월감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다.

77) 보다 자세한 것은 김경희 (2001)와 김재인·장혜경·김원홍(2001)을 참조

과 같은 사회보장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에서는 '8시간 노동제, 노동보호 및 사회보험제실시, 남녀동일임금제, 유년노동금지, 유급휴가제, 건강보호대책' 등을 언급하고 있다 (김한중, 1993).

북한은 1946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 연금, 산업재해, 실업 등을 적용하였으나, 전국민에 대한 연금제도를 국가사회보장법(1951)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상실연금, 실업보조금, 장례보조금, 해산보조금,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을 제공하며 이후 협동농장의 농민까지 확대하고 있다. 노령연금 및 유가족연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해 국가가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한중, 1993; 박진·이유수, 1994). 급여자격에서 완전노령급여는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에게 주어지며, 남성은 정년이 60세이며, 여성은 55세이다. 북한은 정액연금 형태로 월 기본생활비의 60-70%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가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주어진다 (박순성, 1994: 20-24). 1952년 실시된 무상치료제는 초기에 당, 정, 군 간부 및 그 가족 등에게만 해당되었으나 1960년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금급여로 요양비, 해산보조비, 약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남한의 공적부조로 분류될 수 있는 생활보호, 원호구호, 재해구호와 같은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 배급품의 지급과 영예군인, 혁명투사와 같은 특정 층에 대한 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진·이유수. 1994). 북한의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탁아소, 요양원, 양로원과 같은 시설이 있다. 북한사회에서 노인은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부모 부양은 장남이 대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노인에 한해서 양로시설에 위탁되고 있지만 그다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전반적으로 가족 내의 노인이나 병약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가족내의 갈등 등을 조절하는 역할과 같은 복지기능은 사회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여성복지 정책의 특징은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보호 및 모

성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여성의 기본적인 사회적, 교육적 욕구 등을 정책대상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왔다.[78]

북한은 전국민의 완전고용을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이상이며, 취업률은 총 취업인구의 4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서 차별은 크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직업과 직무 분리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는다.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하여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여러 가지 모성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 제66조에는 여성 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 산후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동법 제59호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에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여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79]

북한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은 보육원의 설립이었다. 194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 명령 제5호에 의해 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949년에 개정하였으며,

---

78) 북한의 여성정책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김재인·장혜경(2001)을 참조

79) 북한의 모성보호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1)여성근로자에게 직장 재량에 따라 생리휴가를 실시한다. 2)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산전산후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1986년부터는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려 1백 50일간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3)다태 분만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로서 유급의 산후휴가를 더주고 양육 보조금과 양육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4)세 명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단축한다. 5)여성의 인텔리화 정책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근로여성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북한의 여성노동자에 관한 모성보호제도는 자본주의 취업에서와는 달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이온죽, 1993).

1954년에 탁아소 증가율이 190.8%에 이르렀다. 개정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은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노동여성으로 하여금 탁아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윤미량, 1991). 북한의 탁아소법은 국가, 사회적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그 후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꾸리며 보육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정책(1968),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해당 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71년)을 채택하였다. 1976년 4월에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취학전 유치원 교육 1년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모든 여성들을 아동교육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모든 아동을 주체의 혁명적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를 혁명위업의 대를 이을 계승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한다는 공산주의 정치사상교양과 여성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손봉숙, 1995).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탁아소의 시설수준이 낮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인 경우 직접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보다는 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탁아소 시설이 여성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은 원래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혜경·김영란, 2000).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탁아제도 이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일환인 밥공장과 반찬공장을 들 수 있다. 밥공장은 대도시에 3, 4개 정도가 있고 된장이나 간장공장은 군마다 또는 몇 개 군에 한군데씩 있다고 한다(윤미량, 1991). 그러나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하며, 특히 농어촌에는 이러한 시설이 미비하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이념에 따라 국가가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켰지만, 북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반하고 있는 가족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을 없앤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생활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여성복지정책은 평등의 지향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가정혁명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가정내 가사책임과 자녀양육은 주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특히 최근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복지가 감소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80]

(나) 남한의 사회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남한은 사회보험제도를 기축으로 하여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북한이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건국초기에서부터 확대했던 것과 달리, 남한사회는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공무원, 군인, 대기업 등 실시하기 용이한 계층에서 점차 전국민으로 수혜 범위를 넓혀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하는 과정은 1980년대 중반의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김경희, 2001).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1961), 의료보호(1977)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연금제도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정계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6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직장의료보험이 등장하였으며, 1977년 5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이 곤란한 국민을 부조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복

80) 북한이탈주민으로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전혜숙씨에 의하면 1990년 경제난 이후 여성들의 사회적 및 가정적 부담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임을 말하였다. 국가적인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가족의 식생활을 책임져야했음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 및 복지 등과 관련하여 아무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장사, 매음매춘과 같은 각종 형태의 생활전선에 내몰고 있다고 하였다 (2002년 4월18일).

지요구가 증대하고 정치적 사안이 되면서 연속적인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의 경우,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였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5년 3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었다가 1998년 9월부터는 5인이상 기업체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세계화의 영향과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남한정부는 한국 복지의 방향을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로 제시하고 있다.[81] 생산적 복지의 기조아래 진행되고 있는 남한의 사회복지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의 사회보험 제도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여성의 경우, 특히 기혼여성들은 복지 수혜의 근거가 결혼관계 및 기타 다른 가족관계로부터 도출된 피부양자로서만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여성들의 독립적인 삶은 어려워지게 된다.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부담을 느껴서 개인 가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특히 연금이나 고용, 실업 보험에 있어서는, 근속연수가 보험 수급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육과 가사로 인한 일의 단절은 여성들의 복지수급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1995년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726만명 중 남성이 537만명, 여성이 189만명으로 여성은 26.1%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5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 취업자의 62.7%가 영세,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15년을 채울수 있는 여성들은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한국여성단체연합,

81) 이는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 또는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의미하며, 국가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는 그 동안 성격이 불분명했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잔여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유형으로 정착시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영훈, 2000).

1997). 성차별적인 고용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낮은 임금, 단속적 고용으로 인한 짧은 평균 취업기간, 비정규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상의 혜택 및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노동유연화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관계의 여성화(feminization of work)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차별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게 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생산적 복지가 노동시장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성별직종분리, 고용차별, 차별적인 노동조건과 대우라는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체계로 편입되는 셈이다 (조순경. 1998).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등 14개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총칭한다. 남한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에 비하여 재정이 작고 체계의 정비가 느린 편이다.

남한의 여성복지는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부녀복지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복지정책이 없었다 (강이수·정혜선, 1997). 80년대까지의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대상 혹은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복지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영세여성가구주,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었고, 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부에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는 매매춘 여성과 가출여성을 위한 상담사업과 선도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1995년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8개소의 부녀상담소와 주요역, 터미널, 기지촌 등에 94개소의 간이부녀성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보육료와 자녀학자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가정은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가 조금씩 확장되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여성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1989년에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89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용모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은 육아는 여성만의 역할은 아니라는 인식이 정책담론으로 싹트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아직은 기업문화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되는 여성 고용의 불안정은 입직에서부터 남녀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1991년에 제정되고 1997년에 최종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0년대 이후 기혼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아동의 양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자 보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정에는 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탁아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제정 당시 국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수준에서 탁아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독립적인 탁아법을 요구하는 탁아운동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화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 정부,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등의 역학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성보호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사업 보충계획(1995-1997)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1,472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부지원 미비로 1997년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32개소로 4,25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35.8%가 증액되어 47억 4,294만 2천원이 책정되었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97년 국정감사 이미경의원).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복지 개념을 확대하여 요보호 대상 여성의 복지정책에서 일하는 여성과 주부를 위한 여성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서 제시한 내용의 아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남한의 여성정책은 그 동안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여성들은 최근의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의 성립과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을 여성들의 복지와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아,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을 통하여 양성평등한 복지정책을 실현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남북한 여성복지이슈[82]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들로 고용불안정과 이로 인한 소득격차를 들고 있다(박진·이유수, 1994; 김한중, 1993). 즉 통일과정에서 경제환경의 변화는 인구이동과 노동력의 이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인구이동은 남북한의 임금격차를 단기간에 축소시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을 떨어뜨리고, 남북한 노동시장의 착란현상과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박진·이유수, 1994). 또한 북한지역의 경우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조직체가 민간소유로 이전되면서 실업의 문제와 근로조건의 악화가 예상된다(장경섭, 1995). 그러나 완전고용과 국가에 의한 고용분배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사회에서 실업은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의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

8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희 (2001) 참조

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법 제3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 18조에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자발적인 실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규정을 내리고 있어서 통일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서 실업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통합과정에서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권영경, 1999).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체제는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취업노동과 그것의 복무 연한을 복지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고용문제는 복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 이후의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노동력의 규모와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북한의 자료는 수집과 접근의 한계 때문에 1986년을 기준으로 한 UN의 통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북한은 유엔 인구기금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인구통계를 공개하였다. 유엔의 인구기금을 지원받아 북한 중앙 통계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78.5%에 해당되는 3,845,000명이며, 이 중 여성 종업원 수는 138,000명으로 전체 종업원 수의 36.2%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따라 완전고용정책을 취하므로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실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보수 주부 노동력의 사회적 동원과 비효율적 계획경제부문의 과잉고용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한에서 산업과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의 대량 사유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산업 예비군이 될 수 있는 인구층이 상당 부분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실업의 규모 추정치를 보면 여성실업규모는 적게는 110.9만 명에서 많게는 435.6만 명으로 추측되며 남한 여성유휴노동력 180만 명을 남북한 사회통합 시에 적용한다면 남북한 통합이후 여성실업규모는 290만 9000명에서 615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권영경, 1999).

특히 북한지역의 경우,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직장

을 통하여 제공되었던 탁아 및 각종의 육아서비스가 민영화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에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우, 여성들의 실업인구화와 비경제 활동인구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국가의 고용분배에 의해 완전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 상당수가 노동시장이라는 자유로운 선택과정에서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유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양과 질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처음에는 시장임금율에 의해 취업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김수곤, 1996).

그러나 반드시 통일 이후에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후퇴가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양질의 탁아시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기 보다는 자녀갖기를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수곤, 1996). 또한 북한은 빈곤선 책정에 의한 공공부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빈곤의 여성화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여성들의 빈곤 문제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고용의 불안정의 문제가 가시화되었으며,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조순경, 1999; 오정진, 1998).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성들의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이는 많은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데서 기인한 것이다.[8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49.5%에서 1998년 1/4분기에 45.6%로 하락하였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2000년 4월 현재 48.4%이다. 경제위기 이후 취업형태별 고용구조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이상이다. 취업

83) 통계청, 「1997-2000년 분기별 고용동향」(http://www.nso.go.kr)

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1999년 4월 말 현재 남성은 60.4%, 여성은 그 절반인 30.1%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 여성들의 비중이 상당하다. 경제적 합리성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성별분업과 성차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부장적 논리가 결합하여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조순경, 1998). 이러한 여성차별의 기제는 노동력의 이동과 구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고용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는 결국 여성들의 고용평등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라는 복지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 국가에 의한 고용분배체제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행하였던 탁아나 의료혜택 등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더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확보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적 복지를 기조로 하는 남한의 복지체계는 거의 국가-시장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성들이 수행해 왔던 육아, 노인부양 등의 가족 내의 복지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통합 과정에서는 더욱더 여성들의 역할과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희, 2001).

이처럼 남한과 북한이 이질적인 사회체제에서 발전해왔지만,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분업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요소는 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복지정책의 수혜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정책에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들이 포함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양성평등한 복지구현

지금까지 통일, 여성, 그리고 복지를 연관하여 논의했던 이유는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주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통일사회의 복지제도의 방향은 성별노동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지 않은 남녀평등한 복지제도가 구현되어야 한다

는 데 모아진다. 이러한 전제하에 통일과정에서 남녀평등한 복지제도 구현을 위한 남북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재인·장혜경, 2000 & 2001; 김경희, 2001).

첫째,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남녀평등을 복지원리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사회가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복지와 관련된 여성의제가 무엇인지를 추려내고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 동안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통하여 남북한 여성들이 이산가족의 문제, 정신대 문제 등을 공동의 사안으로 제기하고 함께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남북한 여성의 복지와 관련하여 통일과정에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여성들의 요구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에 통일과정에서 여성의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독일경험에서 나타난 것 처럼여성들의 복지요구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안에 밀려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여성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통합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족의 복지기능이 공적인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복지제도 내에서 여성의 복지수급권은 불리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둘째, 공동의 여성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당과 국가에 의해 사회보장 정책이 정비되고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남녀평등을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남녀평등의 권리가 가족 내의 성별분업과 일상생활의 가부장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남한은 시민운동이 복지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남한의 여성들은 주체적인 여성운동 조직과 활동을 통하여 제도정치와 정부를 비롯한 공적영역에서 남녀평등권의 보장과 실현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차이가 남북한 여성들을 이질적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려되어야 할 점이며 공동의 의제를 추려내는 작업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처럼 남녀평등을 남북한 통일사회 복지정책의 하나의 원리로

삼고 여성의제를 명확히 하려면,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력화(empowerment)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남녀평등적인 복지정책의 관점은 사회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정책대상자, 사회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복지 제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에 와서 이전 시기와 비교될 정도의 여성정책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2001년 만들어진 여성정책 담당기구인 여성부는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의식전환 캠페인, 연구사업,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면 양성평등적 복지제도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여성정책을 따로 전담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전국적 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 있다. 그러나 여맹의 주요기능은 정치학습에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1991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가족법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부각시켜 그 이전의 법령들 보다 여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한국에서도 남북한 각각 그 사회에서 여성정책과 여성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조직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여성비정부기구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84]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 남북한 여성의 지위향상문제는 남녀평등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는 의제에 대한 강력한 집행체제의 기능 수행정도에 따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평등한 복지정책의 실현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여성고용불안정의 문제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족의 복지기능이 공적영역에서 고려되어짐으로써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정책의 힘으로 통일 이후의 독일 여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많은 한계들이 사라질 때 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주류화와 여성빈곤탈피를 위한 공공부조제도 기능의 강화,

84) 김재인·장혜경(2000) 참조

그리고 가족의 구조 및 구성원의 역할 변화와 따른 가족정책의 시행은 통일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바. 여성단체

여성단체는 사회단체의 일부이며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한다. 헤겔(Hegel)이나 맑스(Marx)에 의해 발전된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갈등, 계급 투쟁의 일상의 지형"[85]이며 정부와 정치사회-예를 들면 의회 기구-[86]는 그들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자에 의해 응집력 없는 시민사회는 동원당하고 종종 억압받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이익을 옹호하고 주권을 찾기 위해 시민들은 시민단체, 비정부기구를 설립하여 비정부기구는 한편 정부 및 정치사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 그들에 대항하여 투쟁하기도 한다. 여성(운동)단체는 시민(운동)단체의 한 부문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여성의 삶을 질곡시키는 사회적 억압과 장애물을 제거하여 여성해방적 가치를 고양하는데 진력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그 목표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 및 정치사회에 도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하기도 한다.

한편 북한에는 그 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의미의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소련이나 동구의 해체 및 개혁에는 '제2부문'으로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87]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여성운동이 형성되어 1989년 모스크바 여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로토스(Lotus)가 창설되었고 전문직 여성 이익집단이나 여성학 연구 센터도 설립되었다.[88]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 후반 경제

85) 임영일(1992),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 정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 사회』, 서울: 한울, p.177.

86) 정치사회란 "국가의 정책과 조정 능력을 시민 사회에 전달하고 부과하며 시민 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국가에 투영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최장집(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p.393.

87)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88) 정현백, "서구 여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1999), p. 292. 또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여성들의 주장

위기를 겪으면서 장마당과 같은 낮은 수준의 제2경제부문이 형성되긴 했으나 국가가 그를 통제하고 활용함으로써,[89] 국가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이 유리되었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여성단체, 여성 비정부기구(NGO)라는 개념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제 남북 여성단체[90] 속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에 동원될 수 있는 요소나 방향을 도출해내기로 한다.

(1) 여성의 조직화: 자율성과 조직성의 조화

남북 여성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로는 '조직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남한 여성단체를 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단체, 특수법인조직부 등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정식 법인이 79개이고 그 회원 수는 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91]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비정부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들 수 있다. 여협은 1959년 12월 발족[92]하여 2001년 현재 39개 회원단체와 16개 협동회원(시·도 여협)으로 구성되어 회원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93] 한편 여연은 1987년 2월에 발족[94]하여 현재 전국에 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고[95] 회원 수는 24,022명이다.[96]

을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연구회 엮음,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현재와 미래」 (서울: 백두, 1992), pp. 125~142.

89) 정은미, "북한의 농민시장과 개혁·개방",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집, 2001.

90) 남북 여성단체를 선행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재인·장혜경(2000)과 김재인·장혜경·김원홍(2001)의 글을 참조바람.

91) 김재인·장혜경·김원홍(2001), 앞의 책, p. 62.

92) 초대회장 김활란, 초대부회장 박마리아이며 2002년 현재 14대 회장은 은방희이다.

93) http://www.iwomen.or.kr/

94) 초대회장은 이우정이며 4대부터는 공동대표체제로 구성되어 현재 7대 공동대표는 이오경숙(상임대표), 이강실, 정현백으로 구성된다.

95) http://www.women21.or.kr/

96) 김재인·장혜경·김원홍(2001), 앞의 책, p. 63.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다. 1945년 10월 25일 평양에서 김일성은 여성들에게 행한 강연에서 '현 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이라는 글을 통해 대중적인 민주주의 여성조직을 결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후 같은 해 11월 18일 '북조선민주녀성동맹'(초대 위원장 박정애, 이하 여맹)이 창립되었다. 여맹은 다른 근로단체들처럼 당과 국가의 인전대(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정치조직)로 결성되어, 식민지적 잔재와 봉건적 잔재의 청산, 각종 인민정권기관의 건설, 사회주의적 개조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여성을 조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97] 맹원(회원) 수는 1970년대까지 270여 만 명을 헤아렸으나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지금까지 약 120여 만 명이다.[98]

여맹 외의 북한의 여성단체는 '아시아여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협회'[99]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직총) 산하의 '부녀회'가 있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등에도 여성 맹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특별 주제와 관련한 단체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100] 등이 있다.[101]

남북의 여성 조직화를 비교해보자. 우선 남북 여성단체의 조직율[102]을

97) 김귀옥 외(2000), 앞의 책, p. 21.

98) 지금까지 남한에서 생산된 글들에는 북한의 여맹원의 수에 대해서 20만명으로 소개되었다. 그 근거는 방완주(1988)의 「조선개관」에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인데, 2002년 글쓴이의 방북 시 여맹 중앙위원회 모 부장과의 인터뷰 중에 맹원수는 120만명으로서 20만명이 된 적이 없음을 밝혀내었다. 방완주의 책에 20만명이라고 소개된 것은 오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9) 2000년 당시 조선녀성협회 회장은 리청일이었으나 최근 홍선옥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씨를 환영했던 북측 인사의 한 명으로 소개되었다. 「연합뉴스」, 2002. 5. 12.

100) 종태위 위원장 홍선옥

101) 최근 북한에는 현재 약 10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 또는 협회가 있는데, 조선요리협회, 우표애호가동맹, 프로권투협회, 자동차협회, 골프협회, 바둑협회 등도 포함된다. 특히 조선요리협회의 경우 반드시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01. 10. 29.

비교하면, 여성단체 소속 회원을 수적인 면에서 단순하게 보면 1999년 현재 남한의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전체 여성 약 1천5백7십여만명의 단체 가입 여성 3백12만여명, 약 19%이고, 북한의 해당 여성 약 7백 5십여만명의 여맹수 120여만명, 16%이다.[103] 수적으로 보면 남한여성의 조직율이 조금 높다.

그러나 조직화율만으로 조직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이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소속감을 표시하는 지표가 되는 회비 납비율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수납율[104]을 보이는 반면, 남한의 여성단체의 회비 수납율은 평균 20~30%에 불과하고 회원만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105]

또한 조직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생활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경우 맹원들은 정기적으로 '정치사상학습', '사회문화활동', '노동동원활동' 등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106] 그러나 남한의 경우 조직생활은 단체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행사-회원 중심의 행사 제외-시 동원률도 10~1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단체는 의무의식과 대중성이 높은 반면 남한은 자율성과 전문성-엘리트중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여성단체의 각각의 장점인 자율성과 조직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통일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단체가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유인기제를 높여서 자율적인 참여율을 높

---

102) 여성단체조직율(%)=여성단체 가입회원수/15세이상 64세이하의 여성 총수 ×100

103) 1999년 남북의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서 각각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를 여성인구로 간주하였다.

104)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 속에서 조직 생활이 해이해지면서 회비 납부율도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05) 여성NGO 실무자의 인터뷰. 예외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참여사회연대나 녹색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회비수납률이 50~70%에 달한다.

106) 김귀옥, "북한여성의 가정생활과 남북 여성 교류",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여야 한다. 자율성을 높이려면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와 활동이 여성의 지위와 자긍심을 높이며,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제 의무성이 강하면, 자긍심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므로 스스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원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나가야 한다.

(2) 여성단체의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의 균형

남북 모두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등 발전에 의해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모두 중앙/지역간 격차가 심하다.[107] 즉 지역 개발에 있어서 수도 중심성이 강하다보니 시민사회나 단체들도 대개 서울과 평양에 몰려 있고 각각의 활동도 서울과 평양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남북의 여성단체들은 어느 정도 지역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의 경우 여협과 여연을 중심으로 지역 회원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를 본다. 여협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및 캐나다 한인여성회를 두고 있다. 여연의 경우 경기(소속 단체 16개), 광주전남(소속 단체 3), 대구경북(소속 단체 6), 부산(소속 단체 7), 전북(소속 단체 16), 경남여성연합(소속 단체 8)을 두고 있다. 여협의 지역여협 회원수만도 2,433,896명에 달한다. 여연의 경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여연 회원이 1만 5천여~2만여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중앙과 지역 단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결정 구조가 잘 관철되는가? 여협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면 여협의 경우 중앙과 지역, 상층(임원)과 하층(일반회원)간의 활동이나 조직구성원 간의 괴리가 발견된다. 중앙이나 상층의 경우 기업 소유주나 전문기능직 여성, 정치가 등이 많은 반면 역이나 하층의 경우 중하층으로서 여성해방에

107) 정현백 외(1998), 앞의 책, p. 19.

대한 문제의식은 낮을지라도 지역에 대한 봉사와 헌신정신이 높은 일반회원 사이에서 위계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연의 경우 전체 소속 회원수는 적을지라도 대부분이 활동가이며 자원성이 강한 편이다. 즉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거나 노동, 농민, 기층운동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많고 대학졸업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108] 여연도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일하기 보다는 수평적으로 연대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남한 여성단체는 수직적 구조는 취약한 반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단체들이 많다. 즉 여성인권, 생활협동조합, 보육 및 교육, 장애우 및 여성 복지, 노동자, 농민 문제, 지역봉사, 통일과 평화, 가족법 개정, 성문제, 미군 및 기지촌, 성매매 등으로 특화되어 있어, 설령 여협이나 여연에 회원단체로서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사안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은 상이할 수밖에 없고 상하로 의사소통이 별로 원활하지는 않다.

반면 북한 여성단체인 여맹 조직의 경우 중앙에서부터 인민반 단위의 지역 여맹-초급여맹-까지 관료제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사회를 조직사회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회단체가 직장별, 학교별,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급여맹에 속해 있는 여성들도 회비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상학습, 사회문화적 활동, 의무노동, 봉사활동, 부업활동 등을 여맹단위로 함께 하므로 사회적 동원이나 수직적 연계는 강할 수밖에 없다.[109] 그러나 중앙 여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여맹의 조직성은 느슨한 듯이 보인다. 1990년대 중, 후반 경제위기 당시「조선녀성」에는 여맹원들이 장마당으로 장사하러 가거나 가출하여 조직생활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110]. 한편 북한의 사회단체의 특성상 수직적 위계관계는 강하지만, 수평적인 연대 활동은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사회의무노동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단위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단체간 연대활동의 결과로 동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부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단위들이 동원되는 양상으로

108) 여연 간부의 증언.
109) 김귀옥, 앞의 글, 2001.
110)「조선녀성」, 2000. 1, 6호.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남한 여성단체의 경우 중앙/지역간의 조직적 연계구조가 취약한 반면 조직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평적 연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 역으로 북한 여성단체의 경우 상하의 조직적 연계구조를 갖고 있어 활동목표나 방식에 있어서 비교적 획일성이 강한 반면 수평적 연대활동은 약한 편이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 네트워크를 잘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시된다. 모든 단체를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개별 단체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리거나 지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개별단체는 전국적 조직과 상호 연대하거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의 대중성 문제와 결부하여 지역 단위의 회원들에게도 소속감을 잘 심어주면서 여성정책을 잘 이해하고 중앙 단위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선전과 홍보를 앞세운 조직성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3) 남북 여성의 공통 과제 실천

이상과 같은 내용이 남북여성단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이제는 여성단체가 어떤 주제의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여성의 상호 신뢰와 이해, 공감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우선 남북 여성이 공통적인 과제로 안고 있는 문제부터 접근해나간다. 앞서 본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당시 남북 여성의 접촉과 대화를 이끌어내는데서 나아가 국제 연대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었다. 남북 여성이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 중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의 하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비감축 및 여성복지의 문제이다.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비용의 감소가 서구의 일반적 추세이다. 남한의 경우 사회복지비용은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 북

한은 15% 정도가 된다고 해도 경제 위기 이후 질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남북 모두 국방예산은 사실상 20~30%에 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방위비는 사회 전체,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며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반도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측면이나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60년 가까운 소모적 분단비용의 지출을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통일비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군비를 감축하더라도 감소분이 바로 평화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111] 평화적 전용을 위해서는 남북의 여성이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비 감축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문제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 여성이 절약의 미학을 앞세운 생활협동조합(생협) 운동을 전개한다. 통일의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통일비용이 들 수밖에 없음을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았고, 설령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짧은 시간 한꺼번에 통일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통합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약의 미학이 중요시될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남한의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기왕에 전개하고 있는 생협 운동을 남북 여성들이 동참하여 남북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면, 비용 절약과 상호 교류의 증진을 통한 공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생협과는 다르지만, 공장이나 사무실 단위로 '후방공급체계'[112]를 통하여 일종의 직장 생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의 철로가 남북으로 잇게 되고 또한 남북 종단도로도 확충되어 교통망이 날로 발전할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이러한 구상을 세우는 것도 몽상만은 아닐 것이다.

셋째, 남북 여성 놀이마당이나 행사를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로 실시

111) 김현옥,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제49호(봄호), 2001.

112) 이는 북한의 공장경영제도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한 부분으로 직장과 가정을 묶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단체가 목적의식적인 활동만 할 때 회원들은 쉬 피로해지게 되므로 놀이를 통한 친목도모와 충전이 필요하다. 이때 남북의 중앙 단위의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여성단체들도 중앙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놀이마당, 전시회, 바자회, 경연대회 등-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함-의 행사를 벌여나간다.

(4) 여성학 연구 센터 공동 운영

실질적 통합으로 가는 과정과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을 발전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사업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여성주의적 관점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립해나가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안과 각종의 프로그램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한에는 인문·사회과학적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이 있고 여성단체에도 각종 연구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단체들이 즐비하다. 또한 남한에는 1980년대말 이래로 대학에 여성학이 정규과목이나 학과로 증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에 상응할 만한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교육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 인문·사회과학적인 여성문제 연구기관이 부재한 이유로는 여성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북한에는 여성이나 어린이의 영양 관리나 질병 문제를 연구하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나 평양산원나 수예연구소 등의 실용적인 연구기관이 있다.

따라서 남북 여성연대 기구를 만들면 산하에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통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면서 여성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산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전문가 설문조사 및 워크숍 결과

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정부는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실질적 통합'은 남북연합 실현이후부터 통일국가 바로 직전의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를 통하여 증진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과도적 결합체제 (1민족 2국가 2체제)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남북연합이 실현된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은 남북한간 제 분야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남북한 '실질적 통합'은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분단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바 제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이 뒤따라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통합의 기간과 통합을 위해 논의되어야할 분야,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 통합의 기간

남북한 '실질적 통합'은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분단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제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이 뒤따라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할 때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소요기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표 Ⅳ-2> 남북통합의 기간 및 이유

기간	5-7년, 10년, 20-30년 50-60년 등 다양한 범위
이유	- 50년이 넘는 분단의 기간을 생각하면 5-7년도 민족공동체적 문화형성에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 기간이 너무길면 통일국가의 실현을 위한 욕구가 약해질수 있기 때문 - 한 시대에 형성된 특정한 의식과 문제들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중심세대가 될 때 극복 및 해소되기 때문에 한 세대만큼의 시간이 필요함. - 현재 남북한의 체제이념이 너무나 상극적이고 이질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20-3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 분단 50년으로 인한 골이 깊은 만큼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남북전쟁의 휴유증 및 독일의 경험 등으로 볼 때 최소한 650-60년 이상이 걸릴 것임.

(나)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논의되어야할 분야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분야들과 그 이유,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구체적 분야를 알아보았다.

<표 Ⅳ-3>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분야

논의되어야 할 분야	이유
- 언론(대중매체), 교육, 종교분야 - 상대측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의식·제도·관행 분야 - 국가체제의 이상적 방향 및 통일정부, 분야별 법적, 제도적 통합분야 (예: 헌법, 화폐통합) - 비정치적 분야인 복지 및 경제적인 분야	- 무엇보다도 서로의 차이가 큰 부분이기 때문임. 특히 대중매체부분은 공동체 의심함양에 주는 의의가 매우 클것임. -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유형적·무형적인 요소, 표피적인 요인과 심층적인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요인들이 어우러져 총체적인 냉전문화, 냉전적인 의식·관행·제도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임. -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통합이 선결되기 때문임 -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격차와 북한주민의 사회주의 경험(복지수혜경험)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논의된 분야와 맥을 같이 하면서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부드럽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구체적 대비가 요구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①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접촉하는 대중매체 분야(특히 라디오와 TV), ②남북여성교류 등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여성의 가사 해방 및 사회적 역할 확대 (여성취업 및 직업안정, 복지문제, 정치참여 문제 등), ③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그 역할을 북에 인식시키는 여성의식 증진문제 등.

(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

남북한간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의 공고화와 더불어 통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조치)들과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표 Ⅳ-4> 실질적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 및 이유

요구되는 노력(조치)	이유
- 양 사회간 각 분야별, 지역별, 단체별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남북한 당국이 이를 정책화. - 정부차원의 남북통합 과정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론하고 그러한 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기구(국회의 공적기구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 허용)의 창설과 더불어 통합과정을 검증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니터링체제의 수립, - 남한 경협의 북한침투와 북한의 인력을 사는 조치 - 법제도의 정착과 정책적 배려, 시민단체의 노력(각종 운동 및 활동) -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남북한의 기존법과 정책이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조치	-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딪치는 과정을 통할 때라야 가능해짐 - 정부 주도의 통일과정은 시민사회와 유리된 기득권층 중심 혹은 특정 정파·계급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국민과 민족성원을 감동시키는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남한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 먼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불평등한 남북관계는 통일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관련 영역

남북한의 사회상황을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크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어, 교육, 가치체계와 의식구조면에서 비교되고 있고 동질적인 부문은 단일민족성, 전통문화의 교류, 유교적 규범과 미풍양속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는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

이 제 분야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이질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여성과 관련하여 행정구조와 정치참여, 관련법, 교육, 가족과 노동, 복지(보육)와 건강, 여성단체, 생활문화 측면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남북간 구체적인 이질적인 모습과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동질성이 있다면 남북한 모두 지켜야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과 여성관련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가) 남북한 이질적인 측면과 극복방법(방안)

□ 법 분야

<표 Ⅳ-5> 법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법철학, 법 마인드(legal mind), 법 앞에서의 평등권과 의무의 차이 (사회주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법) - 가족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 체제유지 관련 법령과 소유제도 관련 법령 - 여성관련 법 체제.
극복방법(방안)	- 통합 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국민들의 의사반영 - 시민교육, 법질서 현장을 통한 재교육(사례를 통한 교육) - 상대방 체제 부인 및 상대방 지역 주민과의 교류저해 법령 정비(자유민주주의의 인정을 통한 상극적인 이념의 대결 완화) 소유제의 다양화 - 통합헌법 및 여성관련법 제정.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의 사회복지비로의 전용운동등이 필수적임

□ 행정분야

<표 Ⅳ-6> 행정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행정체계 (조직, 인사, 재정, 정책, 행정문화 등)전반 : 북한의 권위주위적 (유일영도체제)와 남한의 다원주의적 구조 (예: 직업공무원제 보장과 능력있는 인사중심의 기용 vs. 노동당에 의한 내각의 지배와 당 충성도에 따른 기용) - 남한은 여성부가 있으나, 북한은 독립된 여성정책기구 없음.
극복방법 (방안)	-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 행정체제의 단일화 및 여성인력의 할당제 등 제도적 방안도입 - 행정구조는 권력유지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복무중심구조임을 북에 인식시켜야 함 - 능력 위주의 인사와 책임행정 보장, 하위단위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제도의 폭넓은 도입 - 통일 여성부설치

□ 정치참여 분야

<표 Ⅳ-7> 정치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북측의 동원적 정치참여, 시민운동의 결여, 남한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담 (정치문화, 시민의식, 이에올로기 등) - 남한에서는 정치참여가 90년대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율 자체는 높음.
극복방법 (방안)	- 민주시민의식의 고양과 시민운동의 활성화 - 남한 여성의 사회조직생활의 기회 증진 및 북한여성의 자율적이고도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 제도화 (정치현장학습,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정치참여확대 - 남북 정당간의 교류 확대 및 당내 민주주의 실현 (민주선거제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확보) -여성할당제 도입 및 장관급 확대

□ 생활문화 분야

<표 Ⅳ-8> 생활문화 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양 체제의 의식주생활 (국가의 배급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대 물질주의적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 경제적 기술적 차이 (상품화의 지배 여부 등) - 개인주의 생활 vs. 조직생활(인민반제도, 사상검열, 생활총화의 일반화) -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바쁜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문화생활은 별개의 문제. - 다원화(남한), 전통적문화(북한)
극복방법(방안)	- 이질적 생활문화를 가져오게 된 체제차이 등에 대한 이해교육, 다름에 대한 관용 - 기금활용,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지원 - 남북의 생활문화 속에서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음. 현재 많은 생활문화가 상품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 서비스, 국가 서비스로 바꿈. 예를 들어 집합주택운동을 벌린다면 개인화,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주의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집합주의를 공존시킴으로 생활문화에서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고 북한의 집단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북한도 역으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와 상극이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가족 분야

<표 Ⅳ-9> 가족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가족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 - 가족이기주의의 정도 - 가족구조·기능 및 가족문화에 있어서의 차이 [예: 가부장적 문화 vs. 가정에서의 여성의 입지 및 역할 강화·확대/ 대가족주의 vs. 핵가족화/ 가사분담의 미분화 등] - 자녀의 교육관 - 구세대의 사회주의 어머니상과 현모양처형 어머니상
극복방법 (방안)	- 상호보완 및 전통유지노력 (법적 의식적 개혁 노력) - 동등한 부부관계 정립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여성의 지위 존중 및 역할 확대 - 가족기능의 사회화 - 가정내 인성교육 - 가부장적 여성상의 극복 및 양성평등적 가족관

□ 교육 분야

<표 Ⅳ-10> 교육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교육철학의 차이. 북한은 획일적인 정치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남한은 인간개발에 중심. - 남한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불균형성이 심각함 - 교육내용의 이질성(사회주의이념 교육 및 김일성부자 우상화 교육, 역사왜곡. 여성관에 대한 수동적 역할상 등)과 교육수준의 문제
극복 방법 (방안)	- 제도적 보완책 마련, 점진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교육문제 해결은 교육 내적인 문제, 계급간, 지역간 차별 해소와 교육 질의 제고 과제가 있고 외적으로는 취업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교육문제 해결에도 정책적 수준에서는 예산 확보의 문제와 직결, 결국 분단구조 비용인 국방비의 교육비 전용 910902 과제가 시급함 - 이념교육의 비중 축소, 교사의 질 제고(교사의 재교육 방안) - 공교육의 강화 및 의무교육기관 확대, 여성기관장(교장, 교감) 및 전문직 확대 - 교육관계자, 학부모, 학생들 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토론과 의견을 모아 남북한 교육 제도적 통합

□ 노동 분야

<표 Ⅳ-11> 노동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노동관 (사회주의적/자본주의적) - 여성노동인력 활용의 인식차이 (참여율, 비정규직 여여성분포, 직업분포 등) - 치열한 경쟁제도, 능력급제 인정 vs 능력 여부에 관계 없는 인사
극복방법 (방안)	- 노동가치에 대한 교육. 인간주의적 노동 - 여성지위향상 및 인식에 대한 재교육 - 여성의 고용 확충과 여성 노동력 평가를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보전 -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도 도입 - 여성자신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일자리 창조 및 보육시스템 확대

□ 복지 (보육) 분야

<표 Ⅳ-12> 복지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사회주의적 복지정책과 자유주의 (시장주의) 복지정책의 차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vs. 형식적·허구적인 무상치료제, 실업보험제도 vs. 형식적인 완전고용, - 보육정책의 형태와 양과 질의 차이. 보육의 책임소재 (사설 탁아소 운영 vs. 탁아소의 국가운영제 및 국가주도의 정치사회화, 보육교사의 질적 차이-북한은 수준이 비슷한 반면, 남한은 개인차, 학교차이가 커서 아동에게 영향을 줌)
극복방법 (방안)	- 상호장점을 융합하고 보완 - 직장과 거주지, 또는 직장과 보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보육비용의 분담.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 국가에 의한 의료제도의 보장 확대, 실업보험제도 확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근로인력의 사회진출 뒷받침, 여성복지의 확대 (여성건강권 및 분만 등 건강보험에서 처리, 연금권 확대) - 보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 강화

□ 건강 분야

<표 Ⅳ-13> 건강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영양상태 - 건강정보와 활용성 - 의료시설 및 질병의 차이 (과다한 투약의 관행 일반화 vs. 절대적인 의료시설 및 의약품의 부족현상, 비만 등 선진국병 vs. 페라그라병 등 영양실조와 후진국 병, 사회체육 시설의 확충 vs. 전투적인 성격의 체육 등) - 여성건강에 대한 의식
극복방법 (방안)	-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의 배려 -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관심 확대 (예: 여성보건을 의료보장체계에서 비중을 높임)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약품 지원, 식량지원, 민족통일 기반조성의 체육교류 추진(남북간 다양한 체육교류를 통한 즐기는 문화, 민족동질성 회복·발전) - 북한여성의 건강권 강화 및 질적 향상하는 방향의 정책강화

□ 여성단체 분야

<표 Ⅳ-14> 여성단체 분야의 이질적 측면과 극복방안

이질성의 측면	- 정치성향의 차이 (여성단체가입여부 및 활동이 남한에서는 개별적 관심에 따른 자율적 체계, 북한에서는 자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의무사항). 즉 자발적인 여성단체 조직 vs. 당외곽의 전위적 여성조직 - 조직체계의 차이 (다원화된 시스템 vs 통합된 시스템)
극복방법 (방안)	- 정치성향배제를 위한 노력 (시민교육 활성화),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 국가의 여성단체 통제 금지 및 완화, 여성의 자발적인 결사체 인정 확대 - 다원화된 시스템으로 전환 - 시민운동의 활성화

(나) 동질성의 지켜야할 부분과 버려야할 측면

남북한이 갖고있는 동질적인 부분에서 지켜야할 부분과 동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남북이 함께 버려야할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Ⅳ-15> 동질성의 지키거나 버려야 할 측면

지켜야할 부분	- 조국애 - 가족(정)의 중요성 - 따뜻한 인정, 협동정신, 공동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정신 - 전통적인 생활문화, 의식주문화.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그 속에서 현대적으로 바꿀 부분도 많음 (예를 들어 아파트문화는 남북모두의 추세인데, 온돌주거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벽안시할 수는 없음. 따라서 온돌문화의 본질을 살린 아파트(집합주거양식)문화 형식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음) - 유교적 덕목. 즉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공경, 효의 문화 - 전통적 민족의 풍습 및 문화 - 단아하고 우아한 여성의 기상 - 학구열
버려야할 부분	-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사고 - 역기능적 유교적 관습(가부장적 권위주의, 남존여비 등) - 맹목적·감정적 애국주의(반외세 중심의 폐쇄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 종파적 성향 및 분열주의 - 나(우리)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 행동, 公과 私의 혼동 - 버려야할 동질성도 상당히 많지만 단순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가부장제가 싫다고 남북에서 서구적인 대안가족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며 같은 개념일지라도 차이가 있는 요소도 주목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개념에도 공통성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임.

(다) 여성관련과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이 이미 실현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단계에서 많은 여성정책과제가 논의되고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연합단계에서 추진되어야할 여성정책과제들로 통일의식함양교육,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여성평화운동활성화, 그리고 여성의 통일역할증진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남북한 공동실시가능 과제와 그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여성들의 통일의식함양 교육과제

질문지에 제안된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과제들: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 탈피와 남한 및 북한 중심적 사고방식 제거/ 이질성 인정 및 상호포용의 자세 확립/ 여성의 통일주체의식 강화 및 평등의식 함양/ 남북한 여성의 생활중심 및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 이해/ 통일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정체성과 지도력 확립/ 여성간 통일연대 형성과 통일을 향한 사회변화 추진노력/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이루는 방법모색/ 북한여성들에게 남한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 남북한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방향 인식 등)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표 Ⅳ-16> 통일의식 함양 교육과제

공동실시 과제	- 왜곡된 통일의식의 개선 - 왜 통일을 바라는가, 상대 사회에 대한 이해, 통일환경과 조건, 통일을 위한 실천적 준비를 주제로 한 교육 - 여성의 통일주체의식 강화 및 평등의식 함양 - 여성의 통일의식 조사(여론조사, 델파이기법 등 다양한 방법 동원, 건전한 민족공동체 형성과 어머니의 역할, 모성애의 발현방식 연구, 평화지향적 통일문화 창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활용방안 연구 등) - 북한 사회에 대한 선입견 탈피와 남한 및 북한 중심적 사고방식 제거 - 통일의식함양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통일이 무엇이며, 통일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성도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즉 분단을 통해 여성이 부당하게 대접받은 것을 자각하도록 하고, 통일을 통하여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물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임. - 가정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
구체적 추진방법	- 민주시민교육 - 일방적 주입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 쌍방향 교육방식, 상대지역 주민(분야별, 세대별 등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초청하여 대화, 관심있는 상대지역 답사 - 공동여론조사(표본조사), 공동연구 및 발표, 집체교육, 각종 세미나 등 - 가정간 자매결연, 자녀교육토론회(정보교류)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들로서 북한여성 및 북한체제 이해증진 활성화, 북한여성문제 및 북한을 이해하는 소규모 이야기모임 구성과 활성화, 북한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실증연구 확대, 여성관련 영역의 구체적 사안 공동논의, 대북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남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실시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7> 남북한 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

공동실시 과제	- 북한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 연구 - 남북사회에서 공통된 여성관련 영역 및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 - 북한여성 및 북한체제 이해증진 활성화 - 향후 여성정책 추진과제 - 가정에서의 여성역할의 중요성
구체적 추진방법	- 북한의 각종 여성단체들과의 접촉창구 늘이기 - 올림픽, 월드컵, 장애자 올림픽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력풀제 도입)이 실질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이러한 방법은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공동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음 - 가정간 자매결연, 자녀교육 토론의 장 마련 - 공동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인적교류와 학문적 경험 공유, 공동연구소 설립 및 상주 연구원 파견·교환, 공동 인터텟 홈페이지 개설(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제도 활용), 여성지도자들의 직접 왕래와 간담회 개최 등 상대측 여성들과의 대화·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등등 - 가장 가까운 것부터로 언어와 풍습에서 시작 - 남북한 공통의 문화상품개발 및 국제화 - 남북 여성교류 협력기구 설치

□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환경 구축, 남

북한 정부에 대해 군대 및 무력감축을 위한 캠페인 확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한여성 평화포럼개최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남북한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이 모색되었다.

<표 Ⅳ-18> 여성평화운동 활성화 과제

공동실시 과제	- 여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환경 구축 - 남북한 정부에 대해 군대 및 무력감축 캠페인 확대 - 여성중심 평화환경구축, 군대 및 무력감축을 위한 캠페인 - 체육(구기운동)등을 통한 친목단체, 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 북한의 여성단체의 독자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
구체적 추진방법	- 정치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당위론이 아닌, 사회적 측면 특히 개인의 생활과 직결(통일과 나의 관계, 통일과 내 자녀의 관계, 통일비용에 대한 이해, 통일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사례 등) 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포럼 개최. - 이 문제가 그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북 여성의 삶,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 청년들의 삶에 치명적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공감을 받고 여성주류화에 이루도록 함 -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선언 채택, 남북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및 각각의 정부기관에 공동방문, 간담회 실시, 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 등을 통한 평화운동 및 관련 여론 확산 등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기구 설치후 회의 등 모임을 정례화 - 체육분야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남북여성 응원단 구성

□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들로 통일과정에 여성참여확대, 통일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웍 구축, 남북여성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여성들간의 정치세력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남한과 북한이 각각 노력해야할 부분이 더 많으며 여성들간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통일문제에서만이 아닌 민감한 과제임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여성들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제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다.

<표 Ⅳ-19>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

공동실시 과제	- 남북한 지역을 상호방문하여 사회봉사활동 - 비정치, 비군사적 영역(아동, 장애자, 노인, 병동 등 특히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영역) 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감 - 정기적 공동모임의 제도화 (남북여성통일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함. 각각에서 여성의 통일 역할을 증진시키고 또 한데 모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또 다시 과제를 제시하면서 남북 여성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힐수 있도록 해야 함) - 북한의 여성인권의식 함양시키는 노력
구체적 추진방법	- 상호여성단체의 고아원 등 사회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 남북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정기적인 모임이나 단체 결성 및 네트웍 구축, 정치적 활동 전개 추진 등

(3)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제도화 방안

지금까지의 제시된 주요정책과제의 특징은 성 관점(gender-based)의 통일정책과제이며 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데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정책 과제들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일곱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았는데 각각의 주제 및 각 주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 각 주제에 대한 견해와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 남북한여성의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홍보실시

<표 Ⅳ-20> 각 주제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조치

견해	- 중요함 - 여성의 이질감은 여성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회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더 많아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적극적 평화교육과 폭력에 대한 이해교육, 일상생활에서 평화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필요
구체적인 조치	- 학교교육, 종교단체, 언론의 기획물,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 단, 종교인, 언론인 및 교육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수준에서 이질감 극복을 목표하려면 우선 상호이해가 중요함. 우선은 상호 장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제도적 장점과 남한의 여성운동의 발전과 여성운동으로 진보적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에 대해 서로 이해해야하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서로의 장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남북 여성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실시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음. - 남북 통일교육전 설치 및 교육확대 - 여성통일교육기관의 상설화

□ 북한여성 바로 알기 운동 활성화와 통일문화운동의 전개

<표 Ⅳ-21> 북한여성 바로 알기 및 통일문화운동의 전개

견해	- 기존에 형성된 이해수준과 북한의 현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 -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가장 가깝고 평범한 일상생활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임
구체적인 조치	- 남한여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 자민족중심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담은 문화운동을 전개 - 일방적 강의보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 이와 병행하여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 - 남한여성들이 준비해야 할 통일문화운동은 북한여성을 바로 아는 측면과 함께 남한여성 자신의 다양한 처지와 조건도 동시에 이해해야 상호 주체를 세울 수 있고 통일되는 길에도 여성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함.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하려면 앞의 교육문제와 결합하여 여성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재사회화를 받을 수 있는 단체참여 활동이 필수적임. 단체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별로 통일문화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함. - 북한에 남한 여성 많이 보내기 운동전개 - 대중적인 매체 즉 북한영화나 소설 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알수 있도록 영화나 소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통일국가 대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구축

<표 Ⅳ-22> 통일국가 대비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견해	- 바람직함. 그러나 별도의 특별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선진화 된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충분할 것임 - 성주류화 정책의 기조는 새로운 국가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게 하는데 있어야 함 - 우선적으로 정책입안, 형성과정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인 조치	-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성정책을 발전 강화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모색해야 할 것임 - 성주류화를 실천하려면 우선 통일국가준비 기구부터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해야 함. 또한 정부 형태는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의 참여도 할당제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간의 견해 구축하여 정보교환 - 여성할당제가 필수적 - 통일여성부 신설 및 여성정책방향 설정

□ 남북한 사회 공통의 여성의제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표 Ⅳ-23> 남북한 공통여성의제 발굴 및 추진

견해	- 통일이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및 장기적으로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항임 - 성주류화를 실현하려면 여성 지도자 발굴과 함께 여성 민중의 의식 제고가 같이 가야 할 것임.
구체적인 조치	-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면서도 남북한 사회 공히 유교적 사고가 지배, 여성인력 및 여성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 특히 통일국가의 번영을 위해 후세대의 생산과 양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안고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예산의 일부를 별도 확보하는 것은 그 명분이 충분함. 이를 위해 여성계는 물론 범사회적 여론조성을 통해 추진 - 예산은 큰 틀에서는 분단비용의 통일비용으로의 전용이고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 국방비, 정보비, 외교부문비용 등 각 분야 분단유지비용에서 단계적으로 평화비용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비용으로 보전해야 함 - 여성전담통일기관의 제도화

□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표 Ⅳ-24> 남북통합과정에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견해	- 별도 영역에서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의 여성계에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대북정책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정치란 특정한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그 속에 여성주류화가 있음을 인식시켜야함. 결국 통일국가가 성차별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도록 하려면 성주류화 의제와 여성의 정치 참여가 동시에 가야 할 것임 - 광범위하게 조직해야할 것임
구체적인 조치	- 정부나 국회,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관련 여성단체들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감 - 중단기적으로는 여성의 할당제 정치 참여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50:50이 되어야 할 것임. 통일국가기구에서 여성 할당제 방안을 실시하되 현실적인 고려와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추진해나가야 함.

□ 여성의 통일역량 증진과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제도적 보완

<표 Ⅳ-25> 여성의 통일역량증진 및 세력화 방안

견해	- '통일역량 증진' '세력화'를 특별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통일역량을 증진시키는 게 되고, 나아가 우리사회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작용할 것임 - 여성부나 여성전담부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에 여성이 골고루 참여해야 모든 사회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음 - 별도의 역량증진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기존에 해오던 제반 활동들의 내적 충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조치	- 통일과정에 여성참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사업강화 - 단계적으로는 통일기구에 여성 전담부서를 만들어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겠지만, 통일기구에는 남북 여성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모든 기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나간다. - 각종 남북교류협력기구에 여성일정비율 포함 제도화 - 여성전담 통일교육기관 제도화

□ 제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구축

<표 Ⅳ-26> 제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 구축

견해	- 제3국 여성은 재중동포나 재일동포 등 우리 민족의 범주가 바람직함. 북한여성들이 남한여성들과 관계를 구축하는데 역할할 수 있는데는 특히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생활을 하였고, 북한보다 앞서 개방사회를 경험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역할이 주효할 것임 - 의제에 따라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미국이나 특정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려 할 때 남북 여성만이 아니라 해당국이나 국제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연대 활동을 벌리고, 한반도 위기때에도 연대망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할수 있도록 함 - 남북한여성들간의 교류협력사업에 가능한 한 이들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남북여성 교류발전뿐만 아니라 민족역량 확대에도 기여케 함
구체적인 조치	-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제 GO, NGO의 여성 네트워크에 남북여성단체나 통일기구의 여성기구가 같이 참가 - 주변국들과 서로선진여성단체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적극 활용 - 유엔 및 국제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활성화 전략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방향, 법적 근거, 행정적 조치 그리고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표 Ⅳ-27>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활성화 전략

기본방향	- 국가적인 조치와 민간차원 중립의 여성정책 - 남북여성문제에 균형적 시각 - 북한의 여성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제고 - 양성평등의 실현
법적 근거	- 관련법 제정
추진 전략	- 통일여성부의 신설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가족법 등 법적 불평등개선 - 여성우호적,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행정조치 실시

나.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은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문난영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송경민 우리민족돕기운동 여성위원회 부장, 전숙희 교육복지연구원 통일공동체지원센터 원장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헌법 제정위원회에의 여성 30% 할당: 통합헌법 제정 시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헌법 제정위원회에 여성이 30% 할당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확실한 북한측의 태도변화 가능성 고려: 북한여성들은 남한여성들과 교류할 때 시종일관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하는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 공통된 여성의제 설정의 어려움: 북한은 문화적으로 남한보다 가부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이 여성학적 관점을 갖도록 하고, 자기의지로 여성의제를 설정하여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여성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들과 함께 공통주제 및 새로운 여성의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서히 동질화시킬 때의 문제 : 남북한 상호간에 이질적인 부분을 동질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특성을 인정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질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의 경우, 끊임없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문 중에서도 생활문화, 자녀교육 등에서는 동질화 작업을 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식, 가치관 등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동질화시켜나가야 하느냐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국제기구 또는 타 국가와의 연대방안 : 남북한간의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 제3국의 여성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여성문제의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재자 또는 공통주제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여성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간의 대화소통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질성 극복의 어려움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와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기구 또는 타 국가와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함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 연구 및 교류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질성의 극복은 국가마다 다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간동안 남북한이 함께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 여성교육기회 확대: 남북한 여성들의 교육기회는 남성과 비교하여 저조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기회도 다양화되어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지도자를 위한 리더쉽 향상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 노동인식 및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하고 기술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적극적인 여성인권보호: 북한의 경제개방 과정에서의 여성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성폭력, 윤락여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하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의료상담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여성과 아동들의 건강상태는 빈곤으로 인해 낮은 수준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양성, 지속적인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예술문화 부문의 과제 개발 필요: 예술문화 부문의 과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문화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문화 부문은 남북한 공히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문화소비 성향은 높으나, 문화창조를 위한 역할은 그다지 높지 못하여 전문여성예술인의

양성이 시급하다.

○ 갈등중재교육 실시 등을 통한 평화 도모: 남북한은 상호 공존하기 위해 화해협력, 상호 이해, 동질성회복 등 다 차원의 해결을 위한 접근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중재교육이다. 시민교육 및 여성교육을 통해 남북한 상호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들 모두가 평화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폭력, 전쟁, 갈등 등의 문제상황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도한다.

V. 실질적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강화방안

지금까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성 관점, 남북통합의 사적 발전배경과 여성참여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여성관련 분야의 분석 및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관련 영역에서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워크숍의 결과를 통해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추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

1. 기본 방향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성 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수립과 집행, 통일교육강화,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 평화운동의 강화와 확대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경험이 있는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의 여성그룹들과의 연구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 성 인지적 관점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실질적 통합으로 이끄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 사회가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의제의 발굴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작업의 착수 및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여성들의 역량을 최대한 증진시키도록 한다.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강조한다. 북한지역 여성 및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북한여성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질감 극복 및

남북지역간 교류협력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해나가도록 한다.

(3)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한다. 남북한지역 여성간의 직·간접적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남북한 지역의 여성간 및 지역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을 펼칠수 있도록 한다.

(4) 북한지역 내에 자율적인 여성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일정한 기간까지 제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성 관점(gender-based)의 정책을 이슈로 북한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남북한지역에서의 전국 또는 지역에 맞는 여성문제해결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5) 남북통합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강화하며 하며 통일문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21세기의 발전, 안보와 평화 수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평등과 인간안보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폭력을 배제하고,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이 평화수립과 정책결정의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2.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가. 남한의 여성정책역량강화의 필요성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남한이 준비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하는 여성정책의 구축이며, 이를 통한 남한의 여성정책역량이 북한의 여성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거와 같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근거한 경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건전한 근로윤리,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타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제반 능력이 총체적으로 합하여지는 국가경쟁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여건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요구되며, 이는 또한 여성들에게 평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정책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선진국들은 평등한 권리로부터 평등한 지위 내지 평등한 권력과 영향력으로, 그리고 책임과 권력의 분담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남녀가 권력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세기적 변화속에서 남, 북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요구하는 여성정책의 글로벌스탠다드로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정책관련법과 행정조직의 발전은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역량으로 남북의 실질적 통합을 증진해 가야한다고 본다.

세계화는 정책학적으로 정책문제의 글로벌화, 정책결정기구의 기능변화, 국제규범의 정책적 역할강화와 글로벌스탠다드의 확산 등을 가져오며 이는 정책결정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이미 1970년대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여성대회와 그 행동강령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규범에 의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가입 이후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가족법과 국적법의 개정 및, 기타 법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법의 개정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성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포함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그리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여성사회복지확대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공무원법에서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정당법에서의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의 비례대표의원후보자 추천에서 30%여성할당제 도

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의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입법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여성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의 과정과 효과를 보면 많은 경우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 실제로 그러한 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불평등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의 규제력과 이행력은 매우 취약했다고 본다. 차별을 폐지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들은 그 법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를 위한 법적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전체의 다른 제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제정 과정보다 제정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여성의 영향력과 권한이 더 강하게 필요한데 여성들이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서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성정책은 우선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여성정책에 관한 입법들이 제대로 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성정책적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나. 역량강화전략

(1) 국가정책의 목표로서의 여성정책의 주류화

1995년 북경여성대회이후 유엔여성정책에서 강조되고 있고, 유럽연합, OECD등에서도 여성정책의 주요한 변화로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주류화는 각종 정책 분석 및 권고에 있어 성별의 고려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고, 공공 및 민간부문을 망라한 모든 분야의 정책 결정영역에서 성평등을 이룩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있다. 특히 대상으로 여성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며, 사회 전구성원이 사회통합, 경쟁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도 공식적으로는 1998년부터 여성정책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정책의 주류화의 당위성은 여성문제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된다. 여성문제는 경제개발, 인권, 정치적 상황, 문화 등과 깊이 관련되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특정 영역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 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다음의 3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① 여성의 주류화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③ 주류의 전환으로 행정조직의 성별 구성이 바뀌고,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며,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과 연결된다.

이러한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과정은 흔히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부처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외의 정책들은 성 중립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부처에서 성차별의 문제가 없고,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개입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각 부처가 여성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데, 흔히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기타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개별사업 등 국가의 정책은 성 중립적인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정책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삶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들은 그 정책의 효과가 성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있어 사전에 그 정책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분석을 거침으로서 정책의 성 불평등 효과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있어 사전에 그 정책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성정

책을 주류화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을 갖추는 것이 여성정책주류화의 대 전제이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의 주류적인 조직에 위치해야 하고, 비정부기구 및 지역 사회단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분권화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제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가져야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남성중심의 관료행정제도 안에는 기존의 가부장적 제도, 절차, 규정, 사고 그리고 행위유형이 깊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환경 속에서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조직은 현재의 남성중심적 기준과 판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국가차원에서 또 지방자치차원에서 다양하게 설치되는 양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이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제는 이들 조직들이 헌법상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관련법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 헌법상의 평등권명령을 구체화한 여성입법의 이행주체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의 제도화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기타 여성의 기본권규정의 구체화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구체화법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극적으로는 차별의 금지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여성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예산지원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정책적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면 여성정책은 보다 안정적이고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의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11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여성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제8조). 이를 위해 여성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제15조),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제16조), 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조치(제17조), 모성보호의 강화(제18조), 남녀평등한 가정교육(제19조), 남녀평등이념고취 및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제20조), 여성복지증진(제22조),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제23조), 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책(제24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제25조),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제26조), 여성국제협력 강화 및 지원(제27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제28조)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제4장), 여성단체지원(제32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33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4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13)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부를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정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여성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때, 즉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을 통해서 평등, 참여, 복지라는 여성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한다고 했을 때, 여성정책의 주류화 전략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과정은 여성발전기본법하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조직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에 달려 있다. 현재 중앙의 행정기관에는 여성정책을 수행할 조직으로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제도와 여성관련업무 지정부서 제도가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상의 여성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의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 구제를 통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제3조),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제7조). 특히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등 의 공공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114]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적 과제이

자 여성정책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적 과제 이외에도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여성정책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정책에서의 성차별 여부를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시적인 차별 뿐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와 권한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해있는 부서를 넘어서서 일반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은 그 과제가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즉 여성정책은 일반 다른 정책과 달리 경제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 등 타 정책과의 연결성이 깊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 모두 관련되는 다면성을 갖는 프리즘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무엇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한 공적인 인식에서부터 이를 위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화와 교육을 통한 전통적 사고와 편견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모순의 제거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이러한 여성정책 과제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제안하고 실행, 유도, 감독,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부,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조직들의 인력과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

---

11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개혁과 공직의 성균형(Gender Balance)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성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이 부재하는 경우, 이는 행정인력의 불완전한 활용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불충분한 활용은 행정인력의 총체적인 활용부족으로 이어져 여성공무원 개인만이 아닌 행정조직 전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직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정책의 과제이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국가가 중립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의 구조적 특징상 여성의 차별과 직업적 열등을 영속화하거나 장기간 지속케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시적인 여성우대조치로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승진목표제와 같은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한 나라의 관료제가 그 나라의 인구구성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로서의 의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비공식적, 결과적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소외집단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예를 보면 외국의 경우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rogram)를 196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 유럽국가에서 채택·운영하고 있다.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실적주의가 미국내 흑인여성, 소수인종을 포함하는 미국 내 소외집단에 대해 공직임용차별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social equality 관점에서 1940년대부터 공직임용상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1972년 민간까지 고용기회균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행위를 금지시켰다.[115]

국가미래발전의 실현도구인 공무원에 관한 인사정책을 정부 개혁의 토대로써 인식하고 공무원 인사개혁에서 특히 양성평등이 불충분한 점에 주

11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p. 137.

목하여, 여성공무원의 공직사회에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야한다.

(4) 적극적 조치의 적극적 개발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온 많은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해 여성이 받고있는 현재의 불이익이 조정되는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남녀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다양한 할당제를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할당제실시의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5년 지방의회선거를 다시 치루면서 보다 본격적인 할당제에 대한 요구활동이 전개되었고, 광역지방의회의원 중 10% 비례대표의석에 대한 여성할당을 각 정당별로 55%-25%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1995년 정부의 세계화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수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분석되면서 한국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국제수준에 뒤지고 있는가가 인식되게 되었고, 세계화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하여 점진적 목표할당제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채택하여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2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 법은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할당제 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여성정책으로서 사회 각 부분의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헌법상의 평등권명령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행정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모든 행정의 의무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 법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촉진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과제가 되었다.

이미 1989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율을 2000년까지 15%로 의결한 바 있으며, 최근 목표율을 수정하여 1998년 20%, 1999년 23%, 2000년 25%, 2001년 28%, 2002년 30%를 목표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여성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2000년과 2002년 정당법의 개정에서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국회의원 및 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의 30%-5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되었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되었다. 전체의석수 중에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그 중의 30%-50%의 의미는 미미하지만 이 규정에 포함된 여성정책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유엔은 세계 각 국에 정치,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30%는 되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할당제의 실시를 권고해 왔다. 이 30%는 Critical Mass(임계질량)를 의미하는데, 어느 조직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임계질량이 형성될 때까지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여 줄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평등한 참여를 이루어 낼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와도 관련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책을 계획, 이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남성적 관심과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적 관심과 경험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

치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한다.

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위의 기본방향에 따라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한다.

(1) 성인지적 통일정책을 위한 조치

남북연합헌장 등 연합단계의 모든 관련 문건에서 성인지적 통일정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구체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통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여성의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

(가)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남북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 통일관련 모든 회의와 조직에 여성을 30%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모든 관련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한다.

(나) 통일헌법제정준비과정과 관련조직에 여성의 30%이상 참여를 관련법령에 규정한다.

(다) 통일후의 여성관련법통합연구회를 설치한다 :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여성관련 법에 대한 연구를 치밀하게 하여 통일후의 통합된 법체계에서의 여성관련법을 준비해야한다. 이를 위한 연구회가 국회 여성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한다.

(2)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의 강화조치:

남한 여성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을 강화하여야한다.

(가) 모든 국가조직에 여성정책책임관(GEO)을 설치한다 : 남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을 책임질 행정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간의 연대를 활성화한다.

(나) 국가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의식, 현황, 여성문제 등의 대규모 조사연구와 그에 대한 정책적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이 기능은 현재의 한국여성개발원이 담당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여성문제연구, 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을 그 지역에 맞게 실시하면서, 특히 지역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내지 결연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생활문화 속에서의 주민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3) 여성민주정치/평화교육을 위한 조치:

오랜 세월의 분단은 군사블럭, 경제제도, 이데롤로기 뿐만 아니라 생활감정까지도 갈라놓았으므로 이러한 생활감정의 간격은 남, 북 양쪽의 사람들 머리속의 편견과 몰이해를 극복해야만 좁혀질 수 있다. 따라서 남, 북한 두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민주교육,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은 1989년이후 동, 서독 두사회의 재결합을 위한 정치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왔는데, 이 교육의 제일 목표는 서로 귀기울이고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수십년간 쌓인 정보 및 의사소통장애를 인간적 접촉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하는것 이라고 한다. 민주적 사고와 행동, 평화적 사고와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이 그 어느 시기보다 요청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성실히 체계적으로 수행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담당자의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4) 교류협력과 여성평화운동을 위한 NGO 지원조치

오랜 세월의 분단에 의해서 다르게 조건 지워진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한 남, 북한 사람들의 심성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북한 사람들은 종전의 획일주의를 청산하고 지구화 시대의 다원주의를 이해하고 훈련해야 하며, 남한사람들은 세계화시대의 민주적 문화를 통일시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통일의 과제와 함께 극복해야하는 남, 북한은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이해와 신뢰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관 주도이기보다는 민간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웍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민간단체활동의 경험이 없으므로 여성문제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운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동의 작업과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및 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합의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에 대하여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테레비젼 등 다각적인 분야에 교류협력을 포함하면서도, 여성부문이 명문화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교류를 명문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북한에서의 여성연구와 여성학의 활성화지원조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등 대학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북한대학에서의 여성연구를 활성화하고 여성학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연구자교류, 양성 및 공동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북한여성들의 새로운 노동시장에의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지원조치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변화에 그들이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추진과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은 남북한간 제 분야에서의 다원화된 상황을 상정하고 상호 인정하고 이해해나가는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야 및 여건에 따라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맞이하는 길을 여는 단계이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은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분단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바 제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이 뒤따라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영역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이념, 체제, 선거, 입법·사법·행정부, 정당, 여성관련 독립기구 등/ 남북한의 소유제도, 배분원리, 경제원리, 경제정책/ 남북한의 사회특성, 주거, 종교/ 남북한의 어문정책, 맞춤법, 표준

말, 한자여부, 외래어, 두음법칙/ 남북한의 교육이념, 교육정책방향, 학교제도, 의무교육, 대학입학제도, 교원양성, 성인교육기관, 영재교육, 가치체계 등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측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권위주의적, 남한의 다원주의적 구조/남한은 현대적 성역할관, 북한은 사회주의 여성관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과제들은 먼저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잇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체적으로 여성관련 영역들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질성의 부분들이 보다 확대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 실질적 남북통합 이전단계 과제의 지속적 추진

: 남북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시된 과제들의 적극적 추진

(1) 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 통일관련기구 및 위원회 30%이상 여성참여 확보
- 통일 여성부의 설치
- 통합 여성관련법 제정
- 통일여성기금 적립 (여성발전기금)

(2) 통일의식 함양교육의 추진과제

- 민주시민교육실시
- 일방적 주입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 쌍방향 교육방식, 상대지역 주민(분야별, 세대별 등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초청하여 대화, 관심 있는 상대지역 답사
- 공동여론조사(표본조사), 공동연구 및 발표, 집체교육, 각종 세미나 등
- 남북한 여성간 상호 이해교육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

○ 남북한 상호 사회적 여건 및 생활문화영역 이해교육

○ 여성지도력향상교육, 여성직업능력향상교육 및 창업교육, 여성문제 해결교육,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창출교육 등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 자녀교육토론회(정보교류)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3)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추진과제

- 북한의 각종 여성단체들과의 접촉창구 늘이기
- 단체, 조직, 분야별 자매결연 맺기
- 올림픽, 월드컵, 장애인 올림픽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공동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인적교류와 학문적 경험 공유, 공동연구소 설립 및 상주 연구원 파견·교환, 공동 인터텟 홈페이지 개설(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제도 활용), 여성지도자들의 직접 왕래와 간담회 개최 등 상대측 여성들과의 대화·교류 증진
- 남북한 여성의 생활문화 등의 교류협력
- 남북한 공통의 문화상품개발 및 국제화
- 남북 여성교류 협력기구 설치
- 민박교류 활성화
-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4) 여성평화운동활성화 추진과제

- 남북통일이 여성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방지방안 마련

○ 전국규모의 성폭력 상담소 개설 등

- 정치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당위론이 아닌 사회적 측면 특히 개인의 생활과 직결(통일과 나의 관계, 통일과 내 자녀의 관계, 통일비용에 대한 이해, 통일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사례 등)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포럼 개최.
-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선언 채택, 남북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및 각각의 정부기관에 공동방문, 간담회 실시, 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 등을 통한 평화운동 및 관련 여론 확산 등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기구 설치후 회의 등 모임 정례화.
- 체육분야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남북여성 응원단 구성

나. 여성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1) 생활문화 분야
- 남북한의 이질적 생활문화 산출하는 체제 차이 이해교육 실시: 남북한간 상호 다름에 대한 관용
- 여성발전기금 활용, 종교 및 사회단체 지원
- 남북한의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공공 및 국가 서비스로 전환

○ 식생활 부문 : 전국 주부 김치 담기 박람회/ 지방 된장 만들기 경연대회/지방 특유 음식 심포지엄/ 밑반찬 요리 경연/ 수산물 요리 박람회/ 남북 지방산 주류 교류전/ 남북 감자 요리 경연

○ 의생활 부문: 생활한복 또는 조선옷 전람회: 소재, 디자인, 한복 품평회, 패션쇼/ 주부 폐의류 활용 창안대회/ 남북 도-농간 자매 결연, 폐의류 및 생활용품 교류/ 남북 노동자 및 사무직 작업복 전람회 및 패션쇼: 같은 산업계통의 작업복 또는 의복디자인/ 민간 처방의 화장수 교류전: 지방 특색, 지방 재료 중심/ 머리단장 경연 대회

○ 주생활 부문 : 좁은 공간 활용 디자인 경연 대회/ 환경 친화적인 주택 디자인 전시회: 환경과 어울리는 주택, 풍부한 자연소재 주택/ 아름답고 편리하며 저렴한 농촌 주택 디자인 전시회/ 새로운 집합주택 디자인 전시회/ 탁아소·유치원 디자인 전시회/ 노인이 살기 좋은 양로원이나 노인회관 건물 디자인 전시회

(2) 가족 분야
- 남북한간 가족문화의 상호 보완 및 전통유지 노력(법적, 의식적 개혁 노력)
- 동등한 부부관계 정립
- 여성의 지위 존중 및 역할 확대

- 가족기능의 사회화 및 인성교육 실시
- 가부장적 여성상의 극복: 가족문제 상담/신가족 캠페인
- 남북한 여성단체들의 가족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양성평등적 가족관 정립
- 가족의 구조 및 구성원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수립
- 상담소 설치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가족 및 중국동포여성가족과의 정기적 만남과 교류실시

(3) 교육 분야
- 남북한의 여성교육기회 확대 및 남녀평등교육 실시
- 교육제도 보완책 마련
- 남북한간 점진적 개선을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갈등해결 프로그램
- 남북한 지역간 교육 내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계급간, 지역간 차별해소와 교육 질의 제고와 과제/ 취업문제, 예산확보, 통합교육비 등의 과제해결
- 남북한 상호 이념교육의 비중 축소 및 통합이념 개발, 홍보
  (공교육화 시도)
- 여교사의 질적 및 양적 제고(교사 재교육 방안)
- 공교육의 강화 및 의무교육의 확대
- 교직에서의 여성행정직 및 전문직 확대
-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자,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토론과 의견수렴
- 여성평생교육기관 교류협의체 구성
- 여성 리더쉽 훈련 강화
- 남북통합을 위한 범 국민적 이해교육 실시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
- 남북한 지역의 여성·가정교육의 비교 및 실천방안 제시

(4) 노동 분야
- 남북한 여성의 노동가치에 대한 교육, 인본주의적 노동 인식 제고
- 여성지위 향상 및 인식에 대한 재교육
- 여성의 고용확충과 여성노동력 평가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
-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도 도입으로 여성차별 해소
- 여성자신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일자리 창조
- 기술취업 재교육
- 보육시스템 확대
- 여성창업자 지원제도 도입
- 최저임금의 제도화
-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격차를 감안한 사업 전개와 지원
- 북한지역 경제개발 시의 여성·생태주의적 관점 고려

(5) 복지 분야
- 남북한 여성 복지체계의 상호장점 융합
-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보장, 확대를 통한 여성혜택 강구
- 여성대상 실업보험제도 확대
- 여성복지의 확대 : 여성고용불안정의 문제/빈곤여성탈피를 위한 공공부조제도기능강화
- 남북한 여성을 위한 분만 등 건강보험 처리, 연금권 확대
-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여성근로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 남북한 여성들을 위한 직장과 거주지 또는 직장과 보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 남북한 여성을 위한 보육비용의 분담방안 강구
-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 남북한 여성의 건강권 확보
- 북한지역 여성건강의 질적 향상 도모
-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의 배려를 통한 남북한 여성주민의 건강진단 및 유지

-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관심 확대 :의료보장체계에서 여성보건의 비중 높임
- 북한지역에 여성대상 의약품 및 식량 계획

(6) 여성단체 분야
- 여성시민교육 활성화
- 남북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 활성화
- 여성단체의 남북한간 상호 교류 확대: 여성단체의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의 균형
- 각 정부의 여성단체 통제 금지 및 완화: 자율성과 조직성의 조화
- 남북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사체 인정 확대
- 남북한 여성소모임 활동 활성화
- 여성시민운동의 활성화
- 여성학 연구 센터 공동 운영
- 제 외국의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강화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 강화

이상으로 여성관련 영역에서의 정책과제들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성의 많은 측면들이 무엇보다도 극복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이질성의 측면들이 동질화되어야하는가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상호 이질적인 측면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유지되는 것도 또한 통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갖고 있는 동질적인 부분에서도 지켜야 할 부분과 동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남북이 함께 버려야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지켜야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조국애/ 가족의 중요성/ 인정, 협동정신, 공동체정신/ 전통생활문화, 의식주문화(온돌주거문화)/ 전통적 민족의 풍습 및 문화/ 단아하고 우아한 여성의 기상/ 여성의 학구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버려야할 부분으로는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유교적 관습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존여비

등)/ 맹목적·감정적 애국주의 (반 외세중심적 폐쇄적, 편협한 민족주의 (종파적 성향 및 분영주의)/ 배타적 행동/ 공과 사의 혼동/ 가부장제의 극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은 분야별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화방안 강구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 단계별 추진과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과제들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실행주체가 정부 혹은 여성단체가 될 수 있으며 과제의 범위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여성정책들은 2000년 수행했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연구」와 2001년의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추진방안」에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를 실행주체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를 이미 제시하였다. 2002년 현재 수행되고 있는 본 과제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본 것으로 그 남북화해협력단계와 연합단계 선상에서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그 예로 생활문화와 여성단체분야를 제시해 보겠다.

□ 생활문화 분야의 실행주체와 단기·중장기과제

(1) 정부의 역할

기간	추 진 과 제
단기	1) 남북한의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공공 및 국가 서비스로 전환 2) 남북여성 생활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생활문화의 차이와 동질성 조화 방안에 대한 모색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생활문화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여성단체들의 생활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2) 여성비정부의 역할

기간	추 진 과 제
단기	1) 남북한의 이질적 생활문화 산출하는 체제 차이 이해교육 실시: 남북한간 상호 다름에 대한 관용 2) 여성발전기금 활용, 종교 및 사회단체 지원 3) 남북여성 생활문화 교류 및 활성화 프로그램: 남북의 공통적인 생활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 식생활 부문 : 전국 주부 김치 담기 박람회/ 지방 된장 만들기 경연대회/지방 특유 음식 심포지엄/ 밑반찬 요리 경 / 수산물 요리 박람회/ 남북 지방산 주류 교류전/ 남북 감자 요리 경연 ▪ 의생활 부문 : 생활한복 또는 조선옷 전람회: 소재, 디자인, 한복 품평회, 패션쇼/ 주부 폐의류 활용 창안대회/ 남북 도-농간 자매결연, 폐의류 및 생활용품 교류/ 남북 노동자 및 사무직 작업복 전람회 및 패션쇼: 같은 산업계통의 작업복 또는 의복디자인/ 민간 처방의 화장수 교류전: 지방 특색, 지방 재료 중심/ 머리단장 경연 대회 ▪ 주생활 부문 : 좁은 공간 활용 디자인 경연 대회/ 환경 친화적인 주택 디자인 전시회: 환경과 어울리는 주택, 풍부한 자연소재 주택/ 아름답고 편리하며 저렴한 농촌 주택 디자인 전시회/ 새로운 집합 주택 디자인 전시회/ 탁아소·유치원 디자인 전시회/ 노인이 살기 좋은 양로원이나 노인회관 건물 디자인 전시회 4) 남북의 이질적인 생활문화 적응 방안 ▪ 의, 식, 주생활문화에 있어서 남북, 지역적 차이가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남북 교류 ▪ 계층별, 세대별 차이있는 생활문화의 이해와 남북 교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폭력문화, 사치문화 등과 같은 상호 조화를 해치는 문화에 대해 자율적 운동을 통한 화합의 생활문화로 전환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 있어서 여성단체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가치 제고와 생활문화 교류 증진의 주체화 2) 생활문화 교류단계에서 적응단계에서 여성단체들이 주도적 역할 수행, 남한의 여성단체들은 북한의 생활문화를 일반여성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이해를 증진 3) 실질적 통합단계의 통합기구의 예산 지원하에 남북여성 생활문화 증진의 집과 같은 생활관을 설립·운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생활문화 적응과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 방안 모색

□ 여성단체분야의 실행주체와 단기·중장기 과제

(1) 정부의 역할

기간	실 천 과 제
단기	1) 정부와 여성단체와의 의사소통기구 모색과 예산지원 2) 각 정부의 여성단체 활동의 통제모델에서 협조모델로의 전환 ▪ 정부의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정부의 예산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통한 협조체제 도출 ▪ 여성단체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정부와의 유기성 획득 ▪ 정부 중심의 여성문제 연구 활동과 여성단체의 여성문제 연구 활동의 공동연구 과제 모색 3) 남북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사체 인정 확대 4) 정부의 남한내 여성단체들간의 연대와 공조 활동에 협조
중장기	1)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 내에 설립된 여성 기구와 여성단체와의 협의기구 설립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모든 기구 내에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단체와의 협의기구 설립 및 운영 ▪ 노동/실업, 행정, 군축과 여성복지, 여성인권, 정보와 여성기술 등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단체 지원의 예산 책정과 심의 기구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기간	실 천 과 제
단기	1) 여성운동의 활성화 ▪ 여성주류화 관점 수립과 실천 목표--여성적 관점에서 여성, 시민, 민족, 세계인의 상호 유기적 관계 인식과 운동 목표 제시 ▪ 중앙/지역민과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의사소통 체제 구축 ▪ 남남대화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와 의사소통 체제, 연대운동의 전개 - 가부장제 철폐 운동 -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축 -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복지운동 - 여성직능단체간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학술회, 운동, 친목모임 등 2) 여성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유기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남북한 여성소모임 활동 활성화 4) 여성학 연구 센터 공동 운영 ▪ 남북 공조적인 의제 개발 및 실천 방안 모색 - 한반도 평화 정착과 여성의 역할 - 여성의 삶의 질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중장기	1) 여성단체의 남북한간 상호 교류 확대: 여성단체의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계의 균형 ▪ 남북여성대회를 정례화시키되, 부문별 모임을 활성 ▪ 남북의 직능별 여성단체 모임 활성 ▪ 남북의 지역간 여성단체 모임 및 지역간 여성들의 결연 활동 2) 남북여성단체 협의체기구 모색 ▪ 공동의제 개발 ▪ 하위 직능별 여성기구 설립 ▪ 도-농 여성기구 설립 ▪ 국제적인 여성 문제 공동 대책 ▪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통합기구의 모니터역할

4. 프로그램 사례: 교육통합프로그램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그 사례를 예시해보고자 한다. 통합프로그램은 앞에서 논의한 여성정책의 분야별 분석 및 과제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이 중 교육분야에서 남녀평등의식통일의식과 남녀평

등의식교육, 그리고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가. 통일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남북한 지역주민의 통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일의식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의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가치관의 통합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과 교육프로그램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기본계획[116]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골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세우고,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평생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한다.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 이해, 실천토록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일교육방안을 마련하여 남북한 주민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여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16) 통일부(2000), 「통일백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한국지역에서는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교육기관의 2000년 통일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및 기본교재의 발간이 필수적이다. 통일부는 전국의 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해야 한다. 남한지역에서는 1999년에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성과를 반영하고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한 바 있다.

이 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2)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117]

이 외에도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매체를 확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한다. 2000년 통일부에서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 추진은 첫째, 직접교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을 확장, 둘째, 통일교육에 관한 통합 「정보자료지원센터」로서 기능 확충, 셋째, 일선 통일교육요원의 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한 바 있다(통일부, 2000). 특

117) 통일부(2000), 「통일백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히 ①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 교육정보 인프라 조성 ② 통일/북한 관련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 지향 ③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자료 제공 ④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 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통합을 위한 열린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대상의 통일교육기회 확대와 통일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낮은 통일교육 경험 등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북한이해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어린 자녀를 둔 전업주부를 고려하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시간대를 활용한다든지, 취업여성들 대상교육은 밤 시간대를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 시간대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교육대상집단은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여 동창생 집단, 지역모임단위, 어울리는 가족 단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통일교육, 학교 어머니회를 통한 북한이해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118]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연계하는 북한이해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자원봉사단체들은 북한이해교육 참여, TV·라디오 모니터 회원은 TV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지역 관련자료 모으기·발표하기, 학교어머니 교실을 통한 북한이해교육에 “자녀통일교육 소개 및 통일대화 나누기”등 통일교육과 실생활을 연결시킴으로써 통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여성통일교육의 내용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일부, 2001).

118) 함인희·한정자 외, 『여성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여성개발원·통일부, 2000)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인식
○ 객관적인 북한 인식-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 북한주민의 사생활 알기
○ 북한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알기
○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 대북 포용정책 알기
○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성의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여성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주체적 능력제고에 목적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119]

○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남한 중심적 사고방식의 제거, 사회비판적 사고와 여성의식의 함양해야 한다.
○ 상층 지도자급 여성에게는 남성 엘리트층 대상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인식과 민족적 전망에 대한 거대담론적 접근의 통일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다.
○ 일반 여성들에게는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의 미시적 구체적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 여성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모든 사회문적 현상은 남녀가 미묘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남북한 여성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것과 여성의 모성애와 사랑을 통해 남북주민들간에 적대적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평화와 조화, 안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19) 김재인·장혜경·김원홍,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북한지역 주민을 위한 남한이해교육과 남한지역 주민을 위한 북한이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주민의 남한이해교육 프로그램

교육영역	교육내용
세계속의 한반도에서의 여성의 위치	1) 남북관계의 변천과정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이해
	2) 남한주민 바로 알기
	3) 세계 속에서의 남북지역 여성의 위치
분단 60년의 벽허물기의 주역인 여성	4) 남한의 역사 및 여성사
	5) 남한의 여성사
	6) 남북의 지역적 특성 : 동질성과 이질성
북한의 사회적 상황과 여성지위	7) 남한지역의 정치상황과 여성지위
	8) 남한지역의 경제상황과 여성지위
	9) 남한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여성지위
남북한 여성의 생활상	10) 남북한의 여성과 남성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
	11) 남한지역 여성들의 사회활동
	12) 남한지역 여성들의 가정생활
통일한국과 여성발전 전망	13) 남한지역과의 여성통합과 통일한국의 역할
	14) 평화공존을 위한 여성의 노력과 과제
	15)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방안

(나) 남한주민의 북한이해교육 프로그램

교육영역	교육내용
세계 속의 한반도에서의 여성의 위치	1) 남북관계의 변천과정과 한반도 주변정세 이해
	2) 북한주민 바로 알기
	3) 세계 속에서의 남북지역 여성의 위치
분단 60년의 벽 허물기의 주역인 여성	4) 북한의 역사
	5) 북한의 여성사
	6) 남북의 지역적 특성 : 동질성과 이질성
북한의 사회적 상황과 여성지위	7) 북한지역의 정치상황과 여성지위
	8) 북한지역의 경제상황과 여성지위
	9) 북한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여성지위
남북한여성의 생활상	10) 남북한의 여성과 남성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
	11) 북한지역 여성들의 사회활동
	12) 북한지역 여성들의 가정생활
통일한국과 여성발전 전망	13) 북한지역과의 여성통합과 통일한국의 역할
	14) 평화공존을 위한 여성의 노력과 과제
	15)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방안

나. 남녀평등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

(1)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의 틀은 남녀평등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교육내용의 주요영역은 '남녀평등의식 향상 관련 내용',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남녀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 분석 및 평가'로 구성된다.

개발된 교육영역 및 교육내용에 따른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목 종합

영 역	교 과 목 명	시간
남녀평등의식 관련 내용	Ⅰ-1.생활속에서의 남녀평등의식	90분
	Ⅰ-2.비디오 시청	20분
	Ⅰ-3.한국사회에서의 성역할 변화	50분
	Ⅰ-4.공무원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100분
	Ⅰ-5.남성과 여성	50분
	Ⅰ-6.영화감상/역할극	90분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Ⅱ-1.지식경영사회와 공무원	50분
	Ⅱ-2.사회발전과 여성정책	50분
	Ⅱ-3.비디오 시청 및 자유토론	50분
	Ⅱ-4.여성발전전략에 의한 여성정책 분석	90분
	Ⅱ-5.정책에서의 성역할분석 및 실습	90분
	Ⅱ-6.선배 공무원과의 만남/시민의 소리	50분
남녀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분석 및 평가	Ⅲ-1.성인지통계 자료와 활용	50분
	Ⅲ-2.정책분석과 여성정책 평가	50분
	Ⅲ-3.남녀평등정책 수립 실습	100분
만남의 시간	댄스스포츠	120분
기타	* 개강식	30분
	* 교육과정 및 참가자 소개	30분
	* 교육평가, 종합토론 및 수료식	30분

(2) 부모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부모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은 '성역할의 의미,' '사회변화와 성,' '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현황,'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실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시간에 이루어지는 '미래사회와 성역할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전통사회나 근대사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남녀 획일적인 성역할의 개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자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기의식을 고취시킴을 알 수 있다.

위의 교육 내용 중에서 부부 사이의 양성평등문제, 양육의 문제, 가사 역할 분담의 문제 등이 우선되어한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성역할 및 성차별, 여러 양육문제, 가사문제 관련항목 강좌는 4), 5)의 강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표 V-1>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영역 및 내용

교육영역	교육내용
미래사회와 성역할의 변화	1) 성역할의 의미
	2) 생활 속에서의 양성평등의식
	3) 사회변화와 성역할과의 관계
남녀의 성의식과 성차별 이해	4) 성의식과 성정체성의 변화가 주는 의미
	5) 남성과 여성의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
	6)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성차별 사례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7) 가정에서의 성차별의 내용
	8) 가정폭력 방지책과 성교육 사례
	9) 가족간(부부·자녀·형제)의 의식차이 이해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분석 및 평가	10) 부부의 양성평등의식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
	11) 부부와 부모역할 분석 및 평가
	12)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실습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의 과제	13) 양성평등한 부부 및 부모역할의 재평가
	14)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및 과제 도출

<표 Ⅴ-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세부 교육내용

교육영역	교육프로그램명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분)
미래사회와 성역할의변화	1) 성역할의 의미	성, 성차, 성역할/ 사회변화와 남녀역할의 변화	강의	30
	2) 생활 속에서의 양성평등의식	나의 남녀평등의식/ 비디오 시청	강의, 실습, 비디오시청	50
	3) 성역할과 여성정책: 한국 및 유엔에서의 여성정책	사회발전과 여성/ 국내외 여성정책의 변화와 성역할	강의	70
성의식과 성차별	4) 성의식과 성정체성의 변화	성의식/ 성정체성/ 양성평등의식과 자기성찰	강의	50
	5) 가정에서의 성차별	가정에서의 성역할/ 성차별	강의, 토론	50
	6) 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비디오시청, 토론	50
부모-자녀의 양성평등의식 차이 이해	7) 부모-자녀/ 형제-자매의 의식차	부모-자녀의 의식차/ 형제-자매의 의식차	강의, 토론	50
	8) 양성평등한 부모-자녀관계 사례	양성평등한 부모-자녀 관계설정 방안/ 사례 제시	사례, 토론	50
	9)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자녀교육에의 영향	강의, 토론	50
양성평등한 부모역할분석 및 평가	10)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의 진로지도, 생활지도시의 부모역할	강의, 토론	50
	11) 부모역할 분석 및 평가	정책과 성/ 여성의 세력화/ 성 주류화/ 사회적 성에 기초한 정책 분석	실습	50
	12)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실습	역할연기	실습	50
양성평등한 부모역할모형 개발	13)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의 재평가	부모역할 평가도구	강의, 토론, 실습	50
	14) 부모와 자녀간 양성평등 생활방안 수립	양성평등적 입장에서의 생활방안	토론	50
	15) 미래지향적 가족관계와 양성평등 의식향상 방안	부모역할의 발전방안	토론	50

다.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

평화에 대한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사회에 확신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전쟁, 폭력, 반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평등, 관용, 협력, 화해라는 개념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여성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1970년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활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의 전후처리 미결문제로 꾸준히 여론화하는 한편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여성들에 대해서는 치료와 생계비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문제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여성평화운동에 있어 모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평화'를 위해 '반전·반핵운동'을 비롯해 '여성평화 한마당'과 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의 마련하고, '여성평화 알뜰장' '전쟁문화 퇴치운동' '최루탄 추방운동' 등 민주화 요구시위의 확산을 저지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군 '위안부'인 정신대 문제의 해결촉구운동을 위해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일제가 식민지 조선여성을 '성 노예'로 전시 동원한 '전쟁범죄'인 만큼 그 정확한 실상 규명과 그에 따른 국가배상 등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유엔에 이 문제를 제소하여 국제 여론화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괄목할 성장을 가져온다.

최근 세계평화여성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북한사랑 1%운동 - 매달 1000원'을 모아서 우리동포인 북한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실천운동. 2001년 12월에 시작하여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북한의 대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을 접하고 '밥 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이라는 이름아래 모금을 전개, 2001년에는 다시 북한 산모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평화운동[120]은 궁극적으로 인간심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화문화'의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지향한 계속적이 행동으로서의 필요함

이 논의되었으며 남북여성교류협력을 평화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을 보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여성평화운동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로부터 일상 생활을 평화롭게 산다는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통일 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방향과 목표로는 반도의 남북간 평화와 함께 남한내의 각종 폭력 추방, 전쟁방지 및 평화적인 통합. 군사주의가 가져온 사회의 어둠과 비민주성, 폭력 등의 배제. 남북한의 화합과 상호인정, 배려와 돌봄과 나눔의 생활 등이 제시되었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평화심성 향상프로그램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 폭력예방 프로그램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은 여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가부장적 억압구조가 여성의 삶 속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의 인간화를 막는 두텁고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가 가부장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남녀관계의 가부장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 심화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한다.

---

120) http://wmp.jinbo.net(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양희·양애경·정숙경의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의 관련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표 Ⅴ-3>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교육영역	교육내용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2) 한국의 성문화와 성희롱
	3) 성폭력과 가정폭력
여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4) 여성상담이론
	5) 영역별 여성상담의 실제(진로발달, 재취업, 결혼생활, 성생활과 피해자 등)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특징	6) 성폭력 실태와 피해
	7) 여성상담으로서의 성폭력 상담
	8)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9) 성폭력 피해의 극복방안
여성의식향상훈련	10) 여성의식향상집단의 특징
	11) CR집단의 내용과 과정
	12) CR집단의 상담기능과 효과
	13) 여성의식향상훈련 연습
성폭력상담 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	14)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진단과 예방책
	15) 성폭력상담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2) 평화교육 프로그램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실업, 빈부격차, 경제정의 부재,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돌봄의 가치와 포용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평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Ⅴ-4>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영역	교육내용
남북지역간 사회문화적 통합의 의미	1) 남북지역 발전의 사적 배경
	2) 남북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여건
	3) 남북지역 통합의 의미
평화문화 형성과 여성의 역할	4) 평화협상 의사결정단계에서의 여성참여
	5)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6)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간안보의 확보
각국의 평화이행 모범 사례 제시	7) 세계의 평화정착을 위한 각 국의 정책화와 이행전략
	8) 선진국의 평화이행 사례
	9) 개발도상국의 평화이행 사례
평화기행 및 평화텐트 운영	10) 평화기행 및 평화텐트 운영의 의미
	11) 평화기행
	12) 대상별 평화텐트 운영
평화심성 확립 및 갈등과 분쟁의 문제해결	13) 평화심성 확립방안
	14) 갈등과 분쟁의 문제 해결방안

21세기 발전, 안보와 평화 수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평등과 인간안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비전은 배제와 폭력을 촉진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민중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인 토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가진 여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수립과 정책결정의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는 통일을 위한 최종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여성들의 남북통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를 이루게 될 것이며 남북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이 남북한 여성들의 이질감 극복 및 남북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시행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남북한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연합」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되고 통일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한은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선포하게 된다. 이 단계의 주요 정책과제는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정치공동체 실현을 통하여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분야, 외교·국방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에서 실천과제를 개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들과 함께 통일정책 각 분야별로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방안들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에서 여성부문의 역할 및 기능의 정립과 통일 후의 남북한 여성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여성들의 이념 혼란 및 사회부적응 현상의 예방책과 남북한의 민족 및 여성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그리고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이해 및 보완으로 여성들이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중요하다.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은 여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접근기회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성의 삶을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통일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국적

의 여성들과의 합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여성들의 동질성 회복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의 그 날까지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남식. “여성단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9.

게르다 체반스키 저,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역. 「고요한 해방: 동독의 여성」. 서울: 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권영경. “통일이후 여성노동정책과제 및 통합방향, 「통일연구 3(1)」.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9.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명태 이야기와 맛」. 강원도: 고성군, 1999.

과학기술출판사. 「가정과학상식」.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1992.

김경희. “생명문화 창조운동-기장여신도회를 중심으로-.” 이우정선생 고희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엮음. 「여성 평화 생명」. 서울: 경세원, 1993.

김경희 외 .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2001.

김귀옥. “통일을 향한 남·북 사회문화 연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통일위원 엮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민중사, 1994.

김귀옥. “남북 생활문화부문 교류프로그램.”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엮음). 「문화예술 주요부문별 남북교류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김귀옥. “북한여성의 가정생활과 남북 여성 교류”.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김귀옥. “여성의 평화·통일문제 인식.”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동녘, 2002.

김귀옥.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평화·통일운동의 여성주의적 모색.”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발표문, 2002. 3.

김귀옥. “이제는 남북 생활문화를 교류할 때.” 「전교학 신문」. 2002. 4. 29.

김귀옥·김정훈. “대북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엮음).「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당대, 2000.

김국신. 「남북연합 형성 및 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 당.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엮음. 「여성과 평화」제2호, 2002.

김대중.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김수곤.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김선욱.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a.

김선욱.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여성연구」. 제10권 제3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b.

김선욱.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의 여성단체역할과 문제”.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과제 연구」. 서울: 통일원, 1992c.

김선임. “북한 탁아정책의 변화과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영희·장영아.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김원홍.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편).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환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서울: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1998.

김윤옥.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남북 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문, 2000. 7.

김재경. “독일정부의 여성정책,” 「한·독 사회과학학보」 제2호, 1996.

김재인·장혜경.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김재인·장혜경.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재인·남승희.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김재인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3.

김재인·유희정·양애경.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김재인·민무숙 외. 「여교원의 전문성 향상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정수. "9.11 이후 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운동의 새로운 모색."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2002. 9.

김한중. "통일의 고통을 덜어줄 복지제도 확충,"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동아일보사, 1993.

김현옥.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제49호(봄호), 2001.

김현숙. "북한여성정책의 변화". 숙명여대통일논총, 1997.

김형욱·박사월. 「김형욱 회고록」. 제3부. 서울: 아침, 1985.

노중선 엮음.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96.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서울: 내외통신사, 199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

_____. 「여성단체현황」, 2000a.

_____. 「Beijing+5 UN 특별총회 NGO 보고회」자료, 2000b.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1세기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자세」 서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998a.

_____. 「여성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1998b.

동북아평화연구회. 「대북포용정책」. 서울: 밀레니엄북스, 1999.

문익환. “민족통일의 실체.” 문익환전집출간위원회 엮음. 「문익환 전집 3」. 서울: 사계절, 1980.

민주주의민족전선 편집. 「해방조선」. 서울: 과학과 사상, 1988[1946].

민무숙·안재희.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방완주. 「조선개관」.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베르너 바이펠트·칼-루돌프 코르테. 「독일통일백서」. 임종헌 · 신현기 · 백경학 · 배정한 · 최필준 역. 서울: 한겨레출판사, 1998.

보건복지부. 여성단체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1999.

북한연구소·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4집. 서울: 북한연구소·북한학회, 1999.

북연회. 「북한연구논평집 1972-1997」. 서울: 북연회, 1997.

북한문제연구소. 「연합통신」.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2000.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서중석.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서울: 한울, 2000.

손봉숙·이경숙·이온죽·김애실. 「북한의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손봉숙.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1995.

손봉숙. “조선민주여성동맹연구,”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이종석 편집. 서울: 세종연구소, 1998.

송남헌. 「해방3년사 I」. 서울: 까치, 1985.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한국이 미국·일 본 독일을 추월하는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5.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안소니 기든스 저, 윤병철·박병래(역).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1992.

여성부. 「여성백서」. 서울: 여성부, 2001.

_____.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부, 2001.

연합뉴스. 「연합뉴스 통일·북한」. 서울: 연합뉴스, 1999.

오정진.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1998.

오유석. “통일사회에서 여성과 정치,” 사회학대회 발표문. 한국사회학회, 2000.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서울: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2000.

유석렬. “남북연합 개념 및 추진방안”.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집, 2001. 4. 30.

UNDP·인간개발보고서. 「인권과 인간개발」, 2000.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발표, 2001. 5. 25.

윤석인. “한국여성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경숙.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이장희 “민족화해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의 문제.”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민족화해아카데미 발표문, 2000.

임영일.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 정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 사회」. 서울: 한울, 1992.

이종석(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1998.

이금순,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제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토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0. 7. 12.

임순희. “남북한 여성의 삶의 모습–남북한 여성 삶에 대한 이해가 남북여성교류의 기본조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편). 「여성」. 서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0.

장공자 외. 「분단· 평화· 여성」.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1997.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 연구」제1권 4호. 1989년 겨울.

장혜경·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전복희. “여성 자원봉사조직의 통일의식 고취방안,”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북한연구회(편집), 199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정경란. "9·11 테러이후 평화운동."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2회 제주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2.

정경환. "통일문제연구 발전방향(민간단체의 역할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1999.

정무장관(제2)실.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정무장관실, 1991. 12.

정영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민간단체의 통일운동",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1999.

정유진. "북한 근로단체의 성격과 구성," 북한조사연구(2):79 -97. 통일정책연구소, 1999.

정은미. "북한의 농민시장과 개혁·개방."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호. 2001.

정현백 외.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 여성정책과, 1998.

_____. "서구 여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1999.

_____. "한국 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엮음.「여성과평화」. 서울: 당대, 2000.

제성호.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_____.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1999.

_____. “남북교류협력의 법적문제에 관한 제고찰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서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조민. “남북연합 형성과 추진과제,”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자료집, 2001.

조순경.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57호, 한울, 1998.

조영훈. “생산적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 사회」, 제57호, 한울, 2000.

조지 리처, 최제현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1998.

최운실·한만길 외.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터너 J.H, 김진섭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통계청. 「1997-2000년 분기별 고용동향」. 서울: 통계청, 2000.

통계청. 「국제통계연감」통일부 교류협력국(2000).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2000.12.1~12.31)』 제 114호. 서울: 통계청, 2000.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통일부, 2000.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주간 남북관계동향』. 서울: 통일부, 2001.

_____. 「주간북한동향」. 437호. 서울: 통일부, 1999.

_____.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부, 1994.

_____.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서울: 통일원, 1995.

_____. 「95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4)-남북교류·협력 분야」. 서울: 집문당, 1995.

_____.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대북 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부, 1999.

_____.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0a.

_____. 「독일통일백서('99)」. 서울: 통일부, 2000b.

_____.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0c.

_____.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 109호. 서울: 통일부, 2000d.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통일원.「'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통일원, 1992.

_____. 「남북교류 협력의 실천과제 연구」. 서울: 통일원, 1992.

_____.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_____. 「남북교류협력동향」. 서울: 통일원, 1997.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_____.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8.

_____.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0a.

_____.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2000b.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6.

한독워크숍참가결자료 (2000. 5.12-20. 독일 베를린).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과 사회복지」.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1997.

한국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및 정책 연구」. 서울: 여성부, 200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10권 제13호 1992년 가을호. 1992.

한국여성개발원·통일부. 「여성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여성연구회 엮음.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현재와 미래」. 서울: 백두, 19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 정 진상

규명위원회 엮음.『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 역사·사회학적 연구』. 서울: 풀빛, 2001.

한만길 외.「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한만길.「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한·독 사회과학회, 2001.

함인희·한정자 외.「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대상별 차별화 방안 모색」. 서울: 통일부, 2000.

허정무.「교원의 정년퇴직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3.

2. 외국문헌

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アジアの平和と女性の役割」. 報告集, 1991.

Corner, L. Workshop on Gender Mainstreaming, 한국여성개발원자료집, 1999.

Ehrhart Neube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Gisela Helwig, Hildegard Maria Nickel (Hrsg.), Frauen in Deutschland 1945-1992.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Herausgegeben von Wolf gang Hardtwig und Heinrich August.

Homans, George C. *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50.

_____.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a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4.

Homans and Schneider, David M. *Marriage Authority and Final Causes: A Study of Unilateral Cross-Cousin Marriage*, New York: Free Press, 1955.

_____.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a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4.

Howel, Jude. "Prospects for NGOs in China," *Development in Practice* 5I1:15, 1995.

Emerson, Richard M.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Palo Altoc Annual Reviews, Inc, 1976.

Emerson, Richard M.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Palo Altoc Annual Reviews, Inc, 1976

Swidler, Ann.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April).

UNDP. Making New Technologies Work for Human Delelopment, 1995, 1997, 2001.

Winkler. *Deutsche Entfremdung Aum Gefinden in Ost und West Verlag*, C.H. Beck Munchen, 1994.

Werner Weidenfeld, Karl-Rudolf Korte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Sonderauflage fur de die Landeszentrale fur politisch Bildungsarbeit Berlin

http://www.unikorea.go.kr

http://www.pcwa.go.kr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09.htm

http://www.unikorea.go.kr

http://www.pcwa.go.kr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09.htm

부 록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 전문가 질문지 -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연구과제인「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통일정책 추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지향하기 위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정에서의 여성참여는 어떠해야하며, 남북연합이 이미 실현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하는지의 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지의 각 문항별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8월

연구진 : 김재인·장혜경·김선욱·김귀옥
전 화 : 356-0332 / 356-0070(303/306)
팩 스 : 384-7168 / 356-1466
e-mail : Janekim@kwdi.re.kr; hkchang@kwdi.re.kr

Ⅰ.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정부는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1국가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실질적 통합'은 남북연합 실현이후부터 통일국가 바로 직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단계 "를 통하여 증진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과도적 결합체제 (1민족 2국가 2체제) 입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남북연합이 실현된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 실질적 통합 '은 남북한간 제 분야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 민족공동체 "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1.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남북한 '실질적 통합'은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분단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바**_이를 위해서는 제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이 뒤따라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1)'실질적 통합'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시며 2)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요기간 :
   2) 이유 :

2. <질문 1>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공동체 구성과 공동체 의식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께서는 1)어떠한 분야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2)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3)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논의되어야 할 분야 :
   2) 이유 :
   3) 여성과 관련한 분야와 이중 가장 우선적인 분야 :

3. 남북한간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의 공고화와 더불어 통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1)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요구되는 노력 (조치) :
   2) 이유 :

II.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관련 영역

남북한의 사회상황을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크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어, 교육, 가치체계와 의식구조면에서** 비교되고 있고 **동질적인 부문은 단일민족성, 전통문화의 교류, 유교적 규범과 미풍양속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통합단계는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제 분야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여성과 관련하여 **행정구조와 정치참여, 관련법, 교육, 가족과 노동, 복지(보육)와 건강, 여성단체, 생활문화 측면**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4.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남북간의 1)구체적인 이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행정구조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2) 정치참여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3) 법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4) 교육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5) 가족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6) 노동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7) 복지 (보육)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8) 건강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9) 여성단체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10)생활문화 분야

(1)이질성의 측면 :
(2)극복방법 (방안) :

5. 남북한이 갖고 있는 동질적인 부분에서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1)지켜야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또한 2)동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남북이 함께 버려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켜야할 동질성 부분 :
2) 버려야할 동질성 부분 :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이 이미 실현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남북화해협력,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 많은 여성정책과제가 논의되고 제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연합단계에서 추진되어야할 여성정책과제들로는 **통일의식함양교육,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여성평화운동활성화, 그리고 여성의 통일역할증진** 차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6. 먼저 **여성들의 통일의식함양 교육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1)어떠한 과제들이 남북한 공동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2)그 구체적 추진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공동실시과제:
2) 구체적 추진방법:

□ 통일의식함양 교육과제 (예)
1)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 탈피와 남한 및 북한 중심적 사고방식 제거
2) 이질성 인정 및 상호포용의 자세 확립
3) 여성의 통일주체의식 강화 및 평등의식 함양
4) 남북한 여성의 생활중심 및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 이해
5) 통일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정체성과 지도력 확립
6) 여성간 통일연대 형성과 통일을 향한 사회변화 추진노력
7)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이루는 방법모색
8) 북한여성들에게 남한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
9) 남북한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방향 인식

7. 다음은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입니다. 귀하는 1) 어떠한 과제들을 남북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그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동실시과제:
2) 구체적 추진방법 :

□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 과제 (예)
1) 북한여성 및 북한체제 이해증진 활성화
2) 북한여성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이해하는 소규모 이야기모임 구성과 활성화
3) 북한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실증연구 확대
4) 여성관련 영역의 구체적 사안 공동논의
5) 대북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6)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남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활성화

8. 다음은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과제들이 남북한 공동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추진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공동실시과제:
2) 구체적 추진방법 :

□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예)**
1) 여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환경 구축
2) 남북한 정부에 대해 군대 및 무력감축을 위한 캠페인 확대
3) 평화지대 선언
4)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한여성 평화포럼개최

9. 다음은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과제**입니다. 귀하는 1) 어떠한 과제들을 남북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 그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동실시과제:
2) 구체적 추진방법 :

□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 과제(예)**
1) 통일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2)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웍 구축
3) 남북여성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여성들간의 정치세력화

III.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 제도화 방안

지금까지의 제시된 주요정책과제의 특징은 성 관점(gender-based)의 통일정책과제이며 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데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정책 과제들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일곱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 각각의 주제에 대한 1) 귀하의 견해와 제도화 할 수 있는 2)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북한여성의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홍보실시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2) 북한여성 바로알기 운동 활성화와 통일문화운동의 전개

(1) 주제에 대한 견해:
(2) 구체적인 조치:

3) 통일국가 대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구축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4) 남북한 사회 공통의 여성의제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5) 여성들의 통일과정 정치적 참여확대 구축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6) 여성들의 통일역량증진과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제도적 보완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7) 제 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구축

(1)주제에 대한 견해:
(2)구체적인 조치:

11.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이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방향, 법적 근거, 행정적 조치 그리고 추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본방향:
(2)법적 근거:
(3)행정적 조치:
(4) 추진전략: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